



# 업무 매뉴얼\_공통

일반지급·계약변경·입금·보험금·신계약

## Contents

1. 신분증 접수기준 (4~28)
2. 구비서류 접수기준 (29~51)
3. 청구권자 업무처리기준 (52~90)
4. 마스크 처리기준 (91~95)
5. 녹취 스크립트 기준 (96~105)

2025. 2. ver

고객혁신그룹

신한라이프

# 개정 이력

NO.	개정일자	개정내용	비고																																															
1	2023.07.01	신설 v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분증 공통기준 수립 _고객서비스팀,보험금심사팀,언더라이팅심사팀</li> </ul>																																															
2	2023.07.05. ~ 2023.8.23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뉴얼 내용 수정 및 추가</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수정일자</th><th>페이지</th><th>내용</th></tr> </thead> <tbody> <tr> <td>2023-07-05</td><td>13</td><td> <p>문구 하단</p> <p>※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경우 : 앱 인증 + S_Life 화면내 추가 인증 후 업무별 신청서 내 기재 요망</p> </td></tr> <tr> <td>2023-07-18</td><td>81</td><td> <p>법인사업자_보험료부담 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li> <li>■ 법인인감증명서</li> <li>■ 법인인감도장 <b>추가</b></li> </ul> <p>※ 공동대표인 경우: - 미내방 대표자 전원 [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법인인감날인)] ※ <b>추가</b> - 공동대표 경우 미내방 공동대표의 법인인감도장 지참하여 내방必</p> </td></tr> <tr> <td>2023-07-19</td><td>54/55</td><td> <p>※ 주3&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금계좌 예금주 미내방 시 녹취 확인 <b>스크립트 97page</b> 참고</li> </ul> </td></tr> <tr> <td>2023-07-19</td><td>54/55</td><td> <p>- 청구권자 성인: 미성년자 통장 요청시 친권을 가진 있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법원결정문 내 가능시)만 가능</p> </td></tr> <tr> <td>2023-07-20</td><td>5</td><td> <p>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외국인등록증 확인 방법 변경으로 인한 내용 반영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번호 &gt; 발급일자 &gt; 일련번호 &gt; 신원검증</p> </td></tr> <tr> <td>2023-07-20</td><td>15-16</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방법 수정 완료</li> <li>-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사실 확인 가능 내용 추가 완료</li> </ul> </td></tr> <tr> <td>2023-07-25</td><td>5</td><td> <p>❶ 신분증 스캐너 미사용하는 경우 [지점, 본사] <b>* 2011.1.1. 이전에 발급된 등록증은 일련번호 입력 할 필요 없음 내용 추가</b></p> </td></tr> <tr> <td>2023-08-10</td><td>55</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인 내방_대리인 계좌 송금 신청시 <b>* 위임장 내 위임계좌 정보 기재 必</b> 추가</li> </ul> </td></tr> <tr> <td>2023-08-10</td><td>68</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인 내방_대리인 계좌 송금 신청시 <b>* 위임장 내 위임계좌 정보 기재 必</b> 수정(대리인계좌정보)</li> </ul> </td></tr> <tr> <td>2023-08-10</td><td>97</td><td> <p>나. 개인(신용)정보 동의 녹취 업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지급, 계약변경, 임금업무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 미제출 시, 보험금업무_[예금주 상이시] <b>추가</b>)</li> </ol> </td></tr> <tr> <td>2023-08-23</td><td>6</td><td> <p>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외국인등록증 확인 방법 변경으로 인한 내용 반영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번호 &gt; 발급일자 &gt; 일련번호 &gt; 신원검증</p> </td></tr> <tr> <td></td><td>2023-08-23</td><td> <p>❶ 피보험자 사고접수등록 시 신분증 진위 확인 경우 <b>* 여권의 경우: 인터넷(정부24)에서 진위확인 후 확인내용(날짜, 시간 필수기재 요청) 입력하여 진위확인 입력 가능</b> 예시&gt; 정부24 사이트 여권진위확인 원료(2023.07.30.13:24) <b>* 미성년자의 경우: 제출서류 친권자 확인후 기타(미성년자) 등록 바랍니다.</b></p> </td></tr> <tr> <td>3</td><td>2024.04.15</td><td>수정</td><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5p 신규▶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_고객내방 접수 限</li> <li>2. 5p 추가▶외국인 신분등 ※설명 추가 맨하단에 실명증표 검증 방법에 따른 구비서류 추가 신분증,인감,본인 -&gt;진위확인 메모방법 추가</li> <li>3. 16p 추가▶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 방법 내용 추가</li> <li>4. 25~26p 추가▶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 방법 내용 추가</li> </ol> </td></tr> <tr> <td>4</td><td>2025.02.11. ~ 02.21</td><td>수정</td><td>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6~7p 수정 ▶ 신분증 진위확인 관련 시스템 개선 내용 반영</li> <li>2. 47p 수정▶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최신 내용 수정</li> <li>3. 48p 수정▶절차비교 표 수정</li> <li>4. 70p 수정▶해외거주 접수서류 서류별 내용 보완 수정</li> <li>5. 83p 수정▶조직변경에 따른 문의 부서내용 변경</li> <li>6. 88p 수정▶법인합병 구비서류 기준 변경</li> </ol> </td></tr> </tbody> </table>	수정일자	페이지	내용	2023-07-05	13	<p>문구 하단</p> <p>※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경우 : 앱 인증 + S_Life 화면내 추가 인증 후 업무별 신청서 내 기재 요망</p>	2023-07-18	81	<p>법인사업자_보험료부담 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li> <li>■ 법인인감증명서</li> <li>■ 법인인감도장 <b>추가</b></li> </ul> <p>※ 공동대표인 경우: - 미내방 대표자 전원 [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법인인감날인)] ※ <b>추가</b> - 공동대표 경우 미내방 공동대표의 법인인감도장 지참하여 내방必</p>	2023-07-19	54/55	<p>※ 주3&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금계좌 예금주 미내방 시 녹취 확인 <b>스크립트 97page</b> 참고</li> </ul>	2023-07-19	54/55	<p>- 청구권자 성인: 미성년자 통장 요청시 친권을 가진 있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법원결정문 내 가능시)만 가능</p>	2023-07-20	5	<p>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외국인등록증 확인 방법 변경으로 인한 내용 반영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번호 &gt; 발급일자 &gt; 일련번호 &gt; 신원검증</p>	2023-07-20	1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방법 수정 완료</li> <li>-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사실 확인 가능 내용 추가 완료</li> </ul>	2023-07-25	5	<p>❶ 신분증 스캐너 미사용하는 경우 [지점, 본사] <b>* 2011.1.1. 이전에 발급된 등록증은 일련번호 입력 할 필요 없음 내용 추가</b></p>	2023-08-10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인 내방_대리인 계좌 송금 신청시 <b>* 위임장 내 위임계좌 정보 기재 必</b> 추가</li> </ul>	2023-08-10	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인 내방_대리인 계좌 송금 신청시 <b>* 위임장 내 위임계좌 정보 기재 必</b> 수정(대리인계좌정보)</li> </ul>	2023-08-10	97	<p>나. 개인(신용)정보 동의 녹취 업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지급, 계약변경, 임금업무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 미제출 시, 보험금업무_[예금주 상이시] <b>추가</b>)</li> </ol>	2023-08-23	6	<p>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외국인등록증 확인 방법 변경으로 인한 내용 반영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번호 &gt; 발급일자 &gt; 일련번호 &gt; 신원검증</p>		2023-08-23	<p>❶ 피보험자 사고접수등록 시 신분증 진위 확인 경우 <b>* 여권의 경우: 인터넷(정부24)에서 진위확인 후 확인내용(날짜, 시간 필수기재 요청) 입력하여 진위확인 입력 가능</b> 예시&gt; 정부24 사이트 여권진위확인 원료(2023.07.30.13:24) <b>* 미성년자의 경우: 제출서류 친권자 확인후 기타(미성년자) 등록 바랍니다.</b></p>	3	2024.04.15	수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5p 신규▶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_고객내방 접수 限</li> <li>2. 5p 추가▶외국인 신분등 ※설명 추가 맨하단에 실명증표 검증 방법에 따른 구비서류 추가 신분증,인감,본인 -&gt;진위확인 메모방법 추가</li> <li>3. 16p 추가▶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 방법 내용 추가</li> <li>4. 25~26p 추가▶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 방법 내용 추가</li> </ol>	4	2025.02.11. ~ 02.21	수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6~7p 수정 ▶ 신분증 진위확인 관련 시스템 개선 내용 반영</li> <li>2. 47p 수정▶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최신 내용 수정</li> <li>3. 48p 수정▶절차비교 표 수정</li> <li>4. 70p 수정▶해외거주 접수서류 서류별 내용 보완 수정</li> <li>5. 83p 수정▶조직변경에 따른 문의 부서내용 변경</li> <li>6. 88p 수정▶법인합병 구비서류 기준 변경</li> </ol>
수정일자	페이지	내용																																																
2023-07-05	13	<p>문구 하단</p> <p>※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경우 : 앱 인증 + S_Life 화면내 추가 인증 후 업무별 신청서 내 기재 요망</p>																																																
2023-07-18	81	<p>법인사업자_보험료부담 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li> <li>■ 법인인감증명서</li> <li>■ 법인인감도장 <b>추가</b></li> </ul> <p>※ 공동대표인 경우: - 미내방 대표자 전원 [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법인인감날인)] ※ <b>추가</b> - 공동대표 경우 미내방 공동대표의 법인인감도장 지참하여 내방必</p>																																																
2023-07-19	54/55	<p>※ 주3&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금계좌 예금주 미내방 시 녹취 확인 <b>스크립트 97page</b> 참고</li> </ul>																																																
2023-07-19	54/55	<p>- 청구권자 성인: 미성년자 통장 요청시 친권을 가진 있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법원결정문 내 가능시)만 가능</p>																																																
2023-07-20	5	<p>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외국인등록증 확인 방법 변경으로 인한 내용 반영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번호 &gt; 발급일자 &gt; 일련번호 &gt; 신원검증</p>																																																
2023-07-20	1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방법 수정 완료</li> <li>-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사실 확인 가능 내용 추가 완료</li> </ul>																																																
2023-07-25	5	<p>❶ 신분증 스캐너 미사용하는 경우 [지점, 본사] <b>* 2011.1.1. 이전에 발급된 등록증은 일련번호 입력 할 필요 없음 내용 추가</b></p>																																																
2023-08-10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인 내방_대리인 계좌 송금 신청시 <b>* 위임장 내 위임계좌 정보 기재 必</b> 추가</li> </ul>																																																
2023-08-10	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인 내방_대리인 계좌 송금 신청시 <b>* 위임장 내 위임계좌 정보 기재 必</b> 수정(대리인계좌정보)</li> </ul>																																																
2023-08-10	97	<p>나. 개인(신용)정보 동의 녹취 업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지급, 계약변경, 임금업무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 미제출 시, 보험금업무_[예금주 상이시] <b>추가</b>)</li> </ol>																																																
2023-08-23	6	<p>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외국인등록증 확인 방법 변경으로 인한 내용 반영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번호 &gt; 발급일자 &gt; 일련번호 &gt; 신원검증</p>																																																
	2023-08-23	<p>❶ 피보험자 사고접수등록 시 신분증 진위 확인 경우 <b>* 여권의 경우: 인터넷(정부24)에서 진위확인 후 확인내용(날짜, 시간 필수기재 요청) 입력하여 진위확인 입력 가능</b> 예시&gt; 정부24 사이트 여권진위확인 원료(2023.07.30.13:24) <b>* 미성년자의 경우: 제출서류 친권자 확인후 기타(미성년자) 등록 바랍니다.</b></p>																																																
3	2024.04.15	수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5p 신규▶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_고객내방 접수 限</li> <li>2. 5p 추가▶외국인 신분등 ※설명 추가 맨하단에 실명증표 검증 방법에 따른 구비서류 추가 신분증,인감,본인 -&gt;진위확인 메모방법 추가</li> <li>3. 16p 추가▶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 방법 내용 추가</li> <li>4. 25~26p 추가▶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 방법 내용 추가</li> </ol>																																															
4	2025.02.11. ~ 02.21	수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6~7p 수정 ▶ 신분증 진위확인 관련 시스템 개선 내용 반영</li> <li>2. 47p 수정▶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최신 내용 수정</li> <li>3. 48p 수정▶절차비교 표 수정</li> <li>4. 70p 수정▶해외거주 접수서류 서류별 내용 보완 수정</li> <li>5. 83p 수정▶조직변경에 따른 문의 부서내용 변경</li> <li>6. 88p 수정▶법인합병 구비서류 기준 변경</li> </ol>																																															

NO.	개정일자	개정내용	비고
5	2025.02.27	수정	1. 55p수정▶맨하단-청구권자 성인이 미성년자 통장 요청 시 내용 2. 31p추가▶맨하단-개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건 사용불가 내용
6	2025.11.21	수정	1. 5p추가▶여권 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 진위확인
7			
8			
9			
10			

# 목 차

가. 신분증 종류 및 업무기준 .....	5
나. 신분증 진위확인 방법_S_Life 内 .....	6
다. 신분증 진위확인 방법 및 유의사항_S_Life 内 외	
(1) 주민등록증 확인 .....	8
(2) 운전면허증 확인 .....	12
(3) 모바일 신분증 확인 .....	14
(4) 외국인등록증 확인 .....	17
(5)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증 확인 .....	21
(6) 여권 확인 .....	22
(7) 장애인등록증 확인 .....	24
(8) 국가보훈등록증 (구>국가유공자증) 확인 .....	25
(9) 공무원증 확인 .....	26
FAQ .....	27

# 1. 신분증 접수기준\_공통

## 가. 신분증 종류 및 업무기준

구 분	업무기준						
(1) 주민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진위확인 수행</li><li>- (3-1)모바일 주민등록증 (3-2)모바일 운전면허증 <a href="#">고객내방 접수限</a> <a href="#">[14~15page 참고]</a></li></ul>						
(2) 운전면허증, 원동기 면허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23.6~) <a href="#">고객내방 접수限</a></li></ul>						
(3)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23년4월1일부터 외국인등록증 새로운 디자인 변경 발급</li></ul>						
(4)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증							
(5) 여권	<table border="1"><tr><td>주민번호 기재</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진위확인 수행</li><li>- 다음 ①, ② 두 가지 모두 수행 / KYC대상인 경우 ③추가 수행</li></ul></td></tr><tr><td>주민번호 미기재 (2020.12.21.이후발급)</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진위확인 수행 + ②여권정보증명서 징구 <a href="#">FAQ_1</a> + ③주소확인 가능한 서류(KYC 대상자)</li><li>※ '개정여권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에 다른 신분증으로 활용 할 수 증빙 서류 [고서 2020-00677공문 참조]</li><li>※ KYC기준 강화로 '주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징구(KYC대상에 한함)</li><li>- 등/초본, 공과금 납입 증명서</li></ul></td></tr><tr><td>외국인</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진위확인 미수행</b> (사유: 진위확인 불가) + 영문명 확인 가능한 서류 추가 징구 =&gt; 신용(체크)카드, 국적소멸증명서(대사관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해당 국가 정부 발급서류, 공증서류 中 택1</li><li>※ 청구권자 업무처리기준 - 추가 서류 확인 후 고객 안내</li></ul></td></tr></table>	주민번호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진위확인 수행</li><li>- 다음 ①, ② 두 가지 모두 수행 / KYC대상인 경우 ③추가 수행</li></ul>	주민번호 미기재 (2020.12.21.이후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진위확인 수행 + ②여권정보증명서 징구 <a href="#">FAQ_1</a> + ③주소확인 가능한 서류(KYC 대상자)</li><li>※ '개정여권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에 다른 신분증으로 활용 할 수 증빙 서류 [고서 2020-00677공문 참조]</li><li>※ KYC기준 강화로 '주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징구(KYC대상에 한함)</li><li>- 등/초본, 공과금 납입 증명서</li></ul>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진위확인 미수행</b> (사유: 진위확인 불가) + 영문명 확인 가능한 서류 추가 징구 =&gt; 신용(체크)카드, 국적소멸증명서(대사관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해당 국가 정부 발급서류, 공증서류 中 택1</li><li>※ 청구권자 업무처리기준 - 추가 서류 확인 후 고객 안내</li></ul>
주민번호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진위확인 수행</li><li>- 다음 ①, ② 두 가지 모두 수행 / KYC대상인 경우 ③추가 수행</li></ul>						
주민번호 미기재 (2020.12.21.이후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진위확인 수행 + ②여권정보증명서 징구 <a href="#">FAQ_1</a> + ③주소확인 가능한 서류(KYC 대상자)</li><li>※ '개정여권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에 다른 신분증으로 활용 할 수 증빙 서류 [고서 2020-00677공문 참조]</li><li>※ KYC기준 강화로 '주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징구(KYC대상에 한함)</li><li>- 등/초본, 공과금 납입 증명서</li></ul>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진위확인 미수행</b> (사유: 진위확인 불가) + 영문명 확인 가능한 서류 추가 징구 =&gt; 신용(체크)카드, 국적소멸증명서(대사관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해당 국가 정부 발급서류, 공증서류 中 택1</li><li>※ 청구권자 업무처리기준 - 추가 서류 확인 후 고객 안내</li></ul>						
(6)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진위확인 미수행</b> (사유: 진위확인 불가)</li><li>- 본인명의 휴대전화/신용카드/카카오인증 택일 1 수행</li></ul>						
(8) 공무원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인증 불가시</b>, 하기 서류 추가 징구</li><li>-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내국인 여권인경우), 국적소멸증명서(대사관발급)(외국인 여권인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국가발급서류 中 택1</li></ul>						
(7) 국가보훈등록증(23.6월 시행) (구>국가유공자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가유공자증의 경우 2005년 2월 이후 발급된 건 <b>2028.6.4.일까지만 인정됨</b></li><li>※ <b>국가보훈등록증 교체 발급건 제출 시 : 국가보훈부 사이트 내 진위확인 실시</b> ▶ <a href="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800">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800</a></li></ul>						

- ※ 1) 진위확인 시스템 등 체크를 통한 전산기록 증빙이 가능한 실명증표 : 진위확인 必  
2) 진위확인 불가 실명증표 : 추가인증 실시 必(본인명의 휴대폰,신용카드,카카오인증 택 1)  
3) KYC 수행 진위확인 불가 실명증표 : 준법감시팀 고객확인(KYC) 업무 기준에 의해 추가 문서 필요  
※ 신분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진위확인 메모방법** : 확인일자, 완료여부, 확인자 이름 또는 서명 기재  
(예시> 2024. 4. 8 진위확인완료 신한인 또는 24.4.8 진위확인완료 신한인 )

## 나. 신분증 진위확인 방법 ► [S\_Life 内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여권등]

**S\_Life 内 확인 절차**

▶ [NPAB0100] 신분증스캔처리 | 일반지급 > 지급신청 > 지급신청

☆ [NPAB0100] 신분증스캔처리 | 일반지급 > 지급신청 > 지급신청

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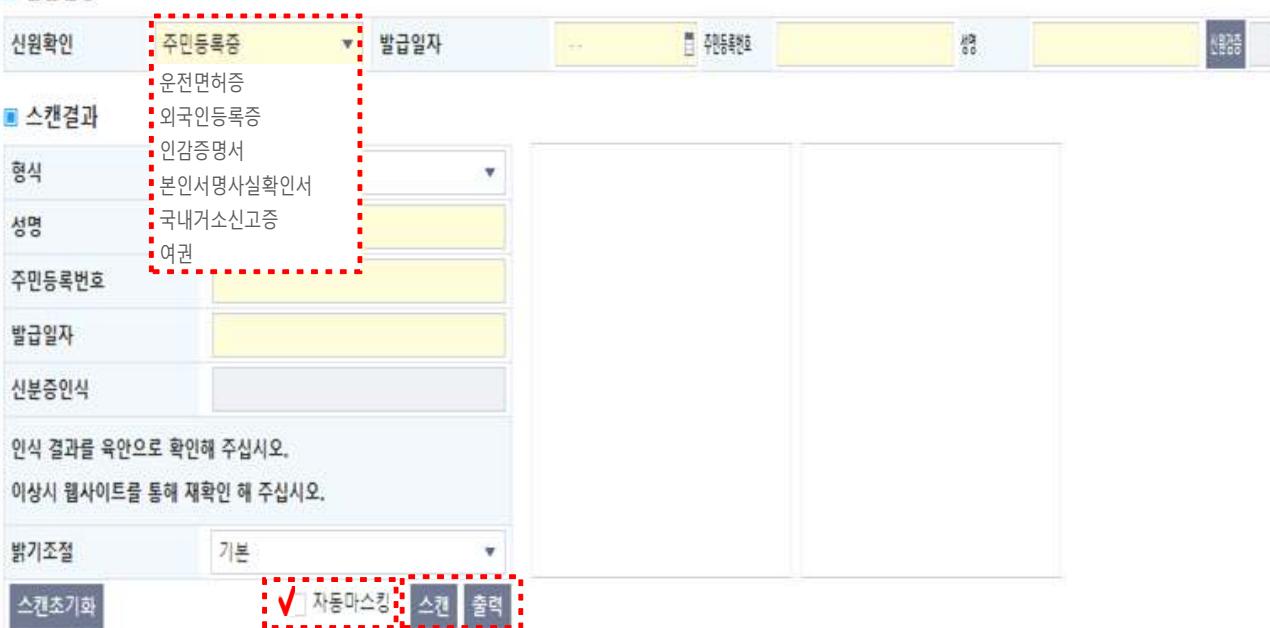
■ 신원검증

신원확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국민기초
스캔결과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형식	국내거소신고증				
성명	여권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신분증인식					

인식 결과를 육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시 웹사이트를 통해 재확인 해 주십시오.

밝기조절 기본

스캔초기화 자동마킹 스캔 출력



① 신분증 스캐너 사용하는 경우 [고객플라자]

- ① 스캐너에 신분증 삽입 → 스캔 버튼 클릭
- ② 스캔을 통해 자동인식된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가 잘못 인식된 경우 화면 상단 빈칸에 직접 정보 입력
- ③ 신원검증 버튼 클릭
- ④ 자동마킹 처리 필요시 : 체크 후 스캔  
→ 자동마킹 미선택 시 출력해서 마킹 기준에 의거 마킹 처리 必

※신분증 스캔시, 외국인등록증의 일련번호는 자동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수기 입력 필요

② 신분증 스캐너 미사용하는 경우 [지점, 본사]

- ① 신원검증 상단에 신원확인 선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 ② 신원검증에 필요 내용 수기 입력 후 신원검증 버튼 클릭
  -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 신원검증
  - 운전면허증: 면허번호> 일련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신원검증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번호> 발급일자> 일련번호 > 신원검증
  - 여권: 신청자명 > 여권번호 > 발급일자 > 만료일자 > 생년월일 > 신원검증
- ③ 신원검증 에러 시 에러메세지 팝업 확인 후 재처리 必

## S\_Life 内 확인 절차

▶ [NCLB5020] 신분증진위여부검증 | 보험금심사 > 접수 > 접수보완

※ [NCLB1020] 피보험자사고접수등록 | 보험금심사 > 접수 > 사고접수 화면내

☆ [NCLB5020] 신분증진위여부검증 | 보험금심사 > 접수 > 접수보완



신분증종류	주민등록증	확인경로	신분증	사고접수번호																																									
성명	한연애	주민번호	731205-2*****	별급일자	2005-04-15	<input type="button" value="Q 조회"/>	<input type="button" value="신원검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검증이력</th> <th colspan="2">신원검증여부: Y</th> <th colspan="2">수기등록</th> <th colspan="2">총 3건</th> </tr> </thead> <tbody> <tr> <td>사고접수번호</td> <td>업무구분</td> <td>고객명</td> <td>신분증 종류</td> <td>진위확인여부</td> <td>진위확인경로</td> <td>수기여부</td> <td>처리일시</td> </tr> <tr> <td></td> <td>사고보험금</td> <td>한</td> <td>주민등록증</td> <td>Y</td> <td>신분증</td> <td>N</td> <td>2023-04-19 16:36</td> </tr> <tr> <td>1005860259</td> <td>사고보험금</td> <td>한</td> <td>주민등록증</td> <td>Y</td> <td>유선</td> <td>N</td> <td>2021-10-19 16:51</td> </tr> <tr> <td>1008192418</td> <td>사고보험금</td> <td>한</td> <td>주민등록증</td> <td>Y</td> <td>신분증</td> <td>N</td> <td>2021-10-18 11:21</td> </tr> </tbody> </table>						검증이력		신원검증여부: Y		수기등록		총 3건		사고접수번호	업무구분	고객명	신분증 종류	진위확인여부	진위확인경로	수기여부	처리일시		사고보험금	한	주민등록증	Y	신분증	N	2023-04-19 16:36	1005860259	사고보험금	한	주민등록증	Y	유선	N	2021-10-19 16:51	1008192418	사고보험금	한	주민등록증	Y	신분증	N	2021-10-18 11:21
검증이력		신원검증여부: Y		수기등록		총 3건																																							
사고접수번호	업무구분	고객명	신분증 종류	진위확인여부	진위확인경로	수기여부	처리일시																																						
	사고보험금	한	주민등록증	Y	신분증	N	2023-04-19 16:36																																						
1005860259	사고보험금	한	주민등록증	Y	유선	N	2021-10-19 16:51																																						
1008192418	사고보험금	한	주민등록증	Y	신분증	N	2021-10-18 11:21																																						

### ① 피보험자 사고접수등록 시 신분증 진위 확인 경우

- ① 신분증종류 선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 ② 확인경로 > 신분증 선택 (신분증 종류에 따라 입력 필수 노란색 표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증      - 여권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증
  - 기타(미성년자)    - 기타(기타문서)

※ 여권의 경우: 인터넷(정부24)에서 진위확인 후 확인내용 입력 가능

예시> 여권진위확인 완료 내용 기재 → 2023.07.30. 여권진위확인완료 신한인

※ 미성년자의 경우: 제출서류 친권자 확인후 기타(미성년자) 등록 바랍니다.

- ③ 신원검증 에러 시 에러메세지 팝업 확인 후 재처리 必

※ [NPAB0100] 신분증스캔처리 | 일반지급 > 지급신청 > 지급신청화면 신분증 스캔 대체 가능

## 다. 신분증 진위확인 방법 및 유의사항 ► [S\_Life 이외 확인방법]

- 신분증은 진위확인 후 확인방법, 확인시각 기재

### S\_Life 이외 확인 절차

#### (1) 주민등록증 확인

##### ① 전화(ARS) 이용한 진위확인 방법 '1382'

- ① 국번 없이 1382 전화
- ②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누름
- ③ 정상 발급 및 분실여부 확인
- ④ 녹취이력 저장

##### ② 인터넷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진위확인 방법

- ① 정부24(<https://www.gov.kr>) →서비스 →사실/진위확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main navigation bar of the Gov24 website. The '서비스'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circle and the number 1. Below it, the '민원신청' section is visible, with the '사실/진위확인' link highlighted with a red circle and the number 2.

#### 사실/진위확인



#####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

온라인으로 발급된 문서를 수령한 기관/개인이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

발급일자, 주민번호, 문서확인번호로 인감증명 발급 사실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본인서명발급 사실확인

발급기관, 일자, 주민번호, 문서확인번호로 본인서명 발급 사실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주민등록 등·조본 발급 진위확인

시군구 및 읍면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조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주민등록 등·조본 발급내역 확인

이해관계인(소송 수령 및 채권채무관계 등)의 주민등록 등조본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주민등록증 기재사항과의 일치여부로 진위 확인하거나, 5회 이상 입력오류 시 잠장을 해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 ○ 공동인증서로 사용자 확인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인터넷에 의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은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신 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국번없이 1382번)에서도 전화로 누구나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진위확인 오류로 잠김(Lock)발생시 '주민등록증 잠김해제'로 본인이 직접 해제 가능합니다.

※ 5회 입력오류 발생 시 주민등록증 잠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주민등록증 잠김해제

※ 암호화 프로그램의 설치여부를 묻는 '보안경고'창이 나타나면 예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② 정보 입력 후 확인 클릭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 5회 입력오류 발생 시 주민등록증이 잠김상태가 되며, 주민등록증 잠김해제에서 본인이 직접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성명

[REDACTED]

• 주민등록번호

[REDACTED] - [REDACTED]

※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 발급일자

[REDACTED] (예: 20160803)

※ 아래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182578

새로고침  
음성듣기

182578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취소

### ③ 결과 확인 및 화면 출력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성명

[REDACTED]

주민등록번호

[REDACTED] -----

발급일자

-----

입력하신 내용은 등록된 내용과 일치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실 시 → 주민등록발급 신청 확인서(동사무소 발급)

### ③ 주민등록증 확인 시 유의사항

2019년 12월 31일 이전 발급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
<p>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위에 태극문양의 홀로그램이 표시됨      ② 바탕무늬와 홀로그램이 본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과 같은지 확인      ③ 사진을 변조(원래 사진 위에 다른 사진을 염색)한 경우에는 사진 위의 홀로그램이 지워져 보이지 않음      ④ 주민등록번호나 성명을 변경하면 문자 위의 홀로그램이 지워지고, 문자모양(서체)이 조잡함</p>	<p>① 색변환문양 : 빛의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      ② 돌음문자 : 이름(한글,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      ③ 레이저인쇄 : 수록내용을 레이저로 증 내부까지 인쇄 (주소 부분)      ④ 다중 레이저 이미지 :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남</p>



**2020**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보안강화**  
신주민등록증!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신분증 위변조 범죄 예방'**을 위해

신주민등록증 위변조확인법 알아볼까요~?

**위변조 확인법 두번째**

만져 보세요!  
'돌음문자(Tactile)'  
내부부터 표면까지 레이저로 양각처리해  
오늘도 뜨거운 감촉을 느낄 수 있답니다.

**위변조 확인법 첫번째**

기울여 보세요!  
주민등록증 좌측 '태극 문양'은  
'색변환 잉크'를 사용해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한답니다!

**위변조 확인법 세번째**

기울여 보세요!  
**'다중 레이저 이미지'**  
신분증 표면 특수한 렌즈를 향상한 곳에  
010자와 숫자를 레이저로 각인해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납니다.

\* 이 밖에도 신화면비, 미세문자, 홀로그램 등 다양한 위변조 방지기술이 적용돼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보안요소 및 위변조 육안 식별 요령. 행정안전부

③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주민등록증 분실 시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유효사항
발급신청일	2021.08.17	
성명	한글 한자	유효기간 2021.09.16
주민등록번호	8 6	SAMPLE
발급 구분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거주자 [ <input type="checkbox"/> ] 재외국민	
주 소	1 2 로	
위의 사람은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8월 25일		
등장 [인]		

1. 이 확인서는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유효기간 동안 임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반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이 확인서 발급 시 인적사항·사진 및 유효기간에는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 하며, 투명스티커가 확손되거나 부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확인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진위 확인 방법

1. 이 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자동응답시스템(ARS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62') 또는 민원24([www.minwon.go.kr](http://www.minwon.go.kr))를 이용하여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진위 확인 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발급일자와 일치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발급된 확인서이며, 이와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확인 방법

- ① 사진 대조
- ② 신분증 진위확인 : 발급 신청일로 입력
- ③ **유효기간 경과 건** 발급 신청서 **사용 불가** → 신분증 발급

## (2) 운전면허증 확인

### ① 인터넷을 이용한 진위확인 방법

①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www.safedriving.or.kr>) → 전체메뉴 →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클릭



### ② 정보 입력 후 확인 클릭

#### 면허정보 입력

유의사항	
<p>• 면허증 정보의 일치 여부를 조회합니다.(외국인인 경우 성명란에 공백없이 영어 대문자로 입력을 해주십시오.) • *14.06.07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조회 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생년월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반드시 암호일련번호를 입력해야만 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호 일련번호 없이도 면허증 조회가 가능하지만, 면허증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2013년 07월 09일 이후에 재발급 및 적성검사(경신)를 신청한 경우에는 영문, 숫자 조합 6자리 암호 일련번호가 부여됩니다. • 영문 : 대문자로만 표현, 인쇄 상태에 따라 (영문O,숫자0), (영문I, 숫자1), (O, Q), (P, F), (P, R), (R, B) 혼동될 수 있습니다.</p>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운전면허번호	_____
암호일련번호	_____

### ③ 결과 확인 및 화면 출력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결과	
<p>• 암호일련번호가 일치합니다. • 도로교통공단 전산 자료와 일치합니다.</p>	
성명	_____
생년월일	_____
운전면허번호	_____
조회 일시	2021년 05월 31일 13:30
<b>확인</b>	

#### ▣ 조회결과 및 의미

운전면허정보 조회 결과는 미하와 같으며, 조회결과가 "00(정상)"이 아닌 경우 운전에 부적합함을 의미 합니다.

코드	결과	의미
00	정상	이상없음.
01	면허번호 없음	입력한 운전면허번호가 발급된 내역에 없음.
02	재발급된 면허	입력한 운전면허번호가 재발급 되기 이전의 면허번호임 (구 면허)
03	분실된 면허	입력한 운전면허번호가 분실된 운전면허증의 운전면허번호임.
04	사망 취소된 면허	입력한 운전면허증 정보는 취소된 면허임.
11	취소된 면허	취소된 면허증
12	정지된 면허	정지된 면허증
13	기간 중 취소면허	입력한 대여기간(시작일 ~ 종료일) 중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발생함.
14	기간 중 정지면허	입력한 대여기간(시작일 ~ 종료일) 중 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발생함.
21	정보 불일치(이름)	입력한 이름이 "해당 운전면허번호로 발행된 운전면허정보의 이름과 불일치 함".
23	정보 불일치 (암호일련번호)	입력한 암호일련번호가 "해당 운전면허번호로 발행된 운전면허정보의 암호일련번호"와 불일치 함.
24	정보 불일치(종별)	입력한 종별이 "해당 운전면허번호로 발행된 운전면허정보의 종별과 불일치 함".
25	필수값누락(대여기간)	대여기간이 검증요청일보다 이전이거나 누락됨.

## ② 운전면허증 및 원동기면허증 확인 시 유의사항

### -> 운전면허증 예시



※ 운전면허증은 **갱신기간** 또는 **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되면 **신분증** 효력이 없음



### (3) 모바일 신분증 확인

#### ① 모바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방법 (내방고객에 限)

- ① 정부24 앱 실행 > 로그인> 메뉴(≡) > 서비스 > 간편 확인/안내 > 사실/진위확인  
> 맨 아래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선택
- ② 고객 : 모바일 주민등록증 QR코드 제시
- ③ 주민등록증 QR 진위확인 > 진위여부 결과확인
- ④ 고객 작성 신청서상에 인증확인 결과 기재  
※ 고객 본인 명의 단말기1개만 가능



※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경우

- ▶ 앱 인증 + S\_Life 화면내 추가 인증 후 업무별 신청서 내 기재 요망

## ②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방법 (내방고객에 限) \_ 2022.7.28. 발급 시행

- ①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 설치 > 모바일 운전면허증 > '실명인증:공공기관, 금융기관'선택 > 고객에게 정보요청
  - ② 고객 : 모바일 운전면허증 QR코드 제시 > 정보 일치여부 확인
  - ③ 고객 작성 신청서상에 인증확인 결과 기재
- \* 모바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3년임. / 고객 본인 명의 단말기1개만 가능

**모바일 운전면허증 알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뒷면**

**국안으로 확인하기**

✓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동적 이미지를 확인하여 위·변조된 이미지와 구분하세요.  
※ 도로교통법 제85조 및 시행규칙 제77조

고객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때

**검증앱으로 확인하기**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사용하세요.

※ 기존 운전면허증은 모든 정보를  
보여준 것과 달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필요한 정보만  
요구하고 제공받는 구조예요.

**검증앱 사용방법**

① 검증앱 실행 → ② 요청정보 선택 → ③ 운전면허증의 QR코드를 읽기 → ④ 신원정보 확인

**검증앱 사용방법 예시**

① 신분증 요청  
② 모바일 운전면허증 QR 보여주기  
③ 검증앱으로 QR 촬영 (설정과 정보가 소지자에게 요청됨)  
④ 진위확인된 신원정보 확인  
⑤ 요청받은 정보 확인 및 제공 충인

**여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요!**

### ③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 방법 (내방고객에 限) \_ 2023. 6. 5. 발급 시행

- ① 모바일 신분증 검증 설치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 '실명인증: 공공기관, 금융기관'선택  
> 고객에게 정보요청
- ② 고객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QR코드 제시 > 정보 일치여부 확인
- ③ 고객 작성 신청서상에 인증확인 결과 기재  
: 발급일자, 유효기간, 발행처 기재 (처리계 내 시스템 반영 전까지)  
※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유효기간은 확인 必 - 고객 본인 명의 단말기 1개만 가능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IC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 (4) 외국인등록증 확인

### ① 인터넷을 이용한 진위확인 방법

①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 → 등록증/거소증유효확인 클릭 → 본인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 실시



### ② 정보 입력 후 확인 클릭

등록번호 ①  발급일자 ②  조회  
일련번호 ③  (※ 2011.1.1. 이전에 발급된 등록증은 일련번호(③)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회  
초기화  
입력확인 3 7 2 5 (옆 그림의 숫자를 입력하십시오.)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번호(①) 입력 시 “-”는 생략하고 13자리의 수만 일련번호(③)로 입력하십시오.  
\* 구 신분증에는 “발급일자”라는 항목명이 없으나, 사진 아래에 인쇄된 두 날짜 중 상단의 날짜가 발급일자입니다.



일련번호 1-023-111-1111 (3)  
• 체류기간 (Duration of Stay)  

이기일자	만료일자	체 인
2023. 04. 01	2025. 04. 01	서 울

  
• 체류지 (Address)  

신고일	체 류 지
2023. 04. 01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8 양천도량그린빌 1405동 1202호

등록 및 취업가능 확인 [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민원안내 국번없이 1345 (하이코리아)

### ③ 결과 확인 및 화면 출력

#### 외국인등록증 유효확인 조회결과

귀하게서 조회하신 외국인등록번호  , 발급일자  일련번호   
법무부가 보유한 정보와 일치 합니다.

※ 조회결과는 전산기록과 비교한 것으로 위조제작이나 사전교체 등 위·변조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상 체류기간 경과건 신분증 효력이 없음

### ② 외국인등록증 확인 유의사항

■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머무르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신분증

■ 2023.4.1.일부터 외국인등록증 디자인 변경

- 컬러사진 인쇄 크기확대(35%), 사진위치 왼쪽에서 오른쪽 변경,  
성별 생략하여 주민등록증과 통일성 확보(7번째 숫자 5-7은 남성, 6-8은 여성)

■ 2023.7.20.일부터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실 확인 가능

-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실 확인

. 접수번호 ①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 외국인등록번호 ②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초기화"/>
. 입력확인	2154 <input type="text"/>	(옆 그림의 숫자를 입력하십시오.)

-> 외국인등록증 예시

**디자인 개선사항** Changes to Card Design

**신형 외국인등록증 New Design**



사진인쇄방식 Type of Photo Print	흑백 Black and white	컬러 Color
사진 크기 Photo Size(mm)	22.5 * 28.6	26 * 33.5
사진 위치 Photo Location	왼쪽 Left	오른쪽 Right
QR 코드 QR Code	X	O

**구형 외국인등록증 Older Design**



**① 색 변환 잉크 Optically Variable Ink**  
보는 각도에 따라 'KOR' 문자의 색상이 금색에서 녹색으로 변함  
Letters 'KOR' change from copper to green when viewed at an angle

**KOR → KOR**

**② 컬러사진(레이저 각인+컬러재전사)**  
Color image(laser engraving+retransfer printing)

**③ 투명 홀로그램 Embedded Transparent Hologram**  
보는 각도에 따라 두 가지 색상이 치환되어 나타남  
Pattern colors are reversed depending on viewing angle



**④ 다중레이저이미지 MLI(Multiple Laser Image)**  
보는 각도에 따라 카드 표면에 형성된 렌즈에 숫자와 얼굴 이미지가 번갈아 나타남  
Depending on the angle, the lens on the surface of the card alternates between numbers and facial image



**⑤ QR Code**  
외국인등록증 앞면에 수록된 정보 내용\*  
The QR code contains information displayed on the front of the card

\*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성별, 국가/지역, 체류자격, 발급일자  
Registration No., Name, Sex, Country/Region, Status, Issue Date

### ③ 외국인등록증(영주증) 확인 시 유의사항

-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 및 체류기간의 상한이 없는 외국인에게 발급
- 2023.4.1.일부터 외국인등록증 디자인 변경
  - 컬러사진 인쇄 크기확대(35%), 사진위치 왼쪽에서 오른쪽 변경,
  - 성별 생략하여 주민등록증과 통일성 확보(7번째 숫자 5·7은 남성, 6·8은 여성)

->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예시



### ④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확인 시 유의사항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
- 2023.4.1.일부터 외국인등록증 디자인 변경
  - 컬러사진 인쇄 크기확대(35%), 사진위치 왼쪽에서 오른쪽 변경,
  - 성별 생략하여 주민등록증과 통일성 확보(7번째 숫자 5·7은 남성, 6·8은 여성)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예시



## ⑤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주민등록증) 유의사항 (2016. 6.30일이전 발급)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자,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 2016년 6월 30일이전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은 효력 상실)



- 2016.7.1.일부터 발급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이란?

재외국민 또는 15.1.22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주민등록하고 “재외국민”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것  
(주민등록이 된 만17세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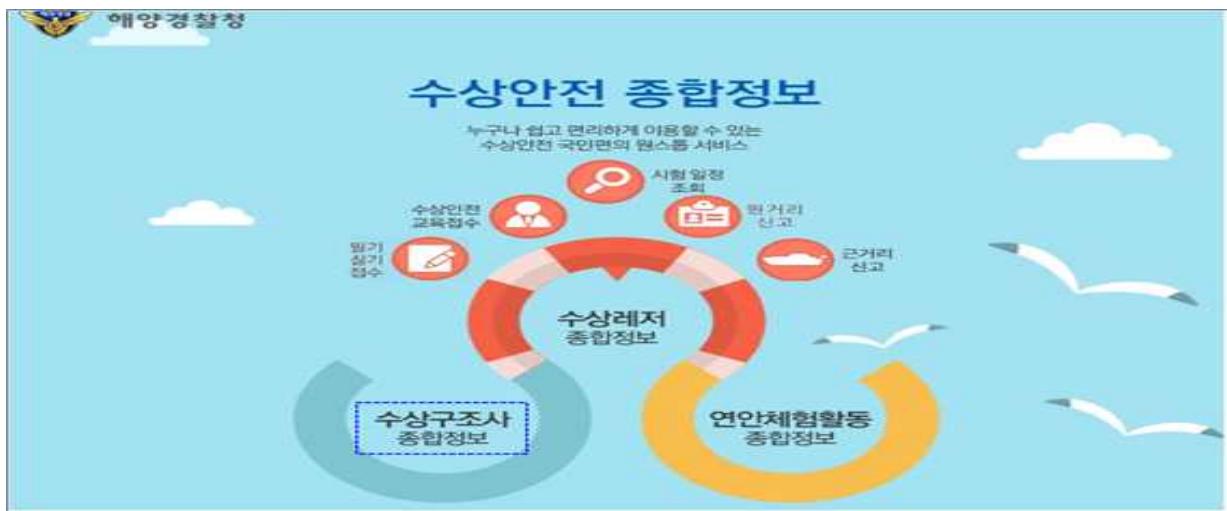
## ⑥ 체류자격

체 류 자 격	외교/공무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
	취업 체류자격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관광취업(H-1)
	사증면제/관광통과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비영리 단기 체류자격	일시취재(C-1),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일반 장기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기타(G-1)
	외국인등록번호	- 1999년 까지 출생: 남자 5, 여자 6 시작 - 2000년 이후 출생: 남자 7, 여자 8 시작

## (5)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증 확인

### ① 인터넷을 이용한 진위확인 방법

- 수상안전 종합정보(<https://imsm.kcg.go.kr>) → 수상구조사 종합정보 클릭



- 자격증 진위여부 조회 클릭



- 정보 입력 후 결과 조회 및 화면 출력

## ②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확인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예시



## (6) 여권 확인

### ① 인터넷을 이용한 진위확인 방법

① 정부24(<http://www.gov.kr>) → 검색란에 '여권' 입력 → 여권 정보 진위 확인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Gov24 homepage with a search bar containing '여권'. Below the search bar, a sidebar lists various passport-related services such as '여권 번호', '여권 만료일', '여권 조회', etc. The main search results list includes '여권 정보 진위 확인' and '여권 발급 이력 조회'. To the right, there is a sidebar for '소득금액 증명'.

② 조회하기 클릭

This screenshot shows the detailed information page for checking passport authentication. It includes sections for '여권 번호' (Passport Number), '여권 만료일' (Expiration Date), '여권 조회' (Check Passport), '여권 발급 안내' (Passport Issuance Guide), '여권 정보' (Passport Information), '여권 번호조회' (Check Passport Number), '여권 만료' (Passport Expiration), '여권 번호 조회' (Check Passport Number), and '여권 조회' (Check Passport). The page also displays the user's name '김민정' and birthdate '2020.12.04'. At the bottom, a red box highlights the '조회하기' (Check) button.

### ③ 정보 입력후 조회

진위확인조회

표시는 할 수 입력사항입니다.

한글성명	김
여권번호	M11
발급일	20 09 20150101
기간만료일	20 09 20250101
생년월일	19 09 19900525

**조회** **취소**

### ④ 결과 확인 후 화면출력

진위확인결과

한글성명	김
생년월일	19

[유효한 여권]여권정보가 일치 합니다.

**메뉴로 돌아가기**

### ② 여권 확인 시 유의사항

- 고객 서명과 여권 상의 서명 일치 여부 확인
- 여권 기간 만료여부 확인 (만료된 여권 사용 불가)
- 2020.12.21.일이후 발급된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가 생략된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주소 확인 가능 서류(등/초본, 공과금납입 영수증 등) 추가 발급

### -> 여권 예시

신형 여권 앞면 (주민번호 미포함)	여권정보증명서																		
	<p>여권정보증명서</p> <p>처리담당자: 양문정 / 중구(2022-11-30)</p> <p>발급번호: 22-BQA-L-0000329</p> <p><b>여권 정보 증명서</b></p> <p>이 증명서는 아래 여권영의인의 여권발급 기록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성명</th> <th>주민번호</th> <th>여권번호</th> <th>발급일자</th> <th>종류</th> <th>유형</th> </tr> </thead> <tbody> <tr> <td>한글: 홍호운</td> <td>600905-2024312</td> <td>M032R3028</td> <td>2022.09.26</td> <td>일반</td> <td>복수</td> </tr> <tr> <td>영문: HOWOON HONG</td> <td></td> <td></td> <td>2032.09.26</td> <td></td> <td></td> </tr> </tbody> </table>	성명	주민번호	여권번호	발급일자	종류	유형	한글: 홍호운	600905-2024312	M032R3028	2022.09.26	일반	복수	영문: HOWOON HONG			2032.09.26		
성명	주민번호	여권번호	발급일자	종류	유형														
한글: 홍호운	600905-2024312	M032R3028	2022.09.26	일반	복수														
영문: HOWOON HONG			2032.09.26																



### (7) 장애인등록증 확인

## ①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방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 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중 1종류만을 발급
    - 장애인등록증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카드 :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등록증에 재판정시기 및 유효기간 표기(2013년 4월 1일)
    - 2013년 4월 1일 이후 신규발급 및 재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 유효기간 확인
    -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신분증 인정 불가
  - 신분증 진위확인 불가로 본인확인 철저 (본인명의 휴대전화/신용카드/카카오인증 택일 1 수행)
    - 장애인등록증 사진 및 내방인 실물대조, 자필서명 등
    - 성명, 주민번호, 주소 기재여부 확인

-> 장애인등록증 예시

## (8) 국가보훈등록증(구>국가유공자증) 확인

### ① 국가유공자증 진위 확인 방법

- 신분증 진위확인 불가로 본인확인 철저 (본인명의 휴대전화/신용카드/카카오인증 택일 1 수행)

- 국가유공자증 사진 및 내방인 실물대조, 자필서명 등
- 성명, 주민번호, 대상, 보훈번호, 발급처 기재여부 확인

→ 2005년 2월 이후 발급된 국가유공자증만 사용가능 ([발행일 확인](#)) → **2028.6.4.일까지만 사용 가능**



### ② 국가보훈등록증 진위 확인 방법 (23. 6. 5일부터 교체 발급 실시)

- 국가보훈부(<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800>) →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 실시**

- 국가보훈등록증 사진 및 내방인 실물대조, 자필서명 등
- 성명, 생년월일, 보훈번호, 발행일을 입력 후 '확인' 버튼 누름



### ▶ 공인 신분증화 : 국가유공자증에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재발급 교체 신분증(23.6월부터)부터 인정

※ 거동불편자(중상이, 고령, 질병 등) -> '25~'27년 방문 발급 서비스 실시 (1577-0606)

※ 국가보훈등록증은 국가유공자와 8종을 통합 발급

### ■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

- 신청인 정보 입력
- 유공자증 전면 교체발급에 따른 신분증 진위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국가보훈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명, 생년월일, 보훈번호, 발행일을 입력 후 확인

*성명	<input type="text"/>
*생년월일	<input type="text"/>
*보훈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발행일	<input type="text"/> 
아래의 숫자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b>892689</b>	
<input type="button" value="새로고침"/> <input type="button" value="음성듣기"/>	
진위확인결과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input type="button" value="초기화"/>	

## (9) 공무원증 확인

### ① 공무원증 진위 확인 방법

- **신분증 진위확인 불가로 본인확인 철저** (본인명의 휴대전화/신용카드/카카오인증 택일 1 수행)
- 공무원증 사진 및 내방인 실물대조, 자필서명 등
  - 성명, 생년월일, 발급처 기재여부 확인

-> 공무원증 예시



## ■ FAQ

### 1. 여권정보증명서 발급은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및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권 신청할 때 방문했던 행정복지센터나 여권 출장소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거나 해당 건물 안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창구에서 받으시면 수수료가 1,000원이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수수료 무료입니다.

꼭 자신이 여권을 신청했던 곳으로 가지 않아도 전국 어디에나 시청 민원봉사과 여권팀 또는 여권 출장소에 방문하시면 발급 가능

※ 2020년12월21일 이후 여권을 발급 받으셨다면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를 둘 다 지참해야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

#### [가장 편한 방법]

- 영사민원24(<https://consul.mofa.go.kr/>) 홈페이지 접속 -> '여권 정보 증명서 발급' 버튼 -> 비회원 로그인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확인' 누르기 -> 공동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인증 또는 핸드폰 인증하기  
-> 신청자 정보, 신청 정보, 신청대상 선택 후 '신청하기' -> 결과 조회 -> 문서 출력 순으로 진행

#### ※ 기타 참고

##### 해외제출용 여권사실증명도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 여권사실증명 4종 서비스시작, 직접 방문 불편 없애

부서명 :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 작성일 : 2022-12-05 | 조회수 : 2433

 [22-1085](보도자료) 해외제출용 여권사실증명도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 여권사실증명 4종 서비스시작, 직접 방문 불편 없애.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Q](#)

 [22-1085](보도자료) 해외제출용 여권사실증명도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 여권사실증명 4종 서비스시작, 직접 방문 불편 없애.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Q](#)

우리 국민이 해외 방문시 다른 국가에서 요구하는 여권사실증명도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12월 5일(월)부터 여권사실증명 4종(여권정보증명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에 대하여 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외교부 온라인 아포스티유 홈페이지([www.apostille.go.kr](http://www.apostille.go.kr))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절차를 통하여 본인 인증절차만 거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해외제출용 여권사실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외교부 영사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다.

외교부는 해외제출용 증명서의 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 가능 증명서를 점차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으며, 비대면 디지털 여권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끝.

### 2. 재외국민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가능?

-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 이동통신사를 이용하신다면 발급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 가운데 기타 결격 사유가 없는 운전자에 한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 됩니다.

### 3. 모바일 신분증 법적 근거?

#### - 주민등록법 제25조 ②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확인서비스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제1항 본문에 따른 성명 · 사진 ·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위 조항에 따라 2022년 6월 29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업을 시범운영 시작했고,  
7월 1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함.

#### ※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

- 주민등록법에 보면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5조 제3항)  
즉,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이 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체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현재 발급가능한 모바일 신분증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현재 상용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그 발급 기관마다 사용 범위가 다르다.

# 목 차

가. 구비서류 접수기준 .....	30
나. 위임장(委任狀) 접수기준 .....	31
다. 인감증명서 접수기준 .....	31
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접수기준 .....	37
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39
(1) 가족관계증명서 .....	39
(2) 기본증명서 .....	41
(3) 혼인관계증명서 .....	44
(4) 입양관계증명서 .....	44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44
바. 공증서류 화상공증 서비스 이용 안내 .....	45
사. 아포스티유(Apostille) 제도 이해 .....	47
FAQ .....	49

## 2. 구비서류 접수기준\_공통

### 가. 구비서류 접수기준

(1) 서류기준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등

(계약관계자 1인당 1매 징구 – 동일자 업무처리 시)

(2)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 서류별 유효기간 상이 → 진위 확인 필요 시 진위여부 기재 必

#### ■ 고객 접수서류별 발급처 및 접수 가능 유효기간

구비서류명	유효기간	발급처	인터넷 발급
주민등록등·초본	3개월이내	정부24	<a href="https://www.gov.kr">https://www.gov.kr</a>
주민등록등·초본_(생존확인용)	7일이내		
가족관계등록부 5종 (기본, 가족, 혼인, 입양, 친양자)	3개월이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a href="https://efamily.scourt.go.kr">https://efamily.scourt.go.kr</a>
제적등본	3개월이내		
후견인부존재증명서	3개월이내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a href="https://efamily.scourt.go.kr">https://efamily.scourt.go.kr</a>
후견등기사항증명서	30일이내		
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개월이내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이내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방문	무인발급기 가능(인감카드 보유 시)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이내	사업장 관할 등기소	<a href="http://www.iros.go.kr">http://www.iros.go.kr</a>
사업자등록증	3개월이내	국세청(홈텍스)	<a href="https://www.hometax.go.kr">https://www.hometax.go.kr</a>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이내	국세청(홈텍스)	<a href="https://www.hometax.go.kr">https://www.hometax.go.kr</a>
휴/폐업사실증명원	3개월이내		
설립허가증	3개월이내	국세청(홈텍스)	<a href="https://www.hometax.go.kr">https://www.hometax.go.kr</a>
고유번호증	3개월이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텍스	<a href="https://www.hometax.go.kr">https://www.hometax.go.kr</a>
재산관리인 선임확정서	3개월이내	관할법원	-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입금)	당일 1개월이내	재직 회사	-
거주사실확인서	3개월이내	재외국민 관할 공관 (재외국민 등록 必) 또는 영사민원 24	<a href="https://consul.mofa.go.kr/">https://consul.mofa.go.kr/</a>
재외국민등록부등본	3개월이내		
출입국 사실증명서(부재확인용)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이력확인용)	7일이내 3개월이내	법무부 또는 정부24	<a href="https://www.gov.kr">https://www.gov.kr</a>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3개월이내	법무부 또는 정부24	<a href="https://www.gov.kr">https://www.gov.kr</a>
시민권자 거주증명서	3개월이내	본국 행정기관(본국 관공서)	-
동일인증명서	3개월이내	본국 행정기관(본국 관공서)	-
영사확인 '위임장'	3개월이내	재외국민 관할 공관 또는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필요 사항 : PC, 공인인증서, 한국 개통한 모바일,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증 서류	3개월이내		
수감증명서 / 재소확인서	3개월이내	관할교도소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3개월이내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텍스	<a href="https://www.hometax.go.kr">www.hometax.go.kr</a>

## 나. 위임장(委任狀) 접수기준

- (1) 청구권자(위임하는 자) 자필 작성 및 인감 또는 서명 날인
- (2) 위임하는 자, 위임받는 자, 위임 내용(계약번호,업무) 등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누락 없이 작성 확인
- (3) 위임장 날인 인감(서명)과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인감(서명) 일치여부 확인

## 다. 인감증명서 접수기준

- (1) 인감증명서 발급 “본인·대리발급용” 제한 없이 접수 가능  
→ 위임에 의한 대리발급의 경우 위임장에 인감이 날인되지 않고 교부되는 점을 감안,  
거래에 대한 본인의사 여부 반드시 확인 (위임여부·위임사항(청구유형)·발급일자 확인 등을 통한 본인확인 철저)  
**▶ 인감증명서 본인발급 제출의 경우\_ 유선확인 절차 생략(2023.7월부터 시행) (단>사망관련은 전건 유선확인)**
- (2) 하기 위·변조 식별요령에 따라 확인
  - 복사 또는 팩스 전송하면 “사본” 문자가 나타남
  - 복사물 및 프린터 출력물에서는 정부 마크 부위의 미세문자인 “대한민국” 문자가 재현되지 않음
  - 용지 상, 중 하 3개소에 인쇄된 정부마크는 45°C 정도의 열을 가하면 사라짐
- (3) 진위확인 후 인감증명서에 진위확인완료 여부 및 확인자 서명(인감 확인 이상없음)을 기입

**S\_Life 内 확인 절차**

▶ [NPAB0100] 신분증스캔처리 | 일반지급 > 지급신청 > 지급신청

☆ [NPAB0100] 신분증스캔처리 | 일반지급 > 지급신청 > 지급신청

■ 신원검증

신원확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	인증번호	선택	선택	선택
스캔결과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형식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신분증인식							

인식 결과를 육안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시 웹사이트를 통해 재확인 해 주십시오.

밝기조절 기본

스캔초기화  자동마스킹 스캔 출력

※S\_Life 内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검증은 개인고객에 한해 가능

※참고> “개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분은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사용 할 수 없음 [출처:정부24]

## S\_Life 이외 확인 절차

### ① 인터넷을 이용한 개인 인감증명서 진위확인 방법

(1) 정부24(<https://www.gov.kr>) → 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The screenshot shows the main navigation bar of the Government 24 website. The '서비스' (Service)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yellow circle and the number '1'. Below it, the '사실/진위확인' (Fact/Truth Verification) button is also highlighted with a yellow circle and the number '2'. The page content includes sections for service search, service application, and fact/truth verification.

(2) 인감증명서발급 사실확인

The screenshot shows the 'Fact/Truth Verification' section of the Government 24 website. It lists several services for verifying document signatures:

-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 (Internet issued document verification)
-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 (Signature verification issuance fact check) - highlighted with a blue box
- 본인서명발급 사실확인 (Self-signature issuance fact check)
- 주민등록 등·조본 발급 진위확인 (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ssuance verification)
- 주민등록 등·조본 발급내역 확인 (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ssuance record check)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장김해제 (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 verification/Stamp removal)

### (3) 인감증명서 정보입력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발급일자	[ ] ( 예: 20160803 )		①
* 주민등록번호	[ ] - [ ]		②
여권번호	[ ]		③
* 확인용 발급번호	[ ] - [ ] - [ ]		④
※ 아래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 입력확인	597879	새로고침	음성듣기

인감증명 발급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발급한 발급일자,  
주민등록번호 및 확인용발급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취소**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4호서식)

**④ 확인용 발급번호**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용 번호	1250 - 31 - 1		
신청인·출길동 (생년월일: 1980. 01. 01.), 담당자: 강달달 (전화: 010-XXXX-XXXX)			
※ 이 품자는 <a href="#">이용약관</a> 과 <a href="#">개인정보처리방침</a> 을 읽어 하시오.			
주민등록번호	1 2 3 4 5 6 - 1 2 3 4 5 6 7	인감증명서	본인 ○ 대리인 □
성명(한자)	출길동 (洪吉洞)	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③ 여권번호	인감
국적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별포리		
등 도 별 판 비 고	[ ] 부동산 매수자, [ ] 자동차 매수자		
	설명 (설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발급신청자) (서명)			
1.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정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 사실을 최대 3주로 즉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인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동됩니다. 3. 주민등록번호만에는 미주민등록·제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국내거소신고자와 결혼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의 경우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그 아래에 ( ) 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발급합니다. 5. 부동산 또는 차량 등 차(자동차)·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배도 등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배수 제로 설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또는 자동차 배도를 띠는 경우에는 '번지'으로 표시합니다. 6. 종도의 일반용란은 「문법체율법」, 「OO은행의 대출통으로만 사용」 등 자주쓰는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형추건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앞당 공부란이 간접인에게 구체적인 용도를 확인하여 적절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7. 배수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여, 주소는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합니다. 8.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의 표시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는 비고란에 합니다. 비고란은 계약한 사항인 경우 개별 한 상황 등 전형인 유통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9.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을 전자문서방문구 <a href="http://eionon.go.kr">www.eionon.go.kr</a> 를 통하여 「발급일·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용 번호·주민등록번호·발급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제3자 신고해야 하는 불문법이 전국 출판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한 원리한 제도입니다.			
발급번호 No. 01	*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장을 동명합니다.		
<b>① 발급일자</b>			
2020년 01월 01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장 <b>확인</b>			

#### ① 발급일자

ex) 20230323 8자리로 입력

#### ②③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입력

\* 재외국민의 경우 인감증명서에  
여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여권번호 입력

#### ④ 확인용 발급번호

그림에 있는 번호(숫자형식) 입력

### (3) 결과 확인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

발급일자	20221208
주민등록번호	650708 - -----
여권번호	X
확인용발급번호	0560 - -----

입력한 내용은 본인이 발급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시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실확인 다시하기](#)

정확하게 입력하셨다면 다음과 같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 ② 인터넷을 이용한 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 진위확인 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발급확인하기 → 인감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1 등기열람/발급

등기신청 전자납부 확장일자 서비스 소개 자료센터 통계 나의메뉴

2 발급확인하기

3 → 인감증명서

부동산  
• 열람하기  
• 서면발급하기  
• 미열람/서면 미발급 보기  
• 전자발급하기  
• 발급확인하기  
•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 폐쇄등기부 등 발급예약  
• 부동산거래 체크리스트  
• 부동산소유현황

법인  
• 열람하기  
• 서면발급하기  
• 미열람/서면 미발급 보기  
• 전자발급하기  
• 발급확인하기  
• 발급예약(30통 이상)  
•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 인감정보관리  
• 발급예약(폐쇄등기부)

동산·체권담보  
• 열람하기  
• 발급하기  
• 미열람/미발급 보기  
• 발급확인하기  
•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 접수관 발급하기

기타  
• 발급확인하기  
•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전자발급 생년월일 확인

3  
• 인감증명서의 발급확인번호, 인감제출자 정보(직책 설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누르십시오.  
• 인감제출자란에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인감제출자의 직책과 설명을 동일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 '대표이사 총괄동'  
• 인감제출자 정보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선택 후 입력하시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외국인 등은 '생년월일'을 선택 후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동일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 '1970년 10월 1일생'  
• 인감증명서 발급사설확인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 이의 신청시 첫화면 우측하단 전자민원센터 > Q&A에 있는 '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의 발급확인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조회 가능 합니다.  
- 서비스 이용 방법 : 모바일 기기에서 <http://m.iros.go.kr>로 접속할 경우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사이트로 자동 이동됩니다.

## (2) 인감증명서 정보입력

법인인감증명서 하단의 발급확인번호 및 인감제출자 정보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①	
인감제출자	<input type="text"/>		
<input checked="" type="radio"/>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③	
<input type="radio"/> 생년월일	<input type="text"/>		※ 외국인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생년월일이 등기된 경우 입력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NOTICE**

- 인감증명서의 발급확인번호, 인감제출자 정보(직책·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를 입력 후 '확인'버튼을 누르십시오.
- 인감제출자란에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인감제출자의 직책과 성명을 동일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 '대표이사 홍길동'
- 인감제출자 정보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선택 후 입력하시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외국인 등은 '생년월일'을 선택 후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동일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 '1970년 10월 1일생'
-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 이의 신청시 첫화면 우측하단 전자민원센터 > Q&A에 있는 '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의 발급확인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조회가능 합니다.  
- 서비스 이용 방법 : 모바일 기기에서 <http://m.iros.go.kr>로 직접 접속하거나,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http://www.iros.go.kr))로 접속할 경우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사이트로 자동 이동됩니다.

인 감 증 명 서	
상 호 : 주식회사	① 발급확인번호 우측하단에 위치한 발급번호 입력
본 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② 인감제출자 사내이사 박XX, 대표이사 이XX와 같이 직책과 성명을 동일하게 입력
관할등기소 : 경기도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 발행등기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③ 주민등록번호 인감제출자 정보에 주민등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외국인등은 아래의 생년월일을 선택 후 입력
이 인감은 등기소(과)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별별 없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10월 01일	
법원 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수수료 1,000원 영수증.	
1. 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 <a href="http://www.iros.go.kr">http://www.iros.go.kr</a> )의 인감증명서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분자전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통보받을 ① 발급확인번호 수 있습니다. (전국 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211004623150101001011015200521180192TOM1KID1D4L8S2 2	
- 1/1 -	

### (3) 결과 확인

**인감증명서 발급사실확인**

입력하신 발급확인번호 및 인감제출자 정보와 일치하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확인 번호	2015111200123456789
발행일	2015년 11월 12일
발행등기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확하게 입력하셨다면 다음과 같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FAQ

#### 1.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유효기간 기준 근거?

- 부동산 매도용 이외에 인감증명서 등에 경우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기간을 적용해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등기사무처리지침 등에  
준하여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 ● 부동산등기규칙 제 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6. 12. 16.

[등기예규 제1609호, 시행 2017. 1. 1.]

##### 제9조(유효기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접수기준(2012.12.1. 시행) 인감증명서 대체 서류

->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과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 국적등포도 가능함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의 경우 수임인 및 용도기재 시 유선확인 절차 생략(2023.7월부터 시행)  
(단>사망관련은 전건 유선확인)

-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위임장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 2) 용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예시: 신한라이프 중도인출업무, 신한라이프 계약 해지, 신한라이프 계약자변경) 위임장 상의 위임업무와 일치하는지 확인 : 내용 수정사항 있을 시 고객 유선확인 必
- 3) 위임받은 사람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되어있는지, 위임장 상의 위임받은 자와 일치하는지 확인
- 4) 진위확인 수행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진위확인 결과 기재, 확인자 서명

### S\_Life 이외 확인 절차

#### ① 인터넷을 이용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확인 방법

- (1) 정부24(<https://www.gov.kr>) → 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The screenshot shows the Gov24 homepage. A red box highlights the '서비스' (Services) tab at the top. A yellow circle with the number '1' is placed over the '서비스' tab. Another yellow circle with the number '2' is placed over the '사실/진위확인' (Fact/Truth Confirmation) link under the '인증' (Verification) section. The page displays various service categories like '신청/조회발급' (Application/Query/Issuance), '원스톱/생체주거/꾸리미 서비스' (One-stop/Residence/Smart Home Services), and '면밀/대상별 서비스' (Specific/Mass Services).

- (2) 본인서명발급 사실확인

The screenshot shows the 'Fact/Truth Confirmation' page. It lists several services:

-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 (Internet issued document verification): An online service where the authenticity of a document issued by an agency can be checked.
-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 (Seal verification): A service where the authenticity of a seal issued by a government office can be checked.
- 본인서명발급 사실확인 (Signature verification): A service where the authenticity of a handwritten signature can be checked.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진위확인 (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 verification): A service where the authenticity of a 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 can be checked.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내역 확인 (Resident registration issuance history check): A service where the issuance history of a resident registration certificate can be checked.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장김해제 (Resident registration card verification/Stamp removal): A service where the authenticity of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can be checked.

### (3) 본인서명사실 정보입력 및 결과 확인

**본인서명발급 사실확인**

**본인서명발급 사실확인**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① * 발급기관 (서구구)	검색
② * 발급일자	( 예: 20160803 )
③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번호를 입력 ※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④ 여권번호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입력하세요.
⑤ * 문서확인번호	※ 아래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⑥ * 입력확인	540062 새로고침 증상증기

본인서명 발급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발급기관과 발급일자, 주민등록번호 및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시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취소**

■ 본인서명사실 확인번호 (4자리)  
문서확인번호 4877-1414-1204-5140 ※ 이 번호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윤 XX	※ 서명
주민등록 번호	480000-01000000	※ 유통
주소	③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기소신고번호) 또는 ④여권번호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세대원정 및 경정(간접경정, 전세권 설정 등) ※ 그 밖의 용도(가동기, 가동기밀수 등)
	※ 성명(영문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거래상대방 등 주소	※ 민관
	부동산 관련 위해 용도	※ 민관
수입현	※ 생년	※ 민관
	주소(자연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취업하는 경우만 작성)	※ 민관
비고		
발급번호	No. 00000315	②발급일자 (월) 2017년 12월 03일
※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하세요 <b>①발급기관(시구구)</b>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면장		
<p><b>유의사항</b></p> <p>1. 서명은 특성과 고유의 형세로 개인적 성격을 한글 또는 한자(한글화)로만은 비롯한 등록번호, 국내거소번호는 국세청으로부터 기호로 다른 사람에 알리게 될 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2.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국내거소번호와 함께에는 국내거소번호만을,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판에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아래에 주민등록번호를 1회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품도, 영업현장은 신청인이 이를 작성하여,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영급기관이 책임지게 됩니다. 4. 품도는 관련 품도란은 부동산 관련 품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1회 표기하고, 거래장래방 등판에는 부동산매수인 등 거래상대방의 성명(영문명), 부동산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만 표기합니다. 거래장래방 등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별각에 적어 신청합니다. 5. 부동산 관련 피해 품도란은 주요 피해자로 표기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2층동화재로(예상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해충로-증기-연락등 1회) 6. 영업현장은 이전 사용에게 허설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행 및 주요 피해자에게 해당하는 경우 주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는 현장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면허사, 범주사 등 과목을 표기하여 제작되는 경우에는 실명판에 과목을 표기하여 영업과 차별성을 기재하는 주소로 기재하기 됩니다. (예시: 000-000-0000) 7. 품도 이후에 품도, 주민등록 및 거제사항을 일련번호로 표기하거나, 이 확인서를 편조·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이고장에는 이정년과 또는 원통지장의 표기의 형성자리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영급마찰에 대한 확인은 인증(www.mirwon.go.kr) 통해 발급한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발급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 ① 발급기관 검색

#### ② 발급일자

ex) 20230323 8자리로 입력

#### ③④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기소신고번호를 입력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 입력

#### ⑤ 문서확인번호

#### ⑥ 입력확인

그림에 있는 번호(숫자형식) 입력

## 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가족관계등록법)

->: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을 대체하여 국민 개개인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 사항에 관한 등록 그리고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

### 가족관계등록부 5종

####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 종류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	
	공통	개별
가족관계증명서	① 등록기준지 ② 성명: 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③ 출생: 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한다)</li> <li>■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li> </ul>
기본증명서	④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li> </ul>
혼인관계증명서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li> <li>■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li> </ul>
입양관계증명서	⑥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li> <li>■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li> </ul>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li> <li>■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li> </ul>

#### ②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이해

##### (1) 가족관계증명서

공통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개별 사항	일반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전혼 자녀, 사망한 자녀 등)에 관한 사항
	특정	본인과 신청인의 선택한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예시> 만약 재혼을 하였고 자녀들이 있다면

일반증명서에는 현재 혼인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만 기록

상세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와 그 아이들을 포함하여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모두 나오고,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사망한 자녀 역시 표시 됨

\*상세로 발급받게 되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고자 특정증명서가 있음

## [샘플: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상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가족 관계 증명서 (상세)

등록기준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1234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김 본인(金本人)	1965년 01월 01일	650101-1*****	남	金海
가족사항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부	김영철(金經哲)	1940년 04월 01일	400401-1*****	남	金熙
모	이은미(李恩美)	1942년 04월 02일	420402-2*****	여	全州
배우자	박예인(朴予潤)	1968년 02월 02일	680202-2*****	여	博仁
자녀	김일순(金一順)	1990년 01월 01일	900101-2*****	여	金海
자녀	김상준(金上俊) [사망]	1990년 05월 08일	900508-1*****	남	金熙
자녀	김상민(金上暉)	2003년 02월 01일	030201-3*****	남	金海

위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불일치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1월 04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홍길동



\* 위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상세증명서입니다.

발급시각 : 17시 00분  
신장면 : 김본인

발행번호 : 0000-0000-0000-0000  
\* 민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net.go.kr>)과 출생자 관리화면, 예금에서 발급일부터 3개월까지  
회원으로 이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가족 관계 증명서 (일반)

등록기준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1234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김 본인(金本人)	1965년 01월 01일	650101-1*****	남	金海
가족사항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부	김영철(金經哲)	1940년 04월 01일	400401-1*****	남	金熙
모	이은미(李恩美)	1942년 04월 02일	420402-2*****	여	全州
배우자	박예인(朴予潤)	1968년 02월 02일	680202-2*****	여	博仁
자녀	김상민(金上暉)	2003년 02월 01일	030201-3*****	남	金海

위 가족관계증명서(일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불일치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1월 04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홍길동



\* 위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일반증명서입니다.

발급시각 : 16시 56분  
신장면 : 김본인

발행번호 : 0000-0000-0000-0000  
\* 민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net.go.kr>)과 출생자 관리화면, 예금에서 발급일부터 3개월까지  
회원으로 이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AQ

### 2.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 배우자의 배우자인 '나'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 ①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 ②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 ③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여 발급

### 3.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자녀가 있어요

- ①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 포함)한 자녀
  - ② 혼인 외의 자녀 또는 전혼 중의 자녀
  - ③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 ④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12.31.이전에 국적상실된 자녀
- ★①~②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나옵니다.

### 4. 가족관계증명서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성명과 성별만 나오고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 12. 31. 기준으로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생존한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부나 모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고, 성명과 성별만 기록되어 다른 사항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부나 모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기본증명서

공통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개별 사항	일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상세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	
	특정	출생·사망·실종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
		인지·친생자관계정정	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 현재)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
		개명·성분변경	본인의 개명, 성·본창설, 성·본변경 등에 관한 사항
		국적 취득·상실	본인의 귀화,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에 관한 사항
		성별	본인의 성별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부분 정정 등에 관한 사항

### [샘플: 기본증명서(일반, 상세)]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 기본증명서 (일반)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1234		
구 분	상 세 내 용		
작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일】 2008년 01월 01일 【작성사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인	김본인(金本人)	1963년 01월 01일	650101-1***** 남

##### 일반등록사항

구 분	상 세 내 용		
출생	【출생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1234번지 【신고일】 1968년 02월 15일 【신고인】 부		

위 기본증명서(일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불일치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1월 04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홍길동



\* 위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원출한 일반증명서입니다.

발급시각 : 17시 16분  
신청인 : 김본인

발행번호 : 0100-2112-0044-0011  
※ 본 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의 증명서 전자화판인 배달표(쪽지 위·변조·애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방금만료부터 30일까지).

####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

##### ✓ 기본증명서 (상세)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1234		
-------	---------------------------	--	--

구 분	상 세 내 용		
작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일】 2008년 01월 01일 【작성사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인	김본인(金本人)	1963년 01월 01일	650101-1***** 남

##### 일반등록사항

구 분	상 세 내 용		
출생	【출생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1234번지 【신고일】 1968년 02월 15일 【신고인】 부		
경적	【경적자기입】 2020년 07월 01일 【허가법원】 서울가정법원 【신청인】 김본인 【경적일】 2020년 07월 31일 【경적내용】 주민등록번호 정정 【정정전수민등록번호】 650101-1***** 【정정후주민등록번호】 650101-1*****		

위 기본증명서(상세)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불일치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1월 04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홍길동



\* 위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원출한 상세증명서입니다.

발행번호 : 0000-0000-0000-0000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의 증명서 전자화판인 배달표(쪽지 위·변조·애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방금만료부터 30일까지).

## [샘플: 기본증명서(특정)]

### 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

#### ✓ 기본증명서(특정-인지·친생자관계증명)

등록기준지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555번지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황금빛(黃金빛)	1990년 11월 15일	901115-2*****	여	子州

####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세내용
인지	【인지증명서정정일】 2019년 06월 07일 【증명법원】 광주가생법원 순천지원 【인자자】 부 홍길동 【인자자의주민등록번호】 901115-1***** 【신고일】 2019년 06월 07일 【신고인】 홍길동 【처리관서】 전라남도 여수시

위 기본증명서(특정-인지·친생자관계증명)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불일치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1월 04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홍길동

\* 위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특정증명서입니다.

발급시간 : 17시 09분  
신청인 : 홍길동

발행번호 : 0900-0000-0000-0000

\* 전자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https://efamily.sconet.go.kr>)의 증명서 전송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부터 3개월까지 원본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개명, 성·본창설, 성·본변경 등에 관한 사항

#### ✓ 기본증명서(특정-개명·성·본변경)

등록기준지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장유라	1990년 01월 01일	900101-2*****	여	貞寧

####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세내용
개명	【개명허가일】 2019년 01월 14일 【허가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신고일】 2019년 01월 14일 【신고인】 장유라 【개명전이름】 나라(나라) 【개명후이름】 유라(유라) 【처리관서】 전라남도 여수시

위 기본증명서(특정-개명·성·본변경)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불일치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1월 04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홍길동

\* 위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특정증명서입니다.

발급시간 : 17시 06분  
신청인 : 장유라

발행번호 : 0000-0000-0000-0000

\* 전자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https://efamily.sconet.go.kr>)의 증명서 전송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부터 3개월까지 원본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현재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

#### ✓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현재)

등록기준지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111번지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김자리(金仔梨)	2015년 01월 01일	150101-3*****	남	金爾

####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세내용
친권	【친권자제정립일】 2017년 03월 02일 【친권자제정호리발생일】 2017년 03월 03일 【친권자부】 김아나 【친권자부의주민등록번호】 800101-1***** 【신고일】 2017년 03월 03일 【신고인】 부모 【처리관서】 전라남도 여수시

위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불일치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1월 04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홍길동

\* 위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특정증명서입니다.

발급시간 : 17시 12분  
신청인 : 김자리

발행번호 : 0000-0000-0000-0000

\* 전자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https://efamily.sconet.go.kr>)의 증명서 전송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부터 3개월까지 원본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귀화,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에 관한 사항

#### ✓ 기본증명서(특정-국적·취득·상실)

등록기준지 :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1번지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이애린(李愛琳)	1980년 09월 01일	800901-2*****	여	全主

####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세내용
국적취득	【국적취득일】 2019년 12월 11일 【국적취득전국적】 오스트레일리아 【신고일】 2019년 12월 11일 【신고인】 이어란 【처리관서】 전라남도 여수시

위 기본증명서(특정-국적·취득·상실)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불일치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1월 06일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홍길동

\* 위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출한 특정증명서입니다.

발급시간 : 16시 30분  
신청인 : 이어린

발행번호 : 0000-0000-0000-0000  
\* 전자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https://efamily.sconet.go.kr>)의 증명서 전송확인 메뉴에서 발급일부터 3개월까지 원본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AQ

### 5. 기본증명서에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성·본 변경 내용이 나오나요?

-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입양에 따른 성·본 변경등은 입양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서 기본증명서가 아닌 피입양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6. 형제자매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증명서 교부 청구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형제자매에게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헌재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한 바에 따른 것입니다.

- 다만, 형제자매가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또는 '본인등의 위임 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7. 친권이라 함은?

- 부모가 어버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말합니다.  
친권의 내용으로는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권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및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 친권자

- ① 부모의 공동행사 : 미성년자인 자의 법률상의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합니다.

#### ② 친권자의 지정 :

- 우선 부모가 협의하여 지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친권자의 지정사유가 있더라도 미성년자가 성년으로 되거나 혼인한 때, 부모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때와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상실한 때에는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
- 미성년자인 혼인 외 자를 인지한 때
- 미성년자의 부모의 혼인이 취소된 경우
- 미성년자의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父)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 때
-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 「민법」 제909조의2(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7조의2제2항 및 제931조제2항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

#### ③ 친권자의 변경 :

- 친권자가 지정되어 있는 때에도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④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 부모가 「민법」 제909조제4항에 따라 친권자를 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8. 인지란?

■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인지는 피인지자가 사망하거나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 ■ 인지의 종류

- 임의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 인지의 의사표시,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민법 제859조)  
인지의 효력은 그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발생함(민법 제860조).
- 재판상인지 :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효과를 발생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청구의 소가 있음  
(민법 제863조).

## (3) 혼인관계증명서

공통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b>*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b>
개별 사항	일반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b>현재의 혼인</b> 에 관한 사항
	상세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b>혼인 및 이혼</b> 에 관한 사항
	특정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b>과거의 혼인</b> 에 관한 사항

## (4) 입양관계증명서

공통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개별 사항	일반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b>현재의 입양</b> 에 관한 사항
	상세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b>입양 및 파양</b> 에 관한 사항

##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공통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개별 사항	일반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b>현재의 친양자입양</b> 에 관한 사항
	상세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b>친양자입양 및 파양</b> 에 관한 사항

## ■ FAQ

### 9.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발급 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할수 없다'고 나옵니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신고서류의 열람 포함)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 ②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그 해당법령과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 그 외 사유는 관서(시(구)·읍·면·동 사무소) 문의 방문 발급

### 10.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가 증명서 발급을 통하여 본인의 친양자입양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나요?

: 친양자입양은 법률상으로 친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입양으로 성과 본까지 변경되며,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로는 친양자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서만 확인이 되는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본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 발급 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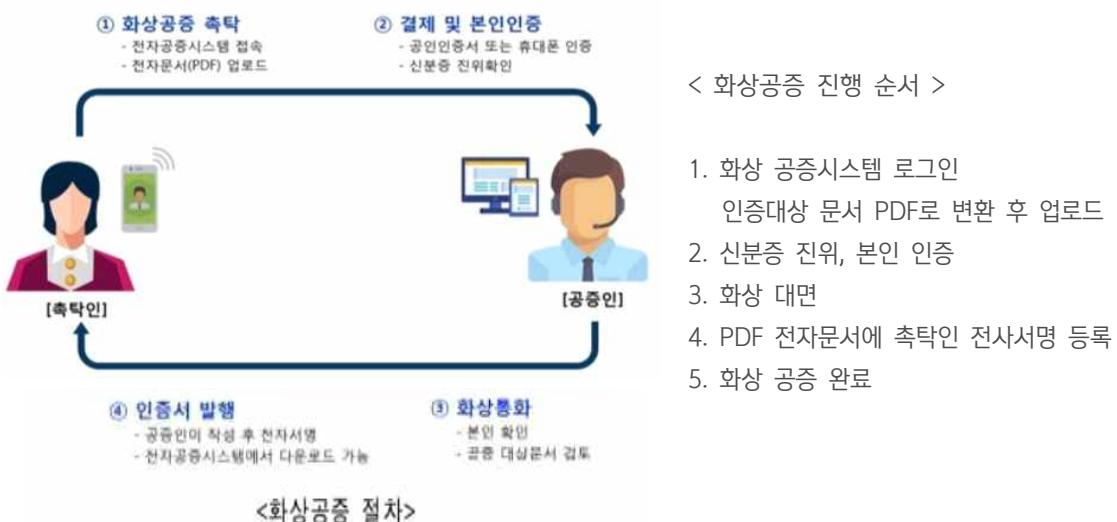
## 바. 공증서류 화상공증 서비스 이용 안내

- 특정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 줌으로써 갈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구 분	내용
사서증서 인증	<p>사인이 작성한 문서(사서증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실로 작성되었고,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p> <p>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편리하게 공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 인증(2018. 6. 20.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에 체류하거나,</li> <li>· 지리적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증 접근성 확대</li> </ul>
	<p>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사서증서)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고 인증문을 부여하는 사서증서인증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화상통화 과정이 모두 녹화, 녹음되어 보관</p> <p>* 화상공증 서비스 대상 : 사서인증 문서(위임장, 서명인증 등)  * 해외 거주자 화상 공증을 위한 준비 사항  - 공인인증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을 통한 신분확인은 현재 불가, 향후 시행예정  - PC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a href="https://enotary.moj.go.kr">https://enotary.moj.go.kr</a>) 또는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 이용</p>

### ① 화상시스템을 이용한 공증

화상  
공증



## 공증 문서 검증

### ② 공증문서 검증

- 공증 받은 원본 PDF 파일을 신한라이프 접수 담당자는 이메일로 수신
  - > 업무 담당자 PC에 저장 >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접속 (회원가입 불필요)
  - > 공증문서 검증 메뉴 > PDF 파일 첨부 > 검증 진행
  - > '검증하신 문서는 유효합니다' 확인 후 해당 문서는 출력하여 첨부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e-notary service. At the top, there's a banner with the text "화상공증은" and a subtext about convenience. Below it, a large image shows hands using a computer mouse and keyboard. To the right is a search bar and a map of South Korea with regions labeled. The main content area has four steps: Step 1 (사전준비), Step 2 (촉탁신청), Step 3 (촉탁진행), and Step 4 (촉탁완료). A red box highlights the "공증문서 검증" (Verification of Notarized Document) section under Step 4, which contains a sub-section about electronic signatures. Another red box highlights the "공증이 완료된 문서의 위·변조 여부와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You can verify the authenticity and validity of the notarized document) text.

This screenshot shows the detailed steps for document verification. It starts with a "기본 정보" (Basic Information) section with file selection buttons. Below it is a "공증문서 검증" (Verification of Notarized Document) section with a note about the process using the e-notary system. It then branches into two cases: "가. 경상일 경우" (Case A: Normal day) and "나. 예러일 경우" (Case B: Error day). Case A notes that if the document is valid, it will be converted to a PDF file. Case B notes that if the document is invalid, it will be rejected. A pink box at the bottom left lists error messages: 1. The document is not valid. 2. The document does not exist in the system. 3. The document ID has been tampered with. 4. The document has been deleted. 5. The document is not a valid notarized document.

## 사. 아포스티유(Apostille) 제도 이해

구 분	내 용
아포스티유란?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될 때 필요한 서류의 국제 인증과정

->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제도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년 7월 14일 정식발효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 ①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는 자 서류 안내 및 확인 시 참고

-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 영주권자: 대한민국 국적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에서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자
- 시민권자: 외국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시민이 된 자
- 외국국적동포: 해외 시민권자 中 과거 대한민국 국민 또는 직계비속

### ②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24.6.5. 현재 128개 국가및 지역가입)

대륙	가입국
아시아, 대양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브루나이, 사모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쿠아일랜드(쿠크군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유럽	그루지아/조지아,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기즈스탄, 튜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평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중남미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튜니지, 르완다
중동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스라엘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의 공식 확인은 <http://www.hcch.net> > Apostille Section > Status Table에서 확인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https://www.apostille.go.kr/>

### ● 협약 가입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

- :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http://www.mofa.go.kr)) → 상단 메뉴 오른쪽 '외교부 소개', 세부메뉴 '재외공관' 클릭  
→ 재외공관정보 클릭 -> 해당국가 지역을 관할하는 우리나라 재외공관 클릭(해당 공관 홈페이지 이동)  
→ 상단 메뉴 '영사', 보통 세부메뉴 '공증'란클릭하면 관련 문서 중 관련정보 확인 가능

### ③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 종류

#### ▶ 문서의 성격에 따른 분류

공문서	공증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기관(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포함) 발행문서</li> <li>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li> <li>예시: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주민등록등본, 신원조사증명서,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는 공증을 받음으로써 아포스티유 발급대상이 됨</li> <li>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b>공증인의 자격을 가진자가 작성한 공증문서</b></li> <li>예시: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 사립학교 발행 성적 및 졸업 증명서 등 행정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단, 현재 사립 초중고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는 정부기관 발행문서로 취급), 번역문</li> </ul>

#### ▶ 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

■ 국가간 언어의 차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번역문은 우리나라 내에서 번역을 하고 그 번역문에 대해서도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 원문 및 번역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아포스티유를 신청해야 하며 번역문은 공증사무소 '공증'을 먼저 받고 법무부의 아포스티유를 신청해야 함.

※ 번역문에 대한 공증은 국가마다 다름

※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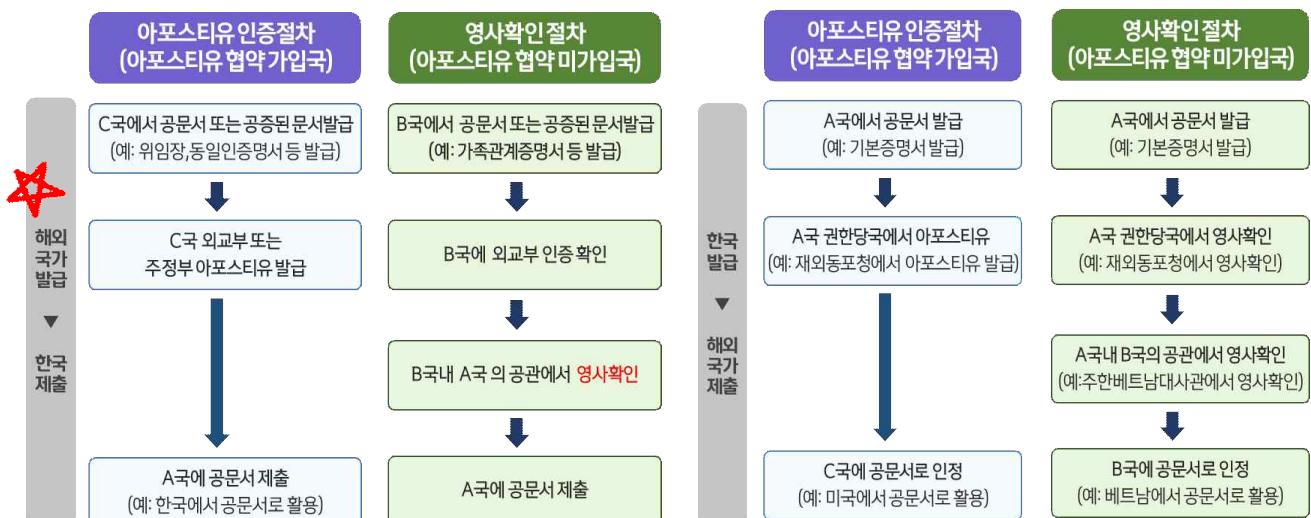
### ④ 외국에서 발행된 문서의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자국에서 발행하는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위해 각각 자국내에 권한기관을 지정하여 동 확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재외공관이나 외교부는 해당 외국 협약가입국 발행문서에 대해 아포스티유 발급을 할 수 없음. (예시>뉴질랜드 아포스티유 담당 정부기관 내무성)

### ⑤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절차 비교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영사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문서발급 → 재외동포청/ 법무부확인 →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 인정</li> </ul> <p>*재외동포청: 외교부 산하소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문서발급 → 재외동포청 확인 → 주한공관 확인 → 해당국가에서 공문서로서 인정</li> </ul>

#### ● 절차 비교



## ⑥ 외국인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예시>

구 분	구비 서류
미국 국적 동포 구비서류  (미국 시민권자인 동포 부부가 미국에 거주하던 중 남편이 사망하여 배우자가 대리인 선임하여 신청)	<p>■ 아포스티유 확인기관 : 워싱턴 주정부 (<a href="#">아포스티유 확인</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사실 확인서류 : 플로리다주 발급 사망증명서 (미국내 번역인증)</li> <li>- 상속관계 확인서류 : 배우자 결혼증명서 (미국내 번역인증)</li> <li>- 대리관계 확인서류 : 현지 위임장 작성 및 현지 공증 (미국내 번역인증)</li> <li>- 상속인 실명확인서류 : 미국 시민권증서 (미국내 번역인증)</li> <li>- 피상속인 실명확인 번호 확인서류 : 여권사본 등</li> </ul> <p>※ 미국: 주마다 상속법이 차이가 있음</p>
중국 국적 동포 구비서류  (중국 국적 동포인 부친이 국내에서 거주 하다가 중국에서 사망하여 중국국적의 자녀가 상속인 신청)	<p>■ 중국국적 동포의 구비서류에 대해 한국 영사확인시 제출서류 (<a href="#">영사확인</a>)</p> <p>-&gt; 영사확인: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의 확인 후 중국 주재 한국영사관 영사확인 (직인날인 및 영수필증 첨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망사실 확인서류 : 중국기관 공증서 및 현지 번역</li> <li>- 상속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공증서류 (중국기관 공증서 및 현지번역)</li> <li>- 상속인 실명확인서류: 여권</li> <li>- 피상속인 실명확인번호 확인서류 : 여권사본 등</li> </ul> <p>※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상속법' 제10조에 따른 상속 순위 -제1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제2순위 :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p>

## ■ FAQ

### 11.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제출 가능 여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미리 읍면동의 주민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한번 신청해야 이후 인터넷으로 본인서명확인서를 스스로 발급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구축해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통한 서비스로 [행정기관 제출 목적](#)일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 금융기관 제출이나 개인 거래 확인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 행정기관 제출용이 아니라면 주민센터에 가야 합니다.



## 12. 법인등기부등본이란?

- 해당 서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서류로써 법인의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언제 설립이 되었는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등등 특정 기업에 대해 확인 가능
-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대상:** 회사와 관련이 없는 개인이라도 누구나 발급 가능(객관적인 사실을 공표)
- 인터넷 등기소 발급 발생비용: 열람\_700원, 발급\_1,000원
- 사업장 관할의 등기소 방문 발생비용: 1,000원

## 13. 고유번호증이란?

- 고유번호증을 이해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살짝 소환해 보겠습니다.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은 해당 영리사업을 위해 사업자로서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이에 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단체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습니다. 즉, **고유번호증**은 비영리단체가 세무 관리를 위해 발급받는 증서입니다.

### [샘플]

<p style="text-align: center;"><b>고 유 번 호 증</b></p> <p style="text-align: center;">고유번호 : 553-80-0</p> <p>단 체 명 : 자 교 회 대 표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19 년 1 월 0 일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로 발 급 사 유 : 신규</p> <p>(유의사항) (1) 이 「고유번호증」은 사업자가 아닌 법인 아닌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부여한 고유번호 등록사실에 대한 증명일 뿐, 고유번호증 상의 대표자는 정당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03월 27일 성 북 세 무 서 장</p> <p style="text-align: right;">[Red Seal]</p> <p>국세청</p>	<p style="text-align: center;"><b>사 업 자 등 록 증</b> ( 법인사업자 ) 등록번호 : 104-81-28992</p> <p>법인명(단체명)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자 : 개업연월일 : 1990년 03월 15일 법인등록번호 : 110111-0667498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구 삼일대로 358(을지로2가)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구 삼일대로 358(을지로2가) 사업의종류 : [업체] 금융업 서비스 [종목] 생명보험업 부동산정보제공</p> <p style="text-align: center;">[Large Yellow Seal] 국세청</p> <p>발 급 사 유 : 정정</p> <p>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부( ) (작용일자: 2010년 01월 01일)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p> <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07월 08일 남 대 문 세 무 서 장</p> <p style="text-align: right;">[Red Seal]</p> <p>국세청</p>
---	---

## 14. 출입국사실증명서 사용 유효기간이 상이한 이유 ?

-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대상 -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외국인제외)으로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입니다.

업무별 청구권자가 부재여부 확인 또는 출입국 사실이 필요한 여부에 따라 유효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부재확인용)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이력확인용)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 - 예시>

① 해외거주 해약 신청 시 ->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거주 중 여부 확인 필요

▶ 부재확인용 (7일이내)

② 고객이 보험금 접수 시 -> 타국 여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 입원보험금 등 청구 시에 해외 사고 여부 및 해외병원 이용 시 입퇴원일자 등의 정확한 확인 필요

▶ 출입국이력확인용 (3개월이내)

③ 해외장기체류 실손보험료 반환 -> 해외장기체류 기간 확인 필요

▶ 출입국이력확인용 (3개월이내)

### [샘플]

문서 확인번호 : 1000-02700-1010-00000  
2022.05.18 09:23:19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CERTIFICATE OF ENTRY & EXIT)

발급번호 (Serial No.)	발급일 (Date of Issue)	쪽수 (Page Count)		
대상자 (Person upon whom the Certificate is issued)	성명 (Full name) 정명석 주민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 생년월일 (Date of Birth) 2000-01-01 국적 (Nationality) 한국 (KOREA)	성별 (Sex) 남 (M) 여권번호 (Passport No.) 1000-1000-1000-1000		
출입국 일자 (Dates of Entry and Exit)	출국 (Exit) 2008.02.18 2008.02.20 2008.02.21 '이하번간'	입국 (Entry) 2008.03.04 2008.03.05 2008.03.06 2008.03.07	출국 (Exit) 2008.03.01 2008.03.02 2008.03.03 2008.03.04	입국 (Entry) 2008.03.25 2008.03.26 2008.03.27 2008.03.28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2008.02.18부터 (From) 2008.03.28까지 (To)			
기록대조자 확인 (Verified by)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has been verified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발급일 (Date of Issue) : 2022 년 (year) 월 (month) 일 (day)

발급 담당자 (Officer in Charge) : 전화번호 (Phone No.)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Chief of SEOUL IMMIGRATION OFFICE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인  
Seoul Immigration Office Seal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고문서전송학제적 뉴를 통해 위·면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손상과 박스로드 친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마트폰 앱)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목 차

가. 개인 업무별 청구권자기준 .....	53
1. 계약관계자의 이해 .....	53
2. 업무별 청구권자 기준 .....	53
3. 업무별 처리 분류기준 .....	54
나. 청구권자(성인) 본인 내방 접수기준 .....	55
다. 청구권자(성인) 대리인 내방 접수기준 .....	56
라. 청구권자 미성년자인 경우 접수기준 .....	57
1. 미성년자란 .....	57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이해 .....	57
3. 청구권자 미성년자 접수기준_법정대리인 접수 .....	59
마. 후견제도의 이해 .....	61
1. 후견의 의의 .....	61
2. 후견제도 종류 .....	61
바. 성년후견관련 접수기준 .....	64
1. 발급서류 유효기간 .....	64
2. 성년후견인 지정시 접수기준 .....	64
3. 성년후견감독인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시 접수기준 .....	65
4. 성년후견인 미지정시 접수기준 .....	66
사. 청구권자 부재시 접수기준 .....	68
1. 청구권자 군복무 또는 교도소 재소 접수기준 .....	68
2. 청구권자 해외거주(영주권자,재외국민) 접수기준 .....	69
3. 청구권자 해외거주(해외국적취득 & 전산상 내국인의 경우) 접수기준 .....	70
4. 청구권자 실종하였을 경우 접수 기준 .....	71
아. 청구권자(또는 피보험자) 사망 관련 접수기준 .....	73
1. 상속 의의 .....	73
2. 상속의 순위 .....	74
3. 법정상속분 이해 .....	74
4. 대습상속 이해 .....	75
5. 동시사망 이해 .....	75
6. 청구권자(또는 피보험자) 사망 관련 접수기준 .....	77
자. 사업자(개인/법인) 업무별 접수기준 .....	80
1. 사업자 청구권자 기준 .....	80
2. 사업자 구비서류 유효기간 및 참고사항 .....	80
3. 사업자(개인/법인) 접수기준_단체100% 보험료부담 .....	83
4. 사업자(개인/법인) 접수기준_단체50%,피보험자50% 보험료부담 .....	85
5. 사업자(임의단체) 접수기준 .....	86
6. 사업자(개인/법인) 기타 접수기준 .....	88

### 3. 청구권자 업무처리기준\_공통

#### 가. 개인 업무별 청구권자 기준

##### 1. 계약관계자 이해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로 계약이 성립이 되면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함. 즉 사망, 장해, 질병의 발생 또는 생존 등의 조건에 관해서 보험 계약이 체결된 대상자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해당 상품에서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2. 업무별 청구권자 기준

청구권자	대상 업무		
계약자	일반 지급	해지환급금 (정상, 실호), 휴면보험금,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 배당금, 기타환급 등	
		분할보험금 (계약번호000~001_2018.3.31.이전 계약일/ 계약번호002_2022.5.22.이전 계약일) 생활자금 (계약번호000~001_2018.3.31.이전 계약일 / 계약번호002_2022.5.22.이전 계약일 / 계약번호 003_2022.5.23.이후 계약일), 자동인출	
		계약사항변경, 계약관계자변경, 전환처리업무 등	
	입금	보험료 입금, 정기이체, 납입유연제도, 입금관련 증명서, 입금취소, 할인, 해외장기체류 실손보험료 반환 장애인전용보험 전환, 자동대출납입 ※ 정상입금 : 수익자도 가능	
	보험금	책임준비금 <a href="#">FAQ_2</a> (계약번호000~001_2015.4.1.일이후 계약일 / 계약번호002_구분없음 / 계약번호003_2022.5.23.일이후)	
	신계약	청약철회, 반송(거절)	
중도	수 익 자	분할보험금 (계약번호000~001_2018.4.1이후 계약일 / 계약번호003_2022.5.23.일이후 계약일)	
만기 (연금)		생활자금(계약번호000~001_2018.4.1.~2022.5.22이전 계약일)	
입원 장해	보험금	만기보험금 / 생존연금, 행복이벤트자금	
사망수익자	보험금	진단, 장해, 입원, 통원, 실손, 골절 / 사고연금 등	
유의사항		※ 000~001, 002, 003로 시작하는 계약번호에 따라 청구권자가 상이 함 → 계약번호별 정확한 확인 후 안내 필요	
		※ 청구권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 신청	
		※ 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 : 대표계약자 및 수익자(법정상속인 전원 등의 필요) 신청	
		※ 피보험자 ≠ 만기수익자 상이 건 (2023.7월 기준 변경) → 피보험자 생존 시 만기보험금 지급되는 상품의 경우 <a href="#">피보험자 생존 확인 생략</a>	

### 3. 업무별 처리 분류기준

구 분	업무별 분류
일반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지급▶해약, 만기, 분할, 배당, 중도인출, 생존연금, 생활자금, 행복설계자금, 계약대출</li> <li>■ 단체지급▶해약, 만기, 분할, 배당, 계약대출</li> <li>■ 제지급증명서발행</li> <li>■ 사고연금 -&gt; 보험금접수 서류기준에 준용 처리 (업무처리부서: 고객서비스팀)</li> </ul>
계약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관계자변경▶계약관계자변경, 인적사항정정, 피보험자등재, 피보험자교체, Kids VUL 계약변경, 적립투자형계약전환,</li> <li>■ 계약사항변경▶계약사항변경(감액/특약해약, 보험료감료, 보험료증료, 납입주기변경, 보기/납기변경, 개인실손증지, 특약해약(서면동의철회), 보험종목변경, 위험변경, 감액완납, 연장정기, 생활자금개시연령변경, 건강연력적용, 건강검진보너스신청/취소, FS증액보험료, 사후정리특약신청)</li> <li>■ 전환처리▶연금전환, 일반보험전환, 종신전환      ■ 갱신처리업무▶ 갱신옵션변경 등</li> <li>■ 단체계약변경▶단체변경처리(단체피보험자교체신청의뢰) 등</li> <li>■ 변액변경▶변액펀드변경, 변액계약옵션변경, 평균분할투자신청 등</li> </ul>
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금관리▶납입방법변경, 단체일괄납입방법변경, 할인관리(보험료할인등록, 큐브가족할인등록), 장애인전용보험전환신청, 납입유연제도(납입유예, 납입일시중지, 납입종료, 납입중지), 납입유예상시지원 등</li> <li>■ 정기이체▶자동이체, 카드이체, 합산이체, 정기이체 등</li> <li>■ 입금처리▶즉시이체, 영수증발행</li> <li>■ 가상계좌▶가상계좌등록및회수, 가상계좌 입금건확정, 가상계좌 입금자 사전등록</li> <li>■ 보험료반환▶입금취소, 보험료반환처리(해외장기체류실손환급)등</li> <li>■ 부활청약 -&gt; 신계약 서류기준에 준용(업무처리부서: 고객가치제고파트)</li> </ul>
보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금 접수 (사고예수금 포함)</li> </ul>
신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청약, 중도부가청약, 단체제휴청약</li> <li>■ 반송처리▶신계약반송(청약철회, 모니터링, 거절), 단체신계약반송</li> </ul>

### ■ FAQ

#### 1.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근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상법 제662조).

#### [참고]\_ 약관상 근거

2015.3.11.일 이전	2015.3.12.일 이후
<p><b>제00조 소멸시효</b></p> <p>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b>2년간</b>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p>	<p><b>제00조 소멸시효</b></p> <p>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은 <b>3년간</b>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p>

## 2. 피보험자 사망 시 책임준비금 지급 시기별로 청구권자가 상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000~001로 시작하는 계약번호中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약관 제00조 계약의소멸 기준 적용합니다.

[참고] 시기별 상품 약관 확인 후 고객 안내 해주세요

2015.3.31.일 이전_법정상속인 지급	2015.4.1.일 이후_계약자 지급
<p><b>제00조 계약의 소멸</b></p> <p>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p> <p>② 제1항의 경우 <b>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b>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b>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b></p>	<p><b>제00조 계약의 소멸</b></p> <p>② 제1항에서 보험기간 중 <b>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b>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b>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b>에게 지급하며,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p>
<p><b>제00조 보험수익자의 지정</b></p> <p>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중략) <b>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b>으로 합니다</p>	

## 나. 청구권자(성인) 본인 내방 접수기준

구분	청구권자 본인 내방_본인 계좌 송금신청 시		청구권자 본인 내방_타인 <sup>주2</sup> 계좌 송금신청 시
공통	당사 양식	<input type="radio"/> 업무별 신청서(당사양식) <input type="radio"/>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	<input type="radio"/> 업무별 신청서(당사양식) <input type="radio"/>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 <sup>주3</sup> (당사양식) <input type="radio"/>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
일반지급 계약변경 보험금	고객 준비 서류	① 청구권자 신분증 ② 청구권자 본인 통장계좌 <sup>주1</sup>	① 청구권자 신분증 ② 청구권자와 예금주 관계확인서류 ③ 타인 통장계좌 <sup>주1</sup>
입금	고객 준비 서류	① 청구권자 신분증	
<b>※ 공통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일반지급,계약변경,입금) / 보험금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보험금)</b>			
<b>※ 주1&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사본생략_예금주 체크 시 예금주명 확인 必 (확인 불가시 통장사본 징구)</li> <li>- 국내계좌만 송금 가능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해외계좌로 송금불가<sup>FAQ_3</sup>)</li> </ul>			
<b>※ 주2&gt;</b> <p>: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그 외 관계서류 상 친족관계인 者 (시부모, 올케, 동서, 시동생 등)            ① 친족외제3자 위임불가 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_ 일반), 제적등본 등 가능</p>			
<b>※ 주3&g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금계좌 예금주 미내방 시 <b>녹취 확인</b> 必 <a href="#">스크립트 97page</a> 참고</li> <li>- 송금계좌 예금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1인 동의(미내방 친권자 동의 생략)</li> <li>- 청구권자 성인: 미성년자 통장 요청시_(친권을 가진 있는 부모의 부모의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 동의 必)</li> </ul>			

## FAQ

### 3.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해외계좌로 송금불가 근거?

▶ **외국환거래법**은 한국의 외환거래와 외국환거래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국내에서 해외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와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해외계좌 송금불가는 외국환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자금을 이체하려면 외국환은행 등으로부터 외국환거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자금이체는 금지 됩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 등으로부터 외국환거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국내 거주자가 해외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체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다. 청구권자(성인) 대리인 내방 접수기준

### 1. 대리인 자격 :

- 직계가족 및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 관계서류상 친족 가족관계임이 나타나는 者 (시부모, 올케, 동서, 시동생 등)

구 분	대리인 내방_청구권자 계좌 송금신청 시		대리인 내방_대리인 계좌 송금신청 시
공통	당사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별 신청서</li> <li>◎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 <sup>주2</sup></li> <li>◎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별 신청서</li> <li>◎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 <sup>주2</sup></li> <li>◎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li> </ul>
일반지급 계약변경 보험금	고객 준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리인 신분증</li> <li>② 청구권자와 대리인 관계확인서류 (단&gt;보험금 생략 가능)</li> <li>③ 청구권자 본인 통장계좌 <sup>주1</sup></li> <li>④ 청구권자 유선확인 <sup>주3</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리인 신분증</li> <li>② 청구권자와 대리인 관계확인서류</li> <li>③ 대리인 통장계좌 <sup>주1</sup></li> <li>④ 청구권자 「위임장(자필작성+인감날인)+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장(자필작성+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b>*위임장 내 위임계좌 정보 기재 必</b></li> <li>⑤ 청구권자 유선확인 <sup>주3</sup></li> </ul> <p>단&gt;인감증명서 본인발급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용도 기재) 제출 시 유선확인 생략</p>
입금	고객 준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리인 신분증</li> <li>② 청구권자와 대리인 관계확인서류 (단&gt; 전산상 관계 확인 가능 시 생략)</li> </ul> <p>단&gt;① 입금 업무관련 지급금 수령 가능 계좌 외 계좌송금 시 : 입금취소, 해외장기체류, 할인업무(소급분)      ② 증명서 발급시      ▶계약자 유선확인 또는 청구권자 부재 관련 서류 징구 必</p>	<p>※ 공통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일반지급, 계약변경, 입금) / 보험금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보험금)</p> <p>※ 주1&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사본생략_예금주 체크 시 예금주명 확인 必 (확인 불가시 통장사본 징구)</li> <li>- 국내계좌만 송금 가능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해외계좌로 송금불가 <a href="#">FAQ_3</a>)</li> </ul> <p>※ 주2&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금계좌 예금주 미내방 시 <b>녹취 확인 必</b> <a href="#">스크립트 97page</a> 참고</li> <li>- 송금계좌 예금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1인 동의(미내방 친권자 동의 생략)</li> <li>- 청구권자 성인: 미성년자 통장 요청시 친권을 가진 있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법원결정문내 가능시)만 가능</li> </ul> <p>※ 주3&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권자 유선확인 불가 시 : 의사불명이나 의사소통 현재 불가한 상태 확인 必</li> <li>- 성년후견인관련 업무 처리기준 준용 <a href="#">[65~68page 참고]</a></li> </ul>

## 라. 청구권자 미성년자인 경우 접수기준

### 1. 미성년자 : 만19세미만인 미혼 남녀 (2013년7월1일 민법 개정: 20세->19세)

※ 혼인한 경우 : 친권자 동의 없이 업무처리가능(성년기준 처리) ->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란 ?

-> 「민법」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임

#### → 법정대리인이란?

: 본인의 선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된 자를 말하며 친권자와 후견인이 있음

-> 미성년자는 만19세미만자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행함

#### 1) 친권자(민법909조) : 미성년자의 부모 (단, 계모나 적모는 아님)

①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

② 양자에 대한 친권자는 양부모

③ 이혼 後 단독 친권자 사망한 경우(2013.7.1. 민법개정)

2013. 6. 30 이전 사망 시	2013. 7. 1 이후 사망 시
생존부모 친권 자동 부활	가정법원이 생존하는 父 또는 母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 기본증명서상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미지정 시 업무 처리불가

#### 2) 후견인(민법928조)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을 때 또는 친권자가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1순위 (민법931조)	2순위 (민법932조)
지정후견인	선임후견인(가정법원이 선임)

① 지정후견인 :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의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② 선임후견인 : 지정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 지정

#### 3)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확인 가능 관계서류

공동친권(부모 혼인 中)	각각 친권(이혼 後)	단독친권 /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자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성년자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4) 미성년자 업무 시\_친권자 접수 특이건 서류 참고사항

구 분	서류 기준
친권자 외국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 성명, 외국인등록번호가 확인 되어야하며 미기재 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추가 구비
가족관계증명서 상 특이사항	- 내방한 부 또는 모 외 나머지 한 명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공란인 경우 단독친권으로 보아 업무처리  - 내방한 부 또는 모 외 나머지 한 명이 성명만 기재된 경우 → 2008년 이전 사망인 경우 사망 확인되는 제적등본(말소사항 포함) 추가 구비
친권자 2인 내방	- 각각 신분증 구비하고 업무별 신청서에 부 & 모 2인 모두 서명

#### ■ FAQ

4. '임의인지' 후 가정법원을 통해 별도 친권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 무조건 친권자를 지정 후 제지급 및 계약변경 등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 ▶ 혼인외의 출생자는 인지에 의해 친자관계가 발생하고(민법 제855조 제1항), 민법 제909조 제4항은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임의인지 후 부모의 협의 또는 법원을 통해 친권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인지자와 母가 공동으로 친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에 준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5. 임의인지의 경우 별도 친권 지정이 없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상 父·母 공동친권으로 봐도 되는지 아니면 母 단독친권으로 되는지 여부?

- ▶ 4번에 답변대로 [부모가 공동친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6. 미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결정문 정본 제출이 필요한 이유?

- ▶ 미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956조). 미성년후견사무의 범위는 아래의 후견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법원의 허가 내용은 법원결정문 정본에서 확인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합니다.
- [친권자가 있으나 그 친권자가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됩니다('민법' 제946조).

### 3. 청구권자 미성년자 접수기준\_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접수

구분	인별합산 실지급액_500만원 이하		인별합산 실지급액_500만원 초과
공통	당사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별 신청서</li> <li>◎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li> <li>◎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별 신청서</li> <li>◎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li> <li>◎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li> </ul>
일반지급 계약변경 보험금	고객 준비 서류	<p>① 내방한 법정대리인 신분증</p> <p>② 미성년자 계좌 또는 법정대리인 계좌 <sup>주1</sup></p> <p>③ 관계확인서류</p> <p>*친권자 : 미성년자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p> <p>*후견인 : 미성년자기준 기본증명서(상세) (후견인등재必) + 법원결정문 정본 <sup>주2</sup></p> <p>④ 위임서류: (일반지급, 계약변경 限 적용)</p> <p>*친권자 : 미내방 친권자 녹취확인(위임서류생략) 단&gt;<b>녹취불가 시</b> 변상의무확인서(당사양식) 작성 (녹취확인_보험금은 제외)</p> <p>※ 계약관계자변경 업무 시엔 위임서류 필수</p>	<p>① 내방한 법정대리인 신분증</p> <p>② 미성년자 계좌 또는 법정대리인 계좌 <sup>주1</sup></p> <p>③ 관계확인서류</p> <p>*친권자 : 미성년자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p> <p>*후견인 : 미성년자기준 기본증명서(상세) (후견인등재必) + 법원결정문 정본 <sup>주2</sup></p> <p>④ 위임서류:</p> <p>*친권자: 미내방 친권자 「위임장(자필작성+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장(자필작성+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p> <p>⑤ 미내방 친권자 녹취확인 단&gt;인감증명서 본인발급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용도 기재) 제출시 유선확인 생략</p>
입금 (금액제한 無)	고객 준비 서류	<p>① 내방한 법정대리인 신분증</p> <p>② 관계확인서류 : 전산상 관계 확인 가능 시 생략</p> <p>*친권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후견인 : 미성년자기준 기본증명서(상세)</p>	
신계약 (금액제한 無)	고객 준비 서류	<p>① 관계확인서류</p> <p>*친권자 : 미성년자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p> <p>*후견인 : 미성년자기준 기본증명서(상세)(후견인등재必)</p>	
비고		<p>※ 공통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일반지급, 계약변경, 입금) / 보험금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보험금)</p> <p>※ 주1&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견인 계좌 입금 : 법원 결정문에 후견인 명의 계좌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li> <li>- 통장사본생략_예금주 체크 시 예금주명 확인必 (확인 불가시 통장사본 징구)</li> <li>- 국내계좌만 송금 가능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해외계좌로 송금불가 <a href="#">FAQ 3</a>)</li> </ul> <p>※ 주2&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성년후견인 접수 : 법원결정문 정본 제출(결정문 내 후견인 대리 업무 범위, 상속 재산목록 포함 제출 <a href="#">FAQ 6</a>), 법원 결정문 내용에 따라 지급 처리 불가 할 수 있음</li> </ul> <p>※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외 대리접수 불가</p>	

## FAQ

### 7. 청구권자 미성년자 접수 기준 中 친권자와의 관계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제출 기준은 삭제 되었나요?

- ▶ 네. 주민등록등본 제출 삭제 되고, 미성년자 기준에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 2021.7.5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로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하여 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에 법정대리인 공동친권 부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리스크 발생 기준을 삭제합니다.  
기접수 이력관련 고객 안내 시 불만 건은 업무별 담당자 문의 후 처리 부탁드립니다.

현 행	개 선 (안)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기본 표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본인 선택 시 부, 모, 자녀



#### 재혼가정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발급확인번호 :

이 증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일치  
합니다. 담당자: 전화: (생년월일:  
신청인: )  
용도 및 목적: 2021년 7월 6일

#### 주민등록표 (등본)

경상북도 울릉군수

세대주 성명(한자)	이대한	세대 구 성 사uh 및 일자	-
주 소			
		발 생 일 / 신 고 일 변 동 사 유	
현주소: 경상북도 울릉군 옥도안동복길 815			
번호	세대주와의 관 계	주민등록번호	발 생 일 / 신 고 일 변 동 사 유
1 본인	이대한	650101-1XXXXXX	거주자
2 배우자	김경혜	700101-2XXXXXX	거주자
3 자녀	이쪽도	950101-1XXXXXX	거주자
4 배우자와의 자녀	이희국	000101-3XXXXXX	거주자

↓ 변경 후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발급확인번호 :

이 증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일치  
합니다. 담당자: 전화: (생년월일:  
신청인: )  
용도 및 목적: 2021년 7월 6일

#### 주민등록표 (등본)

경상북도 울릉군수

세대주 성명(한자)	이대한	세대 구 성 사uh 및 일자	-
주 소			
		발 생 일 / 신 고 일 변 동 사 유	
현주소: 경상북도 울릉군 옥도안동복길 815			
번호	세대주와의 관 계	주민등록번호	발 생 일 / 신 고 일 변 동 사 유
1 본인	이대한	650101-1XXXXXX	거주자
2 배우자	김경혜	700101-2XXXXXX	거주자
3 자녀	이쪽도	950101-1XXXXXX	거주자
4 자녀	이희국	000101-3XXXXXX	거주자

NEWS

## 마. 후견제도의 이해 (2013.7.1일 민법개정)

### 1. 후견의 의의

■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 2. 후견제도 종류

- 후견제도에는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가 있음

#### (1) 미성년후견제도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928조).

#### (2)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 됩니다 ('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및 제959조의14 참조)

※ 2018.7.1일 이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효력 상실 (민법부칙 제2조 제2항의 경과규정)

- 성년후견의 종류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비교표 ]

구분	법정후견			임의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개시 사유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사무처리 능력 부족
후견 개시 청구 권자	본인, 배우자, 4촌이내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본인, 배우자, 4촌이내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본인, 배우자, 4촌이내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본인, 배우자, 4촌이내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후견 개시 시점	성년후견개시 확정 시	한정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특정후견 심판 확정 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시
공식 방법	법원의 등기촉탁	법원의 등기촉탁	법원의 등기촉탁	당사자의 등기신청 및 법원의 등기촉탁
본인의 행위 능력	원칙적으로 제한	가정법원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한		제한 없음
후견인의 권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대리권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의 비교]

내 용		미 성 년 후 견 제 도	성 년 후 견 제 도
피후견인	선임 사유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대리권, 재산관리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경우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후견인	자격	친족 또는 제 3자 (법인X)	친족 또는 제3자 (법인 포함)
	수	1인	여러 명도 가능
	선임	법원 직권 선임 (유언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제외)	법원의 직권 선임
	감독 기관	법원 (후견감독인)	법원 (후견감독인)
후견 감독인	선임	법원 직권 선임 (유언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제외)	법원의 임의적 선임
공시	방법	가족관계등록부	후견등기부
	촉탁	법원의 기록 촉탁	법원의 등기 촉탁(성년, 한정, 특정) 당사자의 신청(후견계약)
법원	역할	후견인 선임과 감독	후견인 선임과 감독

### (3) 후견감독인 이란?

-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 또는 선임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합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0조의6).

->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수 없음(민940의5)

-> 후견감독인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이 있음

->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

①영업에 관한 행위 ②금전을 빌리는 행위 ③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④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특별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⑤소송행위 ⑥상속의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에 관해서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거나 피후견인의 행위를 동의 할 때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민950, 959의6)

-> 임의후견감독인은 반드시 두어야 함.

가정법원에서 선임하는데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임의후견인의 선임은 효력이 없음.

## ■ FAQ

### 8. 후견인이 지정되면 후견감독인을 반드시 선임 해야 하는가요?

■ 아닙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위임업무를 수행할 때 부당한 행위를 감독하기 위하여 후견감독인이 지정되거나 가정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두게 됩니다. 고객 서류 확인시 제출서류에서 지정여부를 정확히 확인 후 업무처리 해주세요

## 9. 민법 제950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한 처리제한”?

[2020. 2.21.일 성년후견제도업무처리기준개선(案) 中 발췌]

대리권 행사	제한업무
영업에 관한 행위	해당없음
금전을 빌리는 행위	보험계약대출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해당없음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중요한 재산의 득실변경은 법원허가
소송행위	해당없음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청구권자 사망으로 상속인 중 1인 피성년후견인으로 대표수의자 지정등의 시

※ 상기 외 Case 담당자 확인 후 업무必

### (3) 특별대리인 이란?

-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본인과 자신이 친권을 행사할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함 (법원 허가를 통하여 선임)
- ②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입니다. ①에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의 규정은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건에도 준용됩니다.  
이 경우 피성년후견인을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고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게 됩니다.

#### ■ 민법 제921조 및 제949조의 3(이해상반행위) 내용

##### - 제921조(친권자와 그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이 이해상반행위)

-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 제 949조의 3(이해상반행위)

- :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 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3.7)

##### - 제 940조의 3(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

- ① 가정법원은 제940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수 있다
- ②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본조신설 2011.3.7)

## 바. 성년후견관련 접수기준

### 1. 발급서류 유효기간

구 분	내 용
일반지급 계약변경 보험금 입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b>30일 이내</b></li> <li>- 후견인부존재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b>3개월 이내</b></li> <li>- 청구권자 생존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발급일로부터 <b>7일 이내</b></li> </ul>

### 2. 성년후견인 지정 시 접수기준\_대리접수 불가

구 분	서류 기준		
	후견인 1인 지정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신청인(후견인) 신분증</li> <li>②후견등기사항증명서 <sup>주1</sup></li> <li>③청구권자(피성년후견인) 본인 통장계좌 <sup>주2</sup></li> <li>④청구권자(피성년후견인) 생존확인서류 「등본 또는 초본」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li> </ul>
일반지급 계약변경 보험금 입금	다수 후견인 지정시	공동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신청인(후견인) 신분증</li> <li>②후견등기사항증명서 <sup>주1</sup></li> <li>③청구권자(피성년후견인) 본인 통장계좌 <sup>주2</sup></li> <li>④청구권자(피성년후견인) 생존확인서류 「등본 또는 초본」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li> <li>⑤미내방 공동후견인 전원 「위임장(자필+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제출 시 유선확인 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용도기재) 대체 가능 「위임장(자필+서명날인)」</li> </ul>
		각자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신청인(후견인) 신분증</li> <li>②후견등기사항증명서 <sup>주1</sup></li> <li>③청구권자(피성년후견인) 본인 통장계좌 <sup>주2</sup></li> <li>④청구권자(피성년후견인) 생존확인서류 「등본 또는 초본」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li> <li>⑤다수 후견인 '권한분장에 관한사항' 내용에 따라 후견인 업무처리 → 확인철저</li> </ul>
비 고	<p>※ 주1&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견등기사항증명서내 「후견인에 관한사항 및 대리권등록 “법정대리권의 범위”, “권한분장에 관한 사항 등」 제한 기준 확인 철저</li> </ul> <p>※ 주2&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내 지정인 및 지정계좌 확인 시 해당 계좌로 송금 가능</li> <li>- 통장사본생략_예금주 체크 시 예금주명 확인 必 (확인 불가시 통장사본 정구)</li> <li>- 국내계좌만 송금 가능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해외계좌로 송금불가 <a href="#">FAQ_3</a>)</li> </ul>		

### 3. 성년후견감독인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 시 접수기준

구 분	서류 기준					
일반지급 계약변경 보험금 입금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p>■ 신청자 범위 : <b>후견인 업무 신청 +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필요</b> : 후견인 접수기준 서류에 추가 구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내방 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미내방 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 후견감독인동의서(당사양식_자필) + 신분증,</td> <td style="padding: 5px;">- 후견감독인동의서(당사양식_자필+인감날인) + 인감증명서</td> </tr> </tbody> </table> <p>※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제출 시 유선확인 必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용도기재) 대체 가능 「후견감독인동의서(자필+서명날인)」</p>	내방 시	미내방 시	- 후견감독인동의서(당사양식_자필) + 신분증,	- 후견감독인동의서(당사양식_자필+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내방 시	미내방 시					
- 후견감독인동의서(당사양식_자필) + 신분증,	- 후견감독인동의서(당사양식_자필+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특별대리인 선임	<p>■ 신청자 범위 : <b>특별대리인 업무 신청 (후견인 동의 필요 없음)</b></p> <p>■ 서류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특별대리인 신분증</li> <li>② 법원판결문 및 후견등기사항증명서</li> <li>③ 법원판결문 및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지정자 지정 계좌</li> <li>④ 청구권자(피성년후견인) 생존확인서류 「등본 또는 초본」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li> </ol>				

### ■ FAQ

#### 10. 미성년자 계약건에 대하여 변경 후 계약자, 수익자를 '후견인'으로 변경여부 가능 여부?

- 후견인은 미성년자 명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후견인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 **특별대리인이 업무 신청** 해야 함

-> 민법 제921조 제1항 및 제2항, 제949조의3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인 후견인과 그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후견인은 법원에 그 피후견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때 "이해상반행위"라 함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후견인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 명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후견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제지급금(해지환급금, 보험금 청구권 등)에 대한 청구권을 상실하고 후견인은 그러한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4. 성년후견인 미지정 시 접수기준

구분	인별 합산 실지급액_500만원 이하	인별 합산 실지급액_500만원 초과
일반 지급	<p>▶ 해지(실효, 휴면), 분할, 배당, 만기, 세금환급업무</p> <p>◎ 제지금금신청서(당사양식)</p> <p>◎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p> <p>◎ 변상의무확인서(당사양식)</p> <p>① 신청인 신분증</p> <p>② 청구권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서류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관계인 者)</p> <p>③ 청구권자 본인 통장계좌 <sup>주1</sup></p> <p>④ 병원진단서(청구권자 현 상태 확인 필요)</p>	▶ 성년후견인 지정 후 업무처리 가능
계약 변경	▶ 성년후견인 지정 후 업무처리 가능	
보험금	<p>◎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p> <p>◎ 변상의무확인서(당사양식)</p> <p>◎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p> <p>① 신청인 신분증</p> <p>② 청구권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서류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관계인 考)</p> <p>③ 청구권자 본인 통장계좌 <sup>주1</sup></p> <p>④ 병원진단서(청구권자 현 상태 확인 필요)</p>	<p>◎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p> <p>◎ 변상의무확인서(당사양식)</p> <p>◎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p> <p>① 신청인 신분증</p> <p>② 청구권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서류 (배우자, 직계존·비속)</p> <p>③ 청구권자 본인 통장계좌 <sup>주1</sup></p> <p>④ 병원진단서(청구권자 현 상태 확인 필요)</p> <p>⑤ 후견인부존재증명서(보험금 限)</p>
입금	<p>◎ 업무별 신청서(당사양식)</p> <p>◎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p> <p>◎ 변상의무확인서(당사양식) 아래 업무시만 징구</p> <p>-&gt; ① 입금 업무관련 지급금 수령가능 계좌 외 계좌 송금 시 : 입금취소, 해외장기체류, 할인업무(소급분) ② 증명서 발급시</p> <p>① 신청인 신분증</p> <p>② 청구권자와 신청인의 관계확인서류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족관계인 考) *전산상 관계확인 가능시 생략</p> <p>③ 청구권자 본인 통장계좌 <sup>주1</sup></p> <p>④ 병원진단서(청구권자 현 상태 확인 필요)</p>	
비고	<p>※ 주1&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사본생략_예금주 체크 시 예금주명 확인 必 (확인 불가시 통장사본 징구)</li> <li>- 국내계좌만 송금 가능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해외계좌로 송금불가 <a href="#">FAQ_3</a>)</li> </ul> <p>※ 성년후견인 미지정 보험금 반복청구(사고연금포함)인 경우에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b>성년후견지정 고객안내 필요</b> ► <b>반복 청구 시</b>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사용 가능하며, 청구시점 신청인에게 <b>후견인 미지정 재확인</b></p> <p>※ 업무별 특이건 발생 시 부서별 담당자 문의 후 고객안내</p>	

## [샘플: 후견등기사항증명서(성년후견)]

<b>* 서류 내용 확인 척차</b> ① 사건본인: 피성년후견인-성명, 주민번호 ② 성년후견사망: 성년후견인-성명, 주민번호, 대리권등록록							
후견 등기사항증명서(성년후견)							
증명 고유번호 000230-2017-							
<b>【사건본인】</b>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table border="1"> <tr> <td>사항번호</td> <td>구 분</td> <td>내 용</td> </tr> <tr> <td>1</td> <td>후견등기기록작성</td> <td>           [성명] 이 순            [성별] 여            [출생연월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불기] 서울가정법원 2017년 5월 8일 접수 제254호         </td> </tr> </table>		사항번호	구 분	내 용	1	후견등기기록작성	[성명] 이 순 [성별] 여 [출생연월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불기] 서울가정법원 2017년 5월 8일 접수 제254호
사항번호	구 분	내 용					
1	후견등기기록작성	[성명] 이 순 [성별] 여 [출생연월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불기] 서울가정법원 2017년 5월 8일 접수 제254호					
증명일련번호 000230-2017-							
<b>【성년후견사항】</b> (후견개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 <table border="1"> <tr> <td>사항번호</td> <td>등기목적</td> <td>내 용</td> </tr> <tr> <td>1</td> <td>성년후견개시</td> <td>           [성관법원] 서울가정법원            [사건의표서] 2016느단10655-성년후견 개시            [재판판결장] 2017년 5월 5일            [불기] 서울가정법원 2017년 5월 8일 접수 제254호         </td> </tr> </table>		사항번호	등기목적	내 용	1	성년후견개시	[성관법원] 서울가정법원 [사건의표서] 2016느단10655-성년후견 개시 [재판판결장] 2017년 5월 5일 [불기] 서울가정법원 2017년 5월 8일 접수 제254호
사항번호	등기목적	내 용					
1	성년후견개시	[성관법원] 서울가정법원 [사건의표서] 2016느단10655-성년후견 개시 [재판판결장] 2017년 5월 5일 [불기] 서울가정법원 2017년 5월 8일 접수 제254호					
<b>(후견인에 관한 사항)</b> <table border="1"> <tr> <td>사항번호</td> <td>등기목적</td> <td>내 용</td> </tr> <tr> <td>1</td> <td>성년후견인선택</td> <td>           [성명] 김 전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리권통보처] 2017생년805            [불기] 서울가정법원 2017년 5월 8일 접수 제254호         </td> </tr> </table>		사항번호	등기목적	내 용	1	성년후견인선택	[성명] 김 전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리권통보처] 2017생년805 [불기] 서울가정법원 2017년 5월 8일 접수 제254호
사항번호	등기목적	내 용					
1	성년후견인선택	[성명] 김 전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리권통보처] 2017생년805 [불기] 서울가정법원 2017년 5월 8일 접수 제254호					
발행번호 87171000020205170330150500071A040026 발급확인번호 004X-B946-6598 1 / 3							
발행일자 2017/05/26 11:27:07							
							

### I.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취소권 제한 없음

### II.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권 제한 있음

아래 사항은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거나, 금전을 필요로 하는 행위  
 1. 의무만을 부당하는 행위  
 2. 무동산 또는 중요한 계산의 처분이나 담보제공행위  
 3. 상속의 단순승인 포기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험의  
 4.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  
 5.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피성년후견인 평의의 일체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1개 계좌에서 합계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하거나 이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장도, 절권영업 등 포함)하는 행위

### III.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아래 사항에 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결정권을 가짐.

1. 의료행위의 동의
2.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3. 우편·통신에 관한 결정
4.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5. 기타 사항

다만, 민법 제947조의2 규정상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위에서 정한 것과 별개로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등 권한이 제한됩니다.

예) ① 민법 제947조의2 제2항 :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치료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는 경우

② 민법 제947조의2 제4항 :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심장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 그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③ 민법 제947조의2 제5항 :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이동,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샘플: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b>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b>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신 청 대상자</td> </tr> <tr> <td>성 명</td> <td></td> </tr> <tr> <td>주민등록번호</td> <td></td> </tr> </table>		구 분	신 청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구 분	신 청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수료 1,200원 영수증 반송법원 광주가정법원 특보기원							
위 사람에 대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사전처분에 관한 후견등기사항이 전부 무존재함을 증명합니다.							
시기 2014년 03월 04일 법원행정처 통지경보증약관판소 결산문영책임판							
							
<b>*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 확인</b>							
발행 번호 80131500002030514009927030517049016149 발급 확인 번호 00CU-CR2D-QGD5 1 / 1							
							

<b>가족 관계 증명서(상세)</b>					
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목포시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분 인
부				남	密陽
가족사항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부				남	密陽
모				여	河東
배우자				여	慶州
위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불일치음을 증명합니다.					
2014년 02월 06일					
전라남도 목포시장					
 발급시간 : 13시 55분 발급기관 : 목포시 번호 : 061-220-0000 신청인 : 홍길동					
 2014.02.06 1975230343 홍길동					
<b>* 대리인 접수 자격 확인</b>					
					
21613YH01200051408703702013B082 1 / 1					

## 사. 청구권자 부재 시 접수기준

### 1. 청구권자 군복무 또는 교도소 재소 접수기준

구 분	군복무_대리인 내방		교도소 재소_대리인 내방
공 통	당사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별 신청서 (당사양식)</li> <li>◎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sup>주1</sup>(당사양식)</li> <li>◎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별 신청서 (당사양식)</li> <li>◎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sup>주1</sup>(당사양식)</li> <li>◎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li> </ul>
일반지급 계약변경 보험금	고객 준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리인 신분증</li> <li>② 청구권자와 대리인 관계확인서류 (단&gt;보험금 생략가능)</li> <li>③ 청구권자 본인 통장계좌<sup>주2</sup></li> <li>④ 군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中 택일</li> <li>⑤ 위임장(당사양식)  _청구권자 자필작성 및 부대장 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리인 신분증</li> <li>② 청구권자와 대리인 관계확인서류 (단&gt;보험금 생략가능)</li> <li>③ 청구권자 본인 통장계좌<sup>주2</sup></li> <li>④ 수감증명서, 재소확인서 中 택일</li> <li>⑤ 위임장(당사양식)  _청구권자 자필작성 및 입회교도관 날인</li> </ul>
입금	고객 준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리인 신분증</li> <li>② 청구권자와 대리인 관계확인서류 (단&gt; 전산상 관계 확인가능 시 생략)  단&gt;① 입금 업무관련 지급금 수령가능 계좌 外 계좌 송금 시 : 입금취소, 해외장기체류, 할인업무(소급분) ② 증명서 발급시 ▶계약자 유선확인 또는 청구권자 부재 관련 서류 징구 必</li> </ul>	
비 고	<p>※ 공통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일반지급, 계약변경, 입금) / 보험금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보험금)</p> <p>※ 대리인 자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그 외 관계서류 상 친족관계인 者 (시부모, 올케, 동서, 시동생 등)</li> <li>① 친족 外 제3자 위임불가      ②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가능</li> </ul> <p>※ 주1&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방한 대리인 작성 함</li> </ul> <p>※ 주2&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사본생략_예금주 체크 시 예금주명 확인 必 (확인 불가시 통장사본 징구)</li> <li>- 국내계좌만 송금 가능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해외계좌로 송금불가 <a href="#">FAQ 3</a>)</li> <li>- <b>대리인 계좌 수령 불가</b> (특이건 발생 시 업무별 담당자 문의 후 안내)</li> </ul>		

## 2. 청구권자 해외거주(영주권자,재외국민)<sup>주1</sup> 접수기준

구 분	대리인 내방_청구권자 계좌 송금신청 시		대리인 내방_대리인 계좌 송금신청 시
공 통	당사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별 신청서 (당사양식)</li> <li>◎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sup>주2</sup>(당사양식)</li> <li>◎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별 신청서 (당사양식)</li> <li>◎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sup>주2</sup>(당사양식)</li> <li>◎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li> </ul>
일반지급 계약변경 보험금	고객 준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리인 신분증</li> <li>② 청구권자 본인 통장계좌<sup>주3</sup></li> <li>③ 청구권자와 대리인 관계확인서류</li> <li>④ 거주사실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中 택일<sup>주4</sup></li> <li>⑤ 위임장(자필+영사확인)</li> <li>▶ ③+④+⑤ 보험금 생략가능</li> <li>⑥ 청구권자 유선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리인 신분증</li> <li>② 대리인 통장계좌<sup>주3</sup></li> <li>③ 청구권자와 대리인 관계확인서류</li> <li>④ 거주사실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中 택일<sup>주4</sup></li> <li>⑤ 위임장(자필+영사확인)</li> <li>▶ *위임장 内 위임계좌 정보 기재 必</li> <li>⑥ 청구권자 유선확인</li> </ul>
입금	고객 준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리인 신분증</li> <li>② 청구권자와 대리인 관계확인서류 (단&gt; 전산상 관계 확인가능 시 생략)</li> </ul> <p>단&gt;① 입금 업무관련 지급금 수령가능 계좌 外 계좌 송금 시 : 입금취소, 해외장기체류, 할인업무(소급분)      ② 증명서 발급시      ▶ 계약자 유선확인 또는 청구권자 부재 관련 서류 징구 必</p>	<p>▶ ③+④+⑥ 보험금 위임서류 징구 생략 → 청구권자 본인 계좌 수령에 한해 적용</p> <p>* 공통 ▶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일반지급, 계약변경, 입금)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보험금)</p> <p>* 대리인 자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그 외 관계서류 상 친족관계인 者 (시부모, 올케, 동서, 시동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친족 外 제3자 위임불가    ②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가능</li> </ul> </li> </ul> <p>* 주1&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_구비서류 접수기준 中 -&gt; 바. 아포스티유제도 이해 [47-48page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국민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li> <li>■ 영주권자 : 대한민국 국적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에서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자</li> </ul> </li> </ul> <p>* 주2&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방한 대리인 작성 함</li> </ul> <p>* 주3&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사본 생략_예금주 체크 시 예금주명 확인 必 (확인 불가시 통장사본 징구)</li> <li>- 국내계좌만 송금 가능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해외계좌로 송금불가 FAQ_3)</li> </ul> <p>* 주4&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_구비서류 접수기준 中 -&gt; 고객 접수서류별 발급처 및 접수가능 유효기간 참고(30p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사실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 발급: 재외국민관할공관 또는 영사민원24</li> <li>■ 출입국사실증명서 : 최종 해외 출국 중이면서 접수일 기준 7일이내 / 발급: 법무부 또는 정부24</li> </ul> </li> </ul>

### 3. 청구권자 해외거주(해외국적취득 & 전산상 내국인의 경우)<sup>주1</sup> 접수기준

구 분	대리인 내방_청구권자 계좌 송금신청 시		대리인 내방_대리인 계좌 송금신청 시
공 통	당사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별 신청서 (당사양식)</li> <li>◎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sup>주2</sup>(당사양식)</li> <li>◎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별 신청서 (당사양식)</li> <li>◎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sup>주2</sup>(당사양식)</li> <li>◎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li> </ul>
일반지급 계약변경 보험금	고객 준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리인 신분증</li> <li>② 청구권자 본인 통장계좌<sup>주3</sup></li> <li>③ 청구권자와 대리인 관계확인서류</li> <li>④ 국적상실 확인 되는 기본증명서 (*2008년이전 국적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발급)</li> <li>⑤ 동일인확인서류(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li> <li>⑥ 청구권자 외국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단&gt; 외국여권 첨부 시 ①,②,③ 中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사무소발급)</li> <li>② 시민권자 거주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li> <li>③ 외국운전면허증(사진,성명,생년월일,주소, 유효기간,발급기관 명시 必 )</li> </ul> </li> <li>⑦ 위임장(자필+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li> <li>⑧ 청구권자 유선확인</li> <li>▶③+⑦ 보험금 생략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리인 신분증</li> <li>② 대리인 통장계좌<sup>주3</sup></li> <li>③ 청구권자와 대리인 관계확인서류</li> <li>④ 국적상실 확인 되는 기본증명서 (*2008년이전 국적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발급)</li> <li>⑤ 동일인확인서류(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li> <li>⑥ 청구권자 외국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단&gt; 외국여권 첨부 시 ①,②,③ 中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사무소발급)</li> <li>② 시민권자 거주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li> <li>③ 외국운전면허증(사진,성명,생년월일,주소, 유효기간,발급기관 명시 必 )</li> </ul> </li> <li>⑦ 위임장(자필+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_<b>대리인계좌정보 기재 必</b></li> <li>⑧ 청구권자 유선확인</li> </ul>
입금	고객 준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리인 신분증</li> <li>② 청구권자와 대리인 관계확인서류 (단&gt; 전산상 관계 확인가능 시 생략)</li> </ul> <p>단&gt;① 입금 업무관련 지급금 수령가능 계좌 외 계좌 송금 시 : 입금취소, 해외장기체류, 할인업무(소급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증명서 발급시</li> <li>▶계약자 유선확인 또는 청구권자 부재 관련 서류 징구 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④+⑦ 보험금 위임서류 징구 생략 → 청구권자 본인 계좌 수령에 한해 적용</li> </ul> <p>* 공통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일반지급,계약변경,입금) / 보험금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보험금)</p> <p>* 대리인 자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그 외 관계서류 상 친족관계인 者 (시부모, 올케, 동서, 시동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친족 外 제3자 위임불가    ②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가능</li> </ul> </li> </ul> <p>* 주1&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_구비서류 접수기준 中 -&gt; 바. 아포스티유제도 이해 참고 요망 [47~48page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권자 : 외국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시민이 된 자</li> <li>■ 외국국적동포 : 해외 시민권자 中 과거 대한민국 국민 또는 직계비속</li> </ul> </li> </ul> <p>* 주2&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방한 대리인 작성 함</li> </ul> <p>* 주3&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사본 생략_예금주 체크 시 예금주명 확인 必 (확인 불가시 통장사본 징구)</li> <li>- 국내계좌만 송금 가능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해외계좌로 송금불가 <a href="#">FAQ 3</a>)</li> </ul> <p>* 고객 준비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_구비서류 접수기준 中 -&gt; 고객 접수서류별 발급처 및 유효기간 참고(30page)</li> </ul>
비 고			

## ■ FAQ

### 11.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 복수국적이 가능한가요?

■ 해외 시민권 취득 시 취득과 동시에 [한국국적은 자동상실](#) 됩니다. 단> 국적상실신고를 통해 한국 정부(제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관서)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는 한국비자를 발급받은 후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면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외국인도 통장개설은 가능](#)하며 한국국적일 당시 만든 통장은 국적이 변경 되었음을 은행 측에 알려 정보변경 해야 합니다. 고객 안내 시 참고 해주세요

## 4. 청구권자 실종하였을 경우

### (1) 실종선고(失踪宣告)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

#### ※ 실종선고

##### ■ 실종선고의 청구 (민법 제27조)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 ('민법' 제27조제1항).
- 전쟁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민법' 제27조제2항).

##### ■ 실종선고의 효과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의 기간이 만료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 (2) 접수기준

구 분	구비 서류	비고
일반지급 계약변경 보험금 입 금	<p>① 법원에 부재자 신고 → 재산관리인 선임 → 재산관리인이 청구 및 수령 ■ 재산관리인 선임 확정서(법원) ■ 재산관리인 신분증 및 관계서류</p> <p>② 실종신고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법원으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이 청구 ■ 기본증명서(실종선고 사실기재) ■ 대표 상속인 신분증 및 관계서류(업무별 사망 접수기준 동일)</p> <p>※ 실종선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실종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보험료 납입이 되어야 한다.</p>	<p>■ 처분행위는 법원허가</p> <p>■ 일반실종 : 최후소식 이후 5년경과 ■ 특별실종 : 위난종료 한 후 1년경과</p>

## ■ FAQ

### 1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사고로 실종된 경우 보험료의 납입을 왜 계속해야 하나요?

▪ 집을 나가 생사불명인 사람이라면 일반실종이며, 가족이나 검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고, 자자체에 [실종선고신고](사망신고)를 한 다음에야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즉, 실종 된지 만5년이 지나야, 실종선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보험계약은 적어도 그때까지 유지가 되어 있거나, 청구권 유지기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 생명보험 표준약관 참고>

##### 제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 0항 및 제00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특약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실종선고 -기본증명서 서류 샘플

기본증명서(상세)					
[폐쇄]					
등록기준지	천라남도 보성군 충치면				
구분	상세내용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일] 2008년 01월 01일 [작성사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폐쇄	[폐쇄일] 2018년 11월 16일 [폐쇄사유] 실종선고심판확정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정 [Redacted] [Redacted] 선고	1989년 06월 24일	890624-[Redacted]	남	河東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세내용				
출생	[출생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Redacted] [신고일] 1989년 07월 11일 [신고인] 부 [송부일] 1989년 07월 19일 [송부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실종선고	[실종선고심판확정일] 2018년 11월 07일 [실관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사건번호] [실종기간만료일] 2010년 01월 01일 [신고일] 2018년 11월 16일 [신고인] [처리관서] 경기도 이천시				

위 기본증명서(상세)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불리없음을 증명합니다.

## 아. 청구권자(또는 피보험자) 사망 시 접수기준

### 1. 상속 의의

- 어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게 속해 있던 재산상 권리 의무가 그 사망자와의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연히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

-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 우리 민법은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을 모두 규정하고 있음
- 유언상속이 법정상속에 우선
- 법정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은 유언상속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
- 상속 관련 용어 ①피상속인: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②상속인: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  
③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선고일

### 2. 상속의 순위 [대한민국]

순위	상속인	내용
1 순 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卑屬) 및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직계로 이어지는 혈족 및 양자를 의미(자녀·손자녀 등)</li><li>- 자녀와 손자녀 등 촌수가 다른 직계비속이 있을 때에는 최근친 직계비속이 상속인 됨 ('민법' 제1000조)</li><li>- 성별, 혼인여부, 동일 호적 여부 등을 묻지 않음</li><li>- 계모자 관계 와 적모서자 관계는 인척관계에 해당하므로 직계비속 아님 *계모자: 계모와 전처 출생자사이의 관계 *적모서자: 혼인외 출생자와 부(父)의 배우자 사이의 관계</li><li>-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간주 되어 상속이 이루어짐. 단&gt; 출생하면 소급하여 상속(지급보류)</li></ul>
2 순 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尊屬) 및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피상속인의 부모와 조부모, 증조부모를 말함</li><li>- 직계존속이 수인인 경우에는 동순위로 상속이 되며, 촌수가 가까운 최근친 직계존속이 상속인 됨 ('민법' 제1000조)</li><li>- 자식에 대한 상속인의 지위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상속권을 가짐 : 친부모, 양부모 상속권 있음 (단, 친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만 상속인)</li></ul>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순위 직계비속·2순위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하고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단독 상속 ('민법' 1003조)</li><li>- 법률상의 배우자만이 상속인이 됨, 사실혼 관계는 상속인 될 수 없음</li></ul>
3 순 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복형제(父는 같으나 母가 다른 경우) 이성동복(父는 다르나 母가 같은 경우) : 부계·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 자연혈족·법정혈족 불문, 입양되어 형제가 된 경우에도 상속</li><li>- 형제자매가 수인인 경우 → 공동상속</li><li>- 상속할 형제가 사망한 경우 → 그 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습상속 ('민법' 제1001조, 1003조)</li></ul>
4 순 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임 ('민법' 1000조)</li><li>- 1~3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며, 수인인 경우에는 촌수가 가까운 자가 선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됨</li><li>- 부계·모계 불문<ul style="list-style-type: none"><li>■ 3촌 방계혈족: 친가 - 백숙부, 고모 / 외가 - 외숙부, 이모</li><li>■ 4촌 방계혈족: 친가 - 백숙부 자녀들, 고모 자녀들, 할아버지 형제자매, 할머니 형제자매 외가 - 외숙부 자녀들, 이모 자녀들, 외할아버지 형제자매, 외할머니 형제자매</li></ul></li></ul>

## 2. 상속의 순위 [타국(他國)]

순위	중 국	일 본	화 교(타이완)
1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 배우자	자녀 + 배우자
2순위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존속(부모나조부모등) + 배우자	부모 +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 배우자	형제자매 + 배우자
4순위			조부모 + 배우자
비고	■'중화인민공화국상속법' 제10조에 따른 상속 순위	■'일본민법 제887조, 제889조, 제890조 - 일본의 경우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며, 1,2,3 순위와 함께 공동상속인의 지위 보유	■'중화민국 민법' - 배우자 단독 상속은 1~4순위 상속인 없을 때 가능

## 3. 법정상속분 이해

구분	내 용
적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계약자가 수인의 보험수의자를 지정하면서 <b>분배비율을 별도로 지정하였다면 그 분배 비율에 따르고</b> 지정하지 않았다면 각각 균등한 비율에 따라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게 됨</li> <li>- 민법상의 상속분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실무적으로 유력하게 적용됨</li> </ul>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b>균분으로 함</b> (민법 제1009조) 다만, 배우자가 직계존속 ·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b>대습상속의 경우</b> 대습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다 (민법 제1010조)</li> </ul> <p>※ 유언으로 상속지분을 지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처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1.5 : 장남 1</li> <li>- 배우자 1.5 : 장남 1 : 장녀 1</li> </ul> <p>예시) 3억5천에 대해 배우자, 장남, 장녀 상속을 받을 경우  <math>\rightarrow \text{배우자 } 1\text{억 } 5\text{천만}(42.86) : \text{장남 } 1\text{억}(28.57) : \text{장녀 } 1\text{억}(28.57) = 100\%</math></p> </li> <li>2. 자녀는 없고 배우자, 아버지만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1.5 : 부 1</li> </ul> <p>예시) 3억5천에 대해 배우자, 직계존속 부 상속을 받을 경우  <math>\rightarrow \text{배우자 } 2\text{억 } 1\text{천만}(60) : \text{부 } 1\text{억 } 4\text{천}(40) = 100\%</math></p> </li> </ol> <p>▶ 상속인별 지분 입력 방법 : 지분을 계산 후 <b>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b> 계산(합100% )</p>

#### 4. 대습상속 이해

구 분	내 용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결격자의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됨 (민법 제1001조)</li> <li>- 그 결격자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동순위로 공동 상속이 됨, 그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됨 (민법 제1003조)</li> </ul> </li> </ul>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인이 될 자인 피대습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이전의 사망 · 결격자가 되어야 함 (민법 제1004조)</li> <li>■ 약관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분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고의로 해친 경우에 그 상속분에 대한 대습상속은 적용 하지 않음</li> </ul>
참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한함</li> <li>■ 피대습자의 상속 결격 이후에 출생한 자녀와 배우자도 포함 직계비속에는 태아 포함, 배우자는 법률상의 혼인을 한 배우자에 한함. 그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인척 관계가 소멸 하며(민법 제775조) 대습상속권이 없음(등기예규 제694호)</li> <li>■ 보험수익자의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 하였다고 해도 여전히 보험수익자로서의 보험금청구권을 갖음 (보험금 청구권이 대습상속 될 여지는 없음)</li> </ul>

#### 5. 동시사망 이해

구 분	내 용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인 이상이 동일한 위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민법 제30조)              <b>동시사망자간에는 상속하지 않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확한 사망의 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상속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li> <li>-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자의 자녀등이 상속인이 될 수도 없음 (90가합1625 판결)</li> </ul> </li> </ul>
동시사망 과 대습상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 자가 본위상속 또는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되므로 불공평 불합리하다는 점을 이유로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대습상속만은 인정 (대법원2001.3.9.선고99다13157판결)</li> </ul>

## ■ FAQ

13. 피보험자 A가 보험수익자를 '상속인' 미지정, A의 아들인 B가 A를 살해한 경우에, B에게는 배우자 C와 자녀D가 있다면 가능한 상속인은? (A의 법정상속인은 B 아들만 有)

■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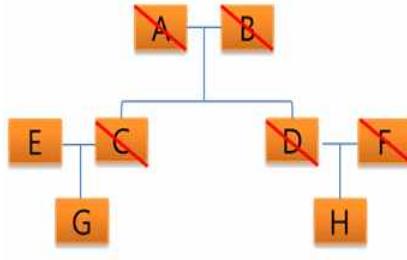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분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고의로 해친 경우에 그 상속분에 대한 대습상속은 적용 하지 않음**

14. 가족과 함께 비행기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중국으로 여행을 가던 중 비행기 추락사고로 2013.6.25일 가족 B, C, D, F와 함께 동시에 사망함, 해당 상속인 및 상속인별 보험금을 구하시오 ?  
(사망보험금 3억, 가족 모두 성년 및 정상인)

[가족사항]

- A : 피보험자, B : A의 배우자, C(아들) 및 D(딸) : A의 자녀
- E : C의 배우자, F : D의 배우자, G : C의 자녀, H : D의 자녀

- C의 대습상속인 E : 9,000만원
- C의 대습상속인 G : 6,000만원
- D의 대습상속인 H : 1억 5,000만원



15. 피보험자 사망으로 상속인 배우자가 내방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서류에 직계비속 자녀는 없고, 부모도 모두 사망 했는데 단독상속 아니냐며, 왜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확인 되는 서류를 어떤 근거로 제출하라고 하냐고 하는데요 ?

- 배우자 단독상속의 경우, 1순위 직계비속 · 2순위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하고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단독 상속 (민법1003조)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뿐만 아니라 조부모 등 수인인 경우에는 동순위로 상속이 되며, 촌수가 가까운 최근친 직계존속이 상속인(민법 제1000조)으로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직계존속 추가 상속인 없음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 6. 청구권자(또는 피보험자) 사망 관련 접수기준

구분	대표 수익자_내방 접수 시	상속인 中 1인_내방 접수 시
	인별합산 실지급액_500만원 이하	
일반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별 신청서 <a href="#">주1</a> (당사양식)</li> <li>◎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li> <li>◎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li>   <li>① 내방한 대표수익자 신분증</li> <li>② 대표수익자 계좌 <a href="#">주2</a></li> <li>③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상세) <a href="#">주3</a></li> <li>④ 상속관계 확인서류(상속인 전원 확인 가능 必)</li> <li>*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li> <li>*상속인中 2007.12.31.이전에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추가</li> <li>*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a href="#">주4</a> 아래 추가서류 첨부</li>   <li>⑤대표수익자자정 및 계약변경동의서(당사양식) 작성 + 상속인 위임서류 생략 <a href="#">주5</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별 신청서 <a href="#">주1</a> (당사양식)</li> <li>◎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li> <li>◎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li>   <li>① 내방한 상속인 신분증</li> <li>② 대표수익자 계좌 <a href="#">주1</a></li> <li>③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상세) <a href="#">주3</a></li> <li>④ 상속관계 확인서류(상속인 전원 확인 가능 必)</li> <li>*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li> <li>*상속인中 2007.12.31.이전에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추가</li> <li>*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a href="#">주4</a> 아래 추가서류 첨부</li>   <li>⑤대표수익자자정 및 계약변경동의서(당사양식) 작성 + 상속인 위임서류 생략 <a href="#">주5</a></li> </ul>
계약변경	인별합산 실지급액_500만원 초과	
보험금		
입금 <a href="#">주6</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별 신청서 <a href="#">주1</a> (당사양식)</li> <li>◎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li> <li>◎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li>   <li>① 내방한 대표수익자 신분증</li> <li>② 대표수익자 계좌 <a href="#">주2</a></li> <li>③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상세) <a href="#">주3</a></li> <li>④ 상속관계 확인서류(상속인 전원 확인 가능 必)</li> <li>*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li> <li>*상속인中 2007.12.31.이전에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추가</li> <li>*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a href="#">주4</a> 아래 추가서류 첨부</li>   <li>⑤대표수익자자정 및 계약변경동의서(당사양식) 작성 + 상속인 위임서류 제출 <a href="#">주5</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별 신청서 <a href="#">주1</a> (당사양식)</li> <li>◎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li> <li>◎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li>   <li>① 내방한 상속인 신분증</li> <li>② 대표수익자 계좌 <a href="#">주1</a></li> <li>③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사망사실기재+상세) <a href="#">주3</a></li> <li>④ 상속관계 확인서류(상속인 전원 확인 가능 必)</li> <li>*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li> <li>*상속인中 2007.12.31.이전에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추가</li> <li>*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a href="#">주4</a> 아래 추가서류 첨부</li>   <li>⑤대표수익자자정 및 계약변경동의서(당사양식) 작성 + 상속인 위임서류 제출 <a href="#">주5</a></li> </ul>
비 고	<p>※ 공통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일반지급,계약변경,입금) / 보험금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보험금)</p> <p>※ 주1&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별 신청서- 고객 처리요청 업무에 따라 신청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지급: 제지급금신청서 ■ 계약변경: 계약내용변경정정신청서 ■ 보험금: 보험금청구서 등</li> </ul> </li> </ul> <p>※ 주2&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사본생략_예금주 체크 시 예금주명 확인 必 (확인 불가시 통장사본 징구)</li> <li>- 국내계좌만 송금 가능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해외계좌로 송금불가 <a href="#">FAQ 3</a>)</li> </ul>	

### ※ 주3>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원본제출 시(보험금만 적용)

- 기본증명서(상세) 생략가능(진단서상 원본여부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사실기재여부 무관(단>사망일 이후 발급 서류)
- 종피보험자(배우자) 사망 시 : 주피보험자와의 관계확인서류(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 ※ 주4>

#### - 사망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추가(금액 상관없이) :

- 미성년자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친권자(후견인)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서명)』  
(위임장 대체 ->대표수익자지정 및 계약변경동의서 기재 시에 생략)
- 미성년후견인 접수 : 법원결정문 정본 제출(결정문 내 후견인 대리 업무 범위, 상속 재산목록 포함 제출FAQ\_6),  
법원 결정문 내용에 따라 지급 처리 불가 할 수 있음

### ※ 주5>

#### - 대표수익자지정 및 계약변경동의서(당사양식) 작성 (2인 이상인 경우)

비 고

상속인 내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인 신분증</li> <li>- 대표수익자지정 및 계약변경동의서 자필 작성 +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서 작성(업무별)</li> </ul>	
	5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인 전원 녹취확인 ▶대표수익자지정 지정위임 및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 확인</li> </ul>
상속인 미내방	500만원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인감날인+녹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필서명+녹취] + 대표수익자 [인감증명서+인감날인+녹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필서명+녹취] (대표수익자지정 및 계약변경동의서 작성 불가시 별도 위임장 작성 대체가능)</li> <li>+ 녹취확인 ▶대표수익자지정 지정위임 및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 확인</li> </ul>

\*상속인 中 피성년후견인 존재 시 : 성년후견관련 접수기준 서류 첨부

### ※ 주6> 입금 업무 시

#### ① 대리인 신분증

#### ② 청구권자와 대리인 관계확인서류 (단> 전산상 관계 확인가능 시 생략)

단>① 입금 업무관련 지급금 수령가능 계좌 외 계좌 송금 시 : 입금취소, 해외장기체류, 할인업무(소급분)

#### ② 증명서 발급시

▶계약자 유선확인 또는 청구권자 부재 관련 서류 징구 必

## 자. 사업자(개인/법인) 업무별 접수기준

### 1. 사업자 청구권자 기준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영리단체(임의단체)
※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분 요령			사업자번호 가운데 두자리 수
세무서 코드      사업자 구분      일련번호      검증코드 	01~79, 90~99	81, 83~88	82, 80, 89
신청인 범위	대표자, 대표자가족, 직원	대표자, 직원	대표자, 직원
※ 대표자 가족 범위 : 대표자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관계서류상 친족 *친족 -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비영리단체(사업자 미등록하여 고유번호증 소지한 단체)			

### 2. 사업자 구비서류 유효기간 및 참고사항

#### (1) 구비서류 유효기간

서류명	유효기간	서류명	유효기간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재직증명서	당일
법인 인감대신 사용인감 사용 가능 (단, 사용인감에 구비 必)		휴/폐업사실증명원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법인등기부 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설립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고유번호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재산관리인 선임확정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 (2) 구비서류 유의사항

구분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有	① 법인인감증명서 정보와 일치 여부 확인
개인사업자	無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주민등록번호 확인 가능) ② 주의 : 개인사업자는 고유번호증 사용 불가 (설립목적 확인이 불가함)
비영리 단체 (법인미등록)	無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고유번호증 또는 설립허가증 (3가지 모두 주민등록번호 확인 가능)

### (3)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 유의사항

구분	사업자등록증						
각자대표	<p>■ 대표자 중 1인의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 여러명의 대표이사를 선정 대표이사 각자 회사를 대표, 대표이사 중 1인이 승낙해도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이 가능</p>						
공동대표	<p>■ 대표자 각각 명의로 된 법인 인감증명서 전원 첨부  ※ 두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제도로 대표이사 모두 승낙을 해야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 가능  ※ 참고 : 공동사업자 확인 서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h>서류</th> <th>상세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사업자등록증</td> <td>           ① 성명란에 법인인 경우 대표자 모두, 개인사업자인 경우 'OOO외 O인' (중 하단부에 인적 사항 기재)으로 명시            ② 공동대표 / 각자대표 여부가 팔호로 명시         </td></tr> <tr> <td>등기부등본</td> <td>공동대표인 경우 공동 대표이사 OOO로 명시되나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이사 OOO로 명시</td></tr> </tbody> </table>	서류	상세내용	사업자등록증	① 성명란에 법인인 경우 대표자 모두, 개인사업자인 경우 'OOO외 O인' (중 하단부에 인적 사항 기재)으로 명시 ② 공동대표 / 각자대표 여부가 팔호로 명시	등기부등본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 대표이사 OOO로 명시되나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이사 OOO로 명시
서류	상세내용						
사업자등록증	① 성명란에 법인인 경우 대표자 모두, 개인사업자인 경우 'OOO외 O인' (중 하단부에 인적 사항 기재)으로 명시 ② 공동대표 / 각자대표 여부가 팔호로 명시						
등기부등본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 대표이사 OOO로 명시되나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이사 OOO로 명시						

### (4) 사업자등록번호 구성체계

구분	사업자번호	인격분류	주요 설명
1	01 - 79	개인	과세업자
2	80	개인	소득세법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 판매원)
3	81	법인	영리법인의 본점
4	82	법인	비영리단체의 본점 및 지점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5	83	법인	국가, 지자체, 지자체 포함
6	84	법인	외국법인의 본지점, 연락 사무소
7	85	법인	영리법인의 지점
8	86~88	법인	영리법인의 본점
9	89	개인	소득세법 (종교단체)
10	90 - 99	개인	면세 사업자

※ 사업자번호 4번째, 5번째 숫자로 구분

[샘플]

2. 사업자(개인/법인) 접수 서류기준 단체 100% 보험료부담

구분	일반지급, 계약변경, 보험금, 입금 <sup>주1</sup>	
	개인사업자_보험료부담 100%	법인사업자_보험료부담 100%
신청인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대표자가족, 직원</li> </ul> <p>◎ 업무별 신청서 (당사양식)      ◎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번호 미확인시<b>[사업자등록증명원]</b> 추가 징구</li> <li>■ 실제 소유자확인을 위한서류 (KYC 기준 준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직원</li> </ul> <p>◎ 업무별 신청서 (당사양식)      ◎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li> <li>■ 법인인감증명서</li> <li>■ 법인인감도장 <sup>주4</sup></li> <li>■ 실제 소유자확인을 위한서류 (KYC 기준 준용)</li> </ul>
공통 서류	<p>※ 공동대표인 경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내방 대표자 전원 [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날인)]          또는 본인명사실확인서+위임장(자필서명)]</li> </ul> <p>단&gt;인감증명서 본인발급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용도기재)      제출 시 유선확인 생략</p>	<p>※ 공동대표인 경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내방 대표자 전원          [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법인인감날인)]</li> </ul>
수령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명의 계좌 또는 대표자 계좌 <sup>주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명의 계좌 <sup>주2</sup></li> </ul>

대표자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신분증 <a href="#">주3</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신분증 <a href="#">주3</a></li> </ul>
직원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신분증</li> <li>■ 직원▶재직확인서류: ①,②,③ 中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재직증명서(당일발급건만 유효_녹취생략)</li> <li>②건강보험증 + '대표자 또는 회사 확인 녹취'</li> <li>③명함 + '대표자 또는 회사 확인 녹취'</li> </ul> </li> <li>■ 대표자 위임서류: [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장(자필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gt;인감증명서 본인발급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용도기재) 제출 시 유선확인 생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신분증</li> <li>■ 직원▶재직확인서류: ①,②,③ 中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재직증명서(당일발급건만 유효_녹취생략)</li> <li>②건강보험증 + '대표자 또는 회사 확인 녹취'</li> <li>③명함 + '대표자 또는 회사 확인 녹취'</li> </ul> </li> <li>■ 위임서류: 위임장(법인인감날인)</li> </ul>
대표자 가족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가족 신분증</li> <li>■ 가족▶관계확인서류</li> <li>■ 대표자 위임서류: [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장(자필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gt;인감증명서 본인발급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용도기재) 제출 시 유선확인 생략</li> </ul> </li> </ul>	-
	<p>※ <b>공통</b>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일반지급,계약변경,입금) / 보험금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보험금)</p> <p>※ 주1&gt; 입금 업무 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① 신청서 +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p> <p>② 직원 ▶신분증 + 재직확인서류 (단&gt; 전산상 직원정보 확인가능 시 생략)</p> <p>③ 가족 ▶신분증 + 관계확인서류 (단&gt; 전산상 관계 확인가능 시 생략) -&gt;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능</p> <p>④ KYC 재이행 주기 도래시 ▶ 공통서류 징구 필요</p> <p>단&gt; 입금 업무관련 지급금 수령가능 계좌 외 계좌 송금 시 : 입금취소, 해외장기체류, 할인업무(소급분) 처리의 경우</p> <p>▶대표자 유선확인 또는 대표자 위임서류:            [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장(자필서명)]            단&gt;인감증명서 본인발급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용도기재) 제출 시 유선확인 생략</p> </div>	
비고	<p>※ 주2&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사본생략_예금주 체크 시 예금주명 확인 必 (확인 불가시 통장사본 징구)</li> <li>- 국내계좌만 송금 가능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해외계좌로 송금불가 <a href="#">FAQ 3</a>)</li> </ul> <p>※ 주3&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첨부</li> </ul> <p>※ 주4&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대표 경우_ 미내방 공동대표의 법인인감도장 지참하여 내방 必</li> </ul> <p>※ <b>법인번호로 가입된 계약 전건 사업자 번호로 변경 신청 후 업무처리</b> 必 (<a href="#">운영서비스파트 계약변경 문의</a>)</p> <p>※ 보험금업무-&gt; <b>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사업자인 경우:</b> 상기 구비서류 + 상속인 중 1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용도기재)+서명」 + <b>단체보험 보험금수령 확인서</b> 제출            *단체보험 보험금 수령확인서(당사양식)_홈페이지 &gt; 헬프데스크 &gt; 구비서류안내 &gt; 양식다운로드</p>	

#### 4. 사업자(개인/법인) 접수 서류기준\_단체50%, 피보험자 50% 보험료부담

구분	보험금	
	개인사업자_단체50%,피보험자50% 보험료부담	법인사업자_단체50%,피보험자50% 보험료부담
공통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li> <li>◎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li> <li>◎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li> </ul>
피보험자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보험자 신분증</li> <li>■ 피보험자 통장계좌 <sup>주1</sup></li> <li>■ 사업자등록증</li> <li>: 주민등록번호 미확인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추가 징구</li> <li>■ 미내방 대표자 [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날인)]</li> <li>또는 본인명사실확인서+위임장(자필서명)]</li> <li>단&gt;인감증명서 본인발급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용도기재) 제출 시 유선확인 생략</li> <li>■ 실제 소유자확인을 위한서류 (KYC 기준 준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보험자 신분증</li> <li>■ 피보험자 통장계좌 <sup>주1</sup></li> <li>■ 사업자등록증</li> <li>■ 법인인감증명서</li> <li>■ 법인인감도장</li> <li>■ 위임장(인감날인)</li> <li>■ 실제 소유자확인을 위한서류 (KYC 기준 준용)</li> </ul>
대표자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신분증 <sup>주2</sup></li> <li>■ 회사 명의 계좌 또는 대표자 계좌 <sup>주1</sup></li> <li>■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li> <li>: 주민등록번호 미확인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추가 징구</li> <li>■ 미내방 피보험자 [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날인)]</li> <li>또는 [본인명사실확인서+위임장(자필서명)]</li> <li>단&gt;인감증명서 본인발급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용도기재) 제출 시 유선확인 생략</li> <li>■ 실제 소유자확인을 위한서류 (KYC 기준 준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신분증 <sup>주2</sup></li> <li>■ 회사 명의 계좌 <sup>주1</sup></li> <li>■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li> <li>: 주민등록번호 미확인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추가 징구</li> <li>■ 법인인감증명서</li> <li>■ 법인인감도장</li> <li>■ 미내방 피보험자 [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날인)]</li> <li>또는 [본인명사실확인서+위임장(자필서명)]</li> <li>단&gt;인감증명서 본인발급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용도기재) 제출 시 유선확인 생략</li> <li>■ 실제 소유자확인을 위한서류 (KYC 기준 준용)</li> </ul>
직원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신분증</li> <li>■ 직원▶재직확인서류: ①,②,③ 中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재직증명서(당일발급 가능_녹취생략)</li> <li>②건강보험증 + '대표자 또는 회사 확인 녹취'</li> <li>③명함 + '대표자 또는 회사 확인 녹취'</li> </ul> </li> <li>■ 회사 명의 계좌 또는 대표자 계좌 <sup>주1</sup></li> <li>■ 미내방 피보험자 [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날인)]</li> <li>또는 [본인명사실확인서+위임장(자필서명)]</li> <li>단&gt;인감증명서 본인발급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용도기재) 제출 시 유선확인 생략</li> <li>■ 실제 소유자확인을 위한서류 (KYC 기준 준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신분증</li> <li>■ 직원▶재직확인서류: ①,②,③ 中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재직증명서(당일발급 가능_녹취생략)</li> <li>②건강보험증 + '대표자 또는 회사 확인 녹취'</li> <li>③명함 + '대표자 또는 회사 확인 녹취'</li> </ul> </li> <li>■ 회사 명의 계좌 <sup>주1</sup></li> <li>■ 법인인감증명서</li> <li>■ 법인인감도장</li> <li>■ 위임서류: 위임장(법인인감날인)</li> <li>■ 미내방 피보험자 [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날인)]</li> <li>또는 [본인명사실확인서+위임장(자필서명)]</li> <li>단&gt;인감증명서 본인발급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용도기재) 제출 시 유선확인 생략</li> <li>■ 실제 소유자확인을 위한서류 (KYC 기준 준용)</li> </ul>

비 고	<p>※ 공통 ▶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일반지급, 계약변경, 입금) / 보험금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보험금)</p> <p>※ 주1&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사본생략_예금주 체크 시 예금주명 확인 必 (확인 불가시 통장사본 정구)</li> <li>- 국내계좌만 송금 가능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해외계좌로 송금불가 <a href="#">FAQ 3</a>)</li> </ul> <p>※ 주2&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첨부</li> </ul> <p>※ 보험금업무→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사업자인 경우: 상기 구비서류 + 상속인 중 1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용도기재)+서명」 + 단체보험 보험금수령 확인서 제출 *단체보험 보험금 수령확인서(당사양식)_홈페이지 &gt; 헬프데스크 &gt; 구비서류안내 &gt; 양식다운로드</p> <p>※ 피보험자부담률 확인 : 통합계약원부[NCMA0010] 계약관리 &gt; 계약정보조회 &gt; 계약기본사항조회 &gt; 계약기본 탭 : 보험료 -피보험자부담률 확인</p> <p><b>■ 보험료</b></p> <table border="1"> <tr> <td>납입방법선택일자</td><td>2003-02-11</td><td>이체개시일자</td><td>2003-02-25</td><td>이체일정분</td><td>25일(25)</td><td>청구여부</td><td>N</td></tr> <tr> <td>납입방법</td><td>자동이체(10)</td><td>금융기관</td><td>신한(088)</td><td>이체고유번호</td><td>80</td><td>거래주</td><td></td></tr> <tr> <td>납입이체여부</td><td>Y</td><td>피보험자부담률</td><td>0</td><td>기쁨여부</td><td>N</td><td>유호년월</td><td></td></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초회납입방법</td><td>방문수금(60)</td></tr> </table>	납입방법선택일자	2003-02-11	이체개시일자	2003-02-25	이체일정분	25일(25)	청구여부	N	납입방법	자동이체(10)	금융기관	신한(088)	이체고유번호	80	거래주		납입이체여부	Y	피보험자부담률	0	기쁨여부	N	유호년월								초회납입방법	방문수금(60)
납입방법선택일자	2003-02-11	이체개시일자	2003-02-25	이체일정분	25일(25)	청구여부	N																										
납입방법	자동이체(10)	금융기관	신한(088)	이체고유번호	80	거래주																											
납입이체여부	Y	피보험자부담률	0	기쁨여부	N	유호년월																											
						초회납입방법	방문수금(60)																										

## 5. 사업자(비영리단체(임의단체)) 접수 서류기준

구분	일반지급, 계약변경, 보험금, 입금 <a href="#">주1</a>	
	임의단체 법인 미등록(80,82,89)	비영리단체(임의단체) 법인 등록 (82)
신청인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직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직원</li> </ul>
공통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별 신청서 (당사양식)</li> <li>◎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li> <li>◎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또는 설립허가증 : 주민등록번호 미확인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추가 징구</li> <li>■ 실제 소유자확인을 위한서류 (KYC 기준 준용)</li> <li>■ 설립 목적 확인서류 (KYC 기준 준용)</li> </ul> <p>※ 공동대표인 경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내방 대표자 전원 [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날인)] 또는 본인명사실확인서+위임장(자필서명)]</li> </ul> <p>단&gt;인감증명서 본인발급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 용도기재) 제출 시 유선확인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별 신청서 (당사양식)</li> <li>◎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li> <li>◎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당사양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li> <li>■ 법인인감증명서</li> <li>■ 법인인감도장</li> <li>■ 실제 소유자확인을 위한서류 (KYC 기준 준용)</li> <li>■ 설립 목적 확인서류 (KYC 기준 준용)</li> </ul> <p>※ 공동대표인 경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내방 대표자 전원 [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법인인감날인)]</li> </ul>
수령계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명의 계좌 <a href="#">주2</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 명의 계좌 <a href="#">주2</a></li> </ul>
대표자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신분증 <a href="#">주3</a></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신분증 <a href="#">주3</a></li> </ul>

<p><b>직원 신청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신분증</li> <li>■ 직원▶재직확인서류: ①,②,③ 中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재직증명서(<a href="#">당일발급 가능_녹취생략</a>)</li> <li>②건강보험증 + '대표자 또는 회사 확인 녹취'</li> <li>③명함 + '대표자 또는 회사 확인 녹취'</li> </ul> </li> <li>■ 대표자 위임서류: [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장(자필서명)]           <p>단&gt;인감증명서 본인발급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용도기재) 제출 시 유선확인 생략</p>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 신분증</li> <li>■ 직원▶재직확인서류: ①,②,③ 中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재직증명서(<a href="#">당일발급 가능_녹취생략</a>)</li> <li>②건강보험증 + '대표자 또는 회사 확인 녹취'</li> <li>③명함 + '대표자 또는 회사 확인 녹취'</li> </ul> </li> <li>■ 위임서류: 위임장(법인인감날인)</li> </ul>
<p><b>비고</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b>공통</b>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일반지급,계약변경,입금) / 보험금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보험금)</p> <p>※ <b>주1&gt; 입금 업무 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신청서 + 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li> <li>❷ 직원▶신분증 + 재직확인서류 (단&gt; 전산상 직원정보 확인가능 시 생략)</li> <li>❸ KYC 재이행 주기 도래시 ▶ KYC 공통서류 징구 필요</li> </ul> <p>단&gt; 입금 업무관련 지급금 수령가능 계좌 외 계좌 송금 시 : 입금취소, 해외장기체류, 할인업무(소급분) 처리의 경우 ▶대표자 유선확인 또는 대표자 위임서류: [인감증명서+위임장(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위임장(자필서명)] 단&gt;인감증명서 본인발급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용도기재) 제출 시 유선확인 생략</p> <p>※ <b>주2&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사본생략_예금주 체크 시 예금주명 확인 必 (확인 불가시 통장사본 징구)</li> <li>- 국내계좌만 송금 가능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해외계좌로 송금불가 <a href="#">FAQ 3</a>)</li> </ul> <p>※ <b>주3&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첨부</li> </ul> <p>※ 보험금업무→ <b>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사업자인 경우:</b> 상기 구비서류 + 상속인 중 1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임인,용도기재)+서명」 + 단체보험 보험금 수령확인서 제출 *단체보험 보험금 수령확인서(당사양식)_홈페이지 &gt; 헬프데스크 &gt; 구비서류안내 &gt; 양식다운로드</p> </div>	

## 6. 사업자(개인/법인) 기타 접수 서류기준

### (1) 사업자만 폐업(법인 미청산)

구분	일반지급, 계약변경, 보험금
<b>● 법인 폐업</b>	<p>[폐업신고] → [해산등기] → [청산] 세 가지가 완료되어야 하며, 폐업신고 후 해산 등기 및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법인 존속으로 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만을 폐지하는 것으로 법인 폐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후 법인계좌로만 입금 가능</p>
<b>내방 준비 서류</b>	<p>※ 사업자만 폐업은 <b>대표자만 신청 가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표자 신분증 (신분증 접수기준 4page 참고)</li> <li>② 법인명의 국내 계좌</li> <li>③ 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 * 법인 인감 대신 사용인감 가능 (사용인감계 구비 必)</li> <li>④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b>법인등기부등본</b>(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li>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b>폐업사실증명원</b></li> <li>⑥ 실제 소유자 확인 서류 (KYC 기준 준용)</li> </ul>

### (2) 법인폐업(해산등기, 청산인선임 등기하여 청산 시)

구분	일반지급, 계약변경, 보험금
<b>Q. 해산</b>	- 법인이 해체되어 없어지는 것
<b>Q. 청산</b>	- 해체되는 법인에게 남은 금전적 문제를 정리하는 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 및 법인 정리를 진행할 청산인을 결정하여 해산등기, 청산인선임등기하며 반드시 등기된 청산인이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함
<b>내방 준비 서류</b>	<p>※ 폐업법인은 <b>청산인만 신청 가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산인 신분증</li> <li>② 청산인 명의 국내 계좌</li> <li>③ 청산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목적 기재 必 )            * 청산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대체 서류</li> <li>④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li>⑤ 폐업사실증명원            * 등기부등본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선임된 청산인 성명, 주민번호 확인 必</li> <li>⑥ 실제 소유자 확인 서류 (KYC 기준 준용)</li> </ul>

### (3) 법인 흡수합병

구분	일반지급, 계약변경, 보험금
Q. 합병	<p>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여 그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하고 회사 구성원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말함</p> <p>※ 채권, 채무는 합병 후 존속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보험계약에 대한 해약 접수 및 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존속 회사</p>

### (4) 법인 파산관재인 선임 시

구분	일반지급, 계약변경, 보험금
Q. 파산관재인	<p>파산한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관리, 환가, 배당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사람</p> <p>파산관재인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선임하며 대부분 법인인감증명서에 대표자가 파산관재인으로 변경됨</p>
파산관재인 준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파산관재인 신분증</li> <li>② 파산관재인 명의 국내계좌</li> <li>③ 파산법인의 사업자등록증</li> <li>④ 파산관재인 선임증과 파산선고 결정문</li> <li>⑤ 파산관재인 선임 및 파산선고 내용이 확인되는 법인등기부등본</li> <li>⑥ 파산한 법인의 인감도장, 대표자가 파산관재인으로 변경된 법인인감증명서</li> <li>⑦ 실제 소유자 확인 서류 (KYC 기준 준용)</li> </ul> <p>※ 파산선고결정문 상 업무처리 범위, 가능여부 등 내용 고객서비스팀 담당자 확인 必</p>
직원 내방 준비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직원 신분증</li> <li>② 내방한 직원이 해당 파산관재인의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li> <li>③ 파산관재인 명의 국내계좌</li> <li>④ 파산법인의 사업자등록증</li> <li>⑤ 파산관재인 선임증과 파산선고 결정문</li> <li>⑥ 파산관재인 선임 및 파산선고 내용이 확인되는 법인등기부등본</li> <li>⑦ 파산한 법인의 인감도장, 대표자가 파산관재인으로 변경된 법인인감증명서</li> <li>⑧ 위임장(당사양식) - 파산관재인 직접작성, 파산법인 인감날인</li> <li>⑨ 실제 소유자 확인 서류 (KYC 기준 준용)</li> </ul> <p>※ 파산선고결정문 상 업무처리 범위, 가능여부 등 내용 고객서비스팀 담당자 확인 必</p>

## [샘플]

파산관재인 선임증, 파산선고 결정문	
<p>2019하합 2021. 6. 30. 파산선고</p> <p><b>선 임 증</b></p> <p>성명 사무소</p> <p>위사람은 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함. 임기: 2021. 6. 30. 까지</p> <p>2019. 4. 18.</p> <p>서울회생법원 제21부</p>	 <p>울산지방법원 제 21 민사부 결정정</p> <p>정본입니다. 2021. 법원사무관</p> <p>사건 2021하합501 단선고 신청인 겸 주식회사 채무자 대표이사 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윤소정, 한솔지, 정승일 선고일시 2021. 31. 11:00</p> <p><b>주 문</b></p> <p>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변호사 [ ]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3.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2023. 12. 31. 까지로 한다. 4. 재판선고기간을 2021. 4. 까지로 한다. 5. 제1회 재판자집회와 재판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2021. 5. [ ] 제501호 법정으로 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한다.</p>

### (5) 폐업- 개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단체(임의단체)

구분	일반자금, 계약변경, 보험금
개인사업자 내방 준비 서류	<p>※ 개인사업자만 폐업은 <b>대표자만 신청 가능</b></p> <p>① 대표자 신분증 ② 회사명의 국내 계좌 및 대표자 계좌 ③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b>폐업사실증명원</b></p>
비영리단체 내방 준비 서류	<p>※ 비영리단체(임의단체) 폐업의 경우, 법인등록여부에 따라 서류상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등록: 법인사업자 기준과 동일</li> <li>- 법인미등록: 개인사업자 기준과 동일</li> </ul>

# 목 차

가. 업무별 마스킹 처리기준 .....	91
나. 업무별 마스킹 예시 .....	91
(1) 일반지급 및 계약변경(계약내용 변경 등) 업무 마스킹 예시 .....	91
(2) 입금(자동이체 등) 업무 마스킹 예시 .....	92
(3) 입금(다자녀 할인 신청) 업무 마스킹 예시 .....	92
(4) 보험금접수 업무 마스킹 예시 .....	92
(5) 신계약 업무 마스킹 예시 .....	92
다. 신분증 마스킹 예시 .....	93
라. 개인(신용)정보 화면 마스킹 대상 및 패턴 정의 .....	94

## 4. 마스킹 처리기준\_공통

### 가. 업무별 마스킹 처리기준

[● : 개인(신용)정보 마스킹 해야함 / X : 마스킹 하지 않음]

구분		일반지급	계약변경	입금	보험금	신계약
신분증 복사본	앞면	X	X	●	X	X
		(대리인 신분증 포함)	(대리인 신분증 포함)	(대리인 신분증 포함)	(대리인 신분증 포함)	(대리인 신분증 포함)
	뒷면	- 신분증 뒷면(외국인등록증 제외)은 복사하지 않음 (복사한 경우 지문정보 마스킹 必) - 외국인등록증은 체류기간 확인해야 하므로 뒷면 복사 필수				
제출 서류	업무관련 고객정보	X	X	X	X	X
		(대리인 정보 포함)	(대리인 정보 포함)	(대리인 정보 포함)	(대리인 정보 포함)	(대리인 정보 포함)
	업무무관 고객정보	●	●	●	●	●

#### ※ 신분증 및 제출서류 내 마스킹 대상 항목

-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및 일련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카드번호 등
- \*단, 제출서류 내 업무와 관련된 고객정보는 마스킹 하지 않음

#### ※ 제출서류 마스킹 유의사항

- 업무처리에 필요한 계약관계자 정보 외의 다른 고객정보는 스템프 롤러 또는 검정 매직으로 마스킹 처리
  - \* 해당 업무와 관련 없는 서류는 고객 반환
- 미성년자(계약자 or 수익자 등 계약관계자) 관련 업무의 경우 친권자 모두의 정보를 마스킹 하지 않음
  - \* 단, 미성년자의 친권이 단독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 친권자 외 다른 고객정보는 마스킹 처리
- 대리인 내방 시 대리인 관련 정보 마스킹 하지 않음

### 나. 업무별 마스킹 예시

#### (1) 일반지급 및 계약변경(계약내용 변경 등) 업무 마스킹 예시

구분	변경정정/ 일반지급/ 해약시	신분증	제출서류
예시 ①	계약자 본인 or 대리인 내방시	개인정보 마스킹 하지 않음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 계약자, 대리인 외 다른가족 고객정보 전부 마스킹
예시 ②	계약자(미성년자)의 친권(모) 내방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계약자, 친권父,母 외 다른가족 고객정보 전부 마스킹 ※ 친권 단독 지정시: 계약자, 단독친권자 외 다른 가족 고객정보 전부 마스킹
예시 ③	계약자 사망으로 대표수익자 내방시		계약자, 법정상속인 전원 외 다른가족 고객정보 전부 마스킹

## (2) 입금(자동이체 등) 업무 마스킹 예시

구분	자동이체 변경시	신분증	제출서류
예시 ①	계약자 ≠ 예금주 계약자 본인 내방시	개인정보 마스킹 (예시참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 계약자, 예금주 외 다른가족 고객정보 전부 마스킹
예시 ②	계약자 ≠ 예금주 계약자의 배우자(≠ 예금주) 대리 내방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 계약자, 예금주, 배우자 외 다른가족 고객정보 전부 마스킹
예시 ③	계약자(미성년자) ≠ 예금주 친권(모) 내방시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계약자, 예금주, 친권(父,母) 외 다른가족 고객정보 전부 마스킹

## (3) 입금(다자녀 할인 신청) 업무 마스킹 예시

구분	다자녀 할인 신청시	신분증	제출서류
예시 ①	계약자 본인 내방시	개인정보 마스킹 (예시참조)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피보험자 및 형제자매 외 다른가족 고객정보 전부 마스킹
예시 ②	계약자의 배우자 대리 내방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 계약자, 배우자, 피보험자와 형제자매 외 다른가족 고객정보 전부 마스킹
예시 ③	계약자(미성년자)의 친권(모) 내방시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계약자, 친권父,母,피보험자와형제자매 외 다른가족 고객정보 전부 마스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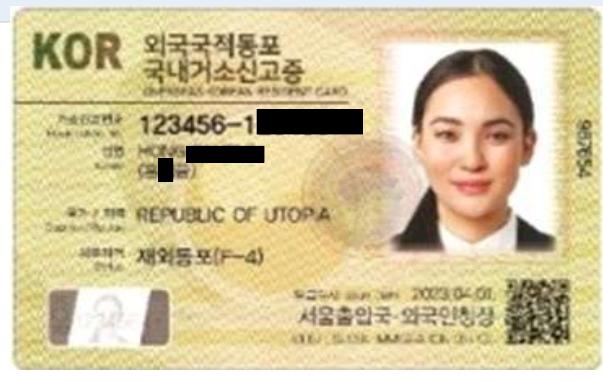
## (4) 보험금접수 업무 마스킹 예시

구분	사고지급 접수시	신분증	제출서류
예시 ①	미성년자 수익자 건	개인정보 마스킹 <b>하지 않음</b>	친권자 고객정보 마스킹 미처리 - 그 외 모든 고객정보 마스킹 처리
예시 ②	대리 청구 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대리인 마스킹 미처리 - 그 외 모든 고객정보 마스킹 처리
예시 ③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 마스킹 미처리 - 그 외 모든 고객정보 마스킹 처리
예시 ④	사망수익자자정상속인		지정상속인마스킹 미처리 - 그 외 모든 고객정보 마스킹 처리

## (5) 신계약 업무 마스킹 예시

구분	사고지급 접수시	신분증	제출서류
예시 ①	미성년자 계약자 건	미첨부	친권자 고객정보 마스킹 미처리 - 그 외 모든 고객정보 마스킹 처리
예시 ②	미성년자 피보험자 건		친권자 고객정보 마스킹 미처리 - 그 외 모든 고객정보 마스킹 처리

## 다. 신분증 마스킹 예시

<b>주민등록증</b> 	<b>운전면허증</b> 
<b>여권</b> 	<b>복지 카드</b> 
<b>외국인등록증(영주증)</b> 	<b>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b> 
<b>재외국인 주민등록증</b> 	<p>※ 고객정보는 스탬프 롤러 또는 검정 매직으로 마스킹 처리 必</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div>

## 라. 개인(신용)정보 화면 마스킹 대상 및 패턴 정의

### ■ 대상 : 고객이 수기로 작성한 서류 内 개인정보 마스킹 기준

- 해당 기준은 마스킹 최소 기준을 정의한 것으로 추가 마스킹 처리하여도 무방함  
(ex. 마스킹 기준은 김\*한 → 업무처리 시 김\*\*, \*\*\* 모두 가능)

구분	항목	마스킹 방법	예시
Level1	주민등록번호	•뒤에서 6자리	•654321-1*****
	운전면허번호	•뒤에서 4자리	•12-34-5678**-**
	운전면허일련번호	•뒤에서 4자리	•P7****
	여권번호	•뒤에서 4자리	•M706****
	외국인등록번호	•뒤에서 6자리	•654321-1*****
	계좌번호	•뒤에서 5자리	•123-02-12***** •1234556-01-1***** •010565***** (핸드폰형태)
	카드번호	•국제카드업계 표준 (PCI-DSS)준용 •5~12번째 숫자와 마지막 자리수	•1234-****-****-123* •9430-****-****-239*
Level2	이름	•한국성명 : 이름의 앞자리와 마지막자리사이 •외국성명 : 영문앞4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한국성명 : 홍*동, 선**녀, 연**문 •외국성명 : hong*****
	핸드폰번호	•국번 외 블록의 앞2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010-12**-12**
	전화번호	•국번 외 블록의 앞2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02-12**-12** •052-12**-12**
	이메일	•아이디 앞2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ab*****@naver.com •Cd*****@goldwing.shinhan.com
	주소	•(지번)상세주소영역 (읍/면/동 미만) •(도로명) 상세주소 영역 (도로명 미만)	•서울시 중구 순화동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7길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77 ****

# 목 차

가. 고객 본인확인 업무 .....	97
나. 개인(신용)정보 등의 녹취 업무 .....	97
1. 일반지급, 계약변경, 입금업무_(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 미제출 시) .....	97
2. 보험금업무_(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 미제출 시) .....	98
3. 보험금업무_(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관련: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 미제출 시) .....	99
4. 계약변경업무_(계약 체결 이행을 위한 상세동의서 미제출 시) .....	100
5. 계약변경업무_(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관련: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한 상세동의서 미제출 시) .....	100
다. 청구권자(성인) 대리인 접수 녹취 업무 .....	101
1. 대리인 내방_청구권자 계좌 송금 신청 시 .....	101
2. 대리인 내방_대리인 계좌 송금 신청 시 .....	101
라. 청구권자 미성년자인 경우 접수 녹취 업무 .....	102
1. 미내방 친권자 유선확인 .....	102
마. 청구권자(또는 피보험자) 사망관련 녹취 업무 .....	103
1. 미내방 상속인 유선확인_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 및 대표수익자지정 지정 위임 확인 .....	103
바. 사업자(개인/법인) 직원 내방 시 녹취 업무 .....	105

# 5. 녹취 스크립트\_공통

## 가. 고객 본인확인 업무

- 고객 업무 처리 전 본인확인 절차 준수 철저 (본인여부 의심 시 추가 탐색 또는 인증 실시)
- 고객 연령에 맞춘 유선녹취 업무 진행 필요  
(고령고객(65세이상) 진행시 – 말속도 천천히, 정확한 발음, 친절하고 정중한 응대 必)



본인 확인	<b>■ 고객정보 및 계약내용 확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자택 또는 직장 주소 및 연락처(주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고객정보 문의확인 필요)</li><li>- 상품명, 보험료, 피보험자명, 계약일자 등</li></ul>
	<b>[예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우편물 수령지가 OO로 OO길 이하 주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번 : 동, 읍, 리 등 까지 / 도로명 :로, 길 까지)</li><li>② 직장(자택) 전화번호 지역번호외 말씀해주시겠습니까?</li><li>③OOO보험에서 자동이체(카드이체) 되고 있는 은행명(카드명) 확인 부탁드립니다.</li><li>④ <b>추가탐색</b><ul style="list-style-type: none"><li>- E-mail,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상품명, 자동이체 은행명 또는 신용카드사, 납입방법(자동이체 아닌 경우), 이체일자, 보험료, 상품종류, 유지 건수, 계약번호 등</li></ul></li></ul>
항목 예시	

## 나. 개인(신용)정보 동의 녹취 업무



<b>1. 일반지급, 계약변경, 입금업무_(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 미제출 시, 보험금업무_(예금주 상이시))</b>	
기본 응대 및 본인 확인	(밝고 친밀감 있게) 안녕하십니까? 신한라이프 OOO입니다. OOO 고객님 맞으세요? <b>(고객: 네)</b>  고객님께서 금번 신청해 주신 OO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동의녹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b>(고객: 네)</b> 감사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고객님 생년월일 6자리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b>(고객 : "1990년 3월 23일 이요" 또는 "900323 이요")</b> 고객님께서 (00환급금, 00보험금, 보험료 등) 수령을 요청하신 계좌의 은행이 어디신가요? <b>(고객 : "신한"이요, "신한은행"이요)</b>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녹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보호	고객님께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및조회·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OO업무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동의 진행	1.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 업무에 필요한 고객님의 <b>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b> 이에 동의하십니까? <b>(고객: 네)</b>  2. 관련 법률에 따라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b>공공기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거래기관</b> 등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b>(고객: 네)</b>  3. 관련 법률에 따라 고객님의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보험협회를 통해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b>(고객: 네)</b>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 <a href="http://www.shinhanlife.co.kr">www.shinhanlife.co.kr</a>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FAQ

### 1.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항목에 대해 설명 해 주세요

- 네~ 고객님도 아시겠지만 OO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고객님께서 제출해주신 신분증 확인을 위한 정보와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업무 관련정보, 계약정보 등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 확인만을 말합니다.

- ①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 ②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청구권자와의관계
- ③ 신용거래정보 :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

### 2. 공공기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거래기관 등에 제공 받는자 ?

- ①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법원, 경찰·검찰, 관공서 등 법령상업무수행기관 (위탁사업자 포함)
- 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③ 금융거래기관 : 계좌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④ 보험협회 등 : 생명·손해보험협회

## 2. 보험금업무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 미제출 시)

기본 응대 및 본인 확인	<p>(밝고 친밀감 있게) 안녕하십니까? 신한라이프 OOO입니다. OOO 고객님 맞으세요? ( 고객: 네 )</p> <p>고객님께서 금번 신청해 주신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동의녹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 고객: 네 ) 감사합니다.</p> <p>본인확인을 위해 고객님 생년월일 6자리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고객 : "1990년 3월 23일 이요" 또는 "900323 이요")</p> <p>고객님께서 (00환급금, 00보험금, 보험료 등) 수령을 요청하신 계좌의 은행이 어디신가요? (고객 : "신한"이요, "신한은행"이요)</p> <p>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녹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p>
권리 보호	<p>고객님께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보험금청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p>
동의 진행	<p>1.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금 청구업무에 필요한 고객님의 고유식별 정보, 민감정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고객: 네 )</p> <p>2-1. 관련 법률에 따라 고객님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개인(신용)정보를 공공기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보험회사 등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고객: 네 )</p> <p>2-2. 관련 법률에 따라 재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필요한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국외 재보험사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고객: 네 )</p> <p>3.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금 청구업무에 필요한 고객님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개인(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생·손보협회를 통해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고객: 네 )</p> <p>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a href="http://www.shinhanlife.co.kr">www.shinhanlife.co.kr</a>)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p>

### 3. 보험금업무\_(미성년자에 법정대리인 대리동의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 미제출 시)

<b>기본 응대 및 본인 확인</b>	<p>(밝고 친밀감 있게) 안녕하십니까? 신한라이프 OOO입니다. OOO 고객님 맞으세요? ( 고객: 네 )</p> <p>고객님께서 금번 신청해 주신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동의녹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 고객: 네 ) 감사합니다.</p> <p>본인확인을 위해 고객님 생년월일 6자리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고객 : "1990년 3월 23일 이요" 또는 "900323 이요")</p> <p>자녀분의 생년월일 6자리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고객 : "2022년 7월 1일 이요" 또는 "220701 이요")</p> <p>고객님께서 (OO환급금, OO보험금, 보험료 등) 수령을 요청하신 계좌의 은행이 어디신가요? (고객 : "신한"이요, "신한은행"이요)</p> <p>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녹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p>
<b>권리 보호</b>	<p>고객님께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보험금청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p>
<b>동의 진행</b>	<p>1.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금 청구업무에 필요한 고객님과 자녀분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고객: 네 )</p> <p>2-1. 관련 법률에 따라 고객님과 자녀분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를 공공기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보험회사 등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고객: 네 )</p> <p>2-2. 관련 법률에 따라 재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필요한 고객님과 자녀분의 개인(신용)정보를 국외 재보험사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고객: 네 )</p> <p>3.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금 청구업무에 필요한 고객님과 자녀분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개인(신용)정보를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생·손보협회를 통해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고객: 네 )</p> <p>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a href="http://www.shinhanlife.co.kr">www.shinhanlife.co.kr</a>)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p>

<b>FAQ</b>	<p>1.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항목에 대해 설명 해주세요</p> <p>- 네~ 고객님도 아시겠지만 보험금청구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고객님께서 제출해주신 신분증 확인을 위한 정보와 피보험자의 진료기록 등에 해당하는 민감정보,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업무 관련정보, 계약정보 등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 확인만을 말합니다.</p> <p><b>① 고유식별정보 :</b>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p> <p><b>② 민감정보 :</b> 피보험자의 질병·상해에 관한 정보(진료기록, 상병명 등),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포함) 및 손해사정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경찰, 공공·국가기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 증명서,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포함)</p> <p><b>③ 일반개인정보 :</b>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청구권자와의관계</p> <p><b>④ 신용거래정보 :</b> 금융거래 업무 관련 정보(보험금 지급계좌 등),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금정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등)</p>
------------	---

#### 4. 계약변경업무\_(계약체결 이행을 위한 상세동의서 미제출 시)

기본 응대 및 본인 확인	<p>(밝고 친밀감 있게) 안녕하십니까? 신한라이프 OOO입니다. OOO 고객님 맞으세요? ( 고객: 네 )</p> <p>고객님께서 금번 신청해 주신 OO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동의녹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십니까? (고객: 네) 감사합니다.</p> <p>본인확인을 위해 고객님 생년월일 6자리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고객 : "1990년 3월 23일 이요" 또는 "900323 이요")</p> <p>지금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에 필수적인 동의 녹취를 진행하겠습니다.</p>
권리 보호	<p>고객님께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계약변경 업무'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p>
동의 진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보험계약 체결 및 이행 목적으로 고객님의 <b>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개인신용정보</b> 등을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 수집, 이용, 조회하는데에 동의하십니까? ( 고객: 네 )</li><li>2.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정보를 <b>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보험협회, 보험개발원</b> 등에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최대 5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고객: 네 )</li><li>3. 고객님의 <b>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b>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에 동의 하십니까? ( 고객: 네 )</li></ol> <p>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a href="http://www.shinhanlife.co.kr">www.shinhanlife.co.kr</a>)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p>

#### 5. 계약변경업무\_(미성년자\_계약체결 이행을 위한 상세동의서 미제출 시)

기본 응대 및 본인 확인	<p>(밝고 친밀감 있게) 안녕하십니까? 신한라이프 OOO입니다. OOO 고객님 맞으세요? ( 고객: 네 )</p> <p>고객님께서 금번 신청해 주신 OO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동의녹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십니까? (고객: 네) 감사합니다.</p> <p>본인확인을 위해 고객님 생년월일 6자리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고객 : "1990년 3월 23일 이요" 또는 "900323 이요")</p> <p>자녀분의 생년월일 6자리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고객 : "2022년 7월 1일 이요" 또는 "220701 이요")</p> <p>지금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에 필수적인 동의 녹취를 진행겠습니다.</p>
권리 보호	<p>고객님께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계약변경 업무'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p>
동의 진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보험계약 체결 및 이행 목적으로 자녀분의 <b>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개인신용정보</b> 등을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 수집, 이용, 조회하는데에 동의하십니까? ( 고객: 네 )</li><li>2.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정보를 <b>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보험협회, 보험개발원</b> 등에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최대 5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고객: 네 )</li><li>3. 자녀분의 <b>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b>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에 동의 하십니까? ( 고객: 네 )</li></ol> <p>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a href="http://www.shinhanlife.co.kr">www.shinhanlife.co.kr</a>)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p>

## 다. 청구권자(성인) 대리인 접수 녹취 업무

### 1. 대리인 내방\_청구권자 계좌 송금 신청 시

기본 응대 및 본인 확인	(밝고 친밀감 있게) 안녕하십니까? 신한라이프 OOO입니다. OOO 고객님 맞으세요? ( 고객: 네 )  [OOO] 고객님께서 접수해 주신 OO업무 관련으로 연락 드렸는데요.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 고객: 네 )  본인확인을 위해 고객님 생년월일 6자리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고객 : "1990년 3월 23일 이요" 또는 "900323 이요") 고객님의 자택 주소가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이후 자세한 주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고객 : "삼일대로 358"이요, "358"이요) *계약원부와 신청서상 주소, 연락처 상이 시 고객변경 안내  확인 감사합니다.
업무 확인	1. 금번 접수해주신 OO업무에 대해 청구권자이신 고객님을 대리하여 OOO고객께서 서류 접수해 주셨는데요. 해당 접수에 대해 알고 계실까요? ( 고객: 네 )  2. 접수해 주신 OO업무로 입금 요청하시는 고객님 계좌는 [신한]은행, 앞자리 [123]로 시작해서 뒷자리[456] 입니다. 맞으신가요? ( 고객: 네~ 또는 맞아요 ) *의사표현이 불분명하거나 다른계좌 언급 시 계좌번호 재확인 필요
맺음말	확인 감사합니다. 요청해 주신 업무에 대해 빠른 접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2. 대리인 내방\_대리인 계좌 송금 신청 시

기본 응대 및 본인 확인	(밝고 친밀감 있게) 안녕하십니까? 신한라이프 OOO 입니다. OOO 고객님 맞으세요? ( 고객: 네 )  OOO고객님께서 접수해 주신 OO업무 관련으로 연락 드렸는데요.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 고객: 네 )  본인확인을 위해 고객님 생년월일 6자리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고객 : "1990년 3월 23일 이요" 또는 "900323 이요") 고객님의 자택 주소가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이후 자세한 주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고객 : "삼일대로 358"이요, "358"이요) *계약원부와 신청서상 주소, 연락처 상이 시 고객변경 안내  확인 감사합니다.
업무 확인	1. 금번 접수해주신 OO업무에 대해 청구권자이신 고객님을 대리하여 OOO고객께서 서류 접수 및 000고객 계좌로 입금을 요청 해 주셨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실까요? ( 고객: 네 )  2. 입금을 요청하시는 000고객님(대리인) 계좌는 [신한]은행, 앞자리 [123]로 시작해서 뒷자리[456]입니다. 알고 계실까요? ( 고객: 네~ 또는 맞아요 ) *의사표현이 불분명하거나 다른계좌 언급 시 계좌번호 재확인 필요
맺음말	확인 감사합니다. 요청해 주신 업무에 대해 빠른 접수 처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p>※ 청구권자 본인 확인 시 대리인 내방 고객요청 위임업무에 대해 정확히 유선확인 필요</p>
대리인 접수_	<p>※ 일반지급, 계약변경, 입금업무 관련 확인 시 - 계약번호 다건의 경우에는 보험계약번호 12345678910번 포함 총 00건 안내 必</p>
유의 사항	<p>※ 보험금청구 업무 관련 확인 시 예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피보험자 OOO고객님_00진단보험금 접수관련 청구서상 기본 내용 확인</li> <li>② 피보험자 OOO고객님_입원, 통원 보험금 접수관련 청구서상 기본 내용 확인</li> </ul>

## 라. 청구권자 미성년자인 경우 접수 녹취 업무

1. 미내방 친권자 유선확인	
기본 응대 및 본인 확인	<p>(밝고 친밀감 있게) 안녕하십니까? 신한라이프 OOO 입니다. OOO 고객님 맞으세요? ( 고객: 네 )</p> <p>배우자 [OOO]님께서 접수해 주신 OOO 자녀 OOOO보험 OO업무 접수 관련하여 연락 드렸는데요. 잠시 통화 가능하십니까? ( 고객: 네 )</p> <p>본인확인을 위해 고객님 생년월일 6자리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고객 : "1990년 3월 23일 이요" 또는 "900323 이요")</p> <p>고객님의 자택 주소가 서울시 종구 삼일대로 이후 자세한 주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고객 : "삼일대로 358"이요, "358"이요) *계약원부와 신청서상 주소, 연락처 상이 시 고객변경 안내</p> <p>확인 감사합니다.</p>
업무 확인	<p>1. OOOO보험은 계약자(또는 수익자)가 자녀분 OOO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도 아시겠지만,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모의 동의를 얻어 업무 처리 가능하신대요. 배우자님께서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OO업무 처리 요청하신 부분에 고객님께서 알고 계시며, 배우자 OOO님께 업무처리 위임 동의하시나요? ( 고객: 네 )</p> <p>2. 업무처리 입금을 요청하시는 은행 계좌는 미성년자(배우자 OOO) 계좌로 [신한]은행, 앞자리 [123]로 시작해서 뒷자리[456]입니다 알고 계실까요? ( 고객: 네~ 또는 맞아요 )</p>
맺음말	<p>확인 감사합니다. 요청해 주신 업무에 대해 빠른 접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p>
유의 사항	<p>※ 일반지급/계약변경 업무 시 실지급액_500만원이하 미내방 친권자 녹취불가 시 -&gt; 변상의무확인서(당사양식) 작성 必</p>

## 마. 청구권자(또는 피보험자) 사망관련 녹취 업무



### 1. 미내방 상속인 유선확인\_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 및 대표수익자지정 지정 위임 확인

기본 응대 및 본인 확인	(밝고 친밀감 있게) 안녕하십니까? 신한라이프 OOO 입니다. OOO 고객님 맞으세요? ( 고객: 네 )
	대표 수익자 [OOO]님께서 접수해 주신 OO종신보험 외 OO건 사망 관련 접수로 연락 드렸는데요.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 고객: 네 )

본인확인을 위해 고객님 생년월일 6자리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고객 : "1990년 3월 23일 이요" 또는 "900323 이요")  
고객님의 자택 주소가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이후 자세한 주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고객 : "삼일대로 358"이요, "358"이요) \*계약원부와 신청서상 주소, 연락처 상이 시 고객변경 안내

확인 감사합니다. \*본인 확인시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추가 질문을 통한 본인확인 철저!

#### 1. 개인(신용)정보 녹취 확인

-일반지급, 계약변경, 입금업무\_(계약관리를 위한 상세동의서 미제출 시) -> 3page

권리 보호	고객님께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OO업무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동의 진행	1.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OO 업무에 필요한 고객님의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고객: 네)  2. 관련 법률에 따라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공공기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거래기관 등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고객: 네)  3. 관련 법률에 따라 고객님의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보험협회를 통해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고객: 네)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 <a href="http://www.shinhanlife.co.kr">www.shinhanlife.co.kr</a>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업무\_(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 미제출 시) -> 4~5page

권리 보호	고객님께서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보험금청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동의 진행	1.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금 청구업무에 필요한 고객님의 고유식별 정보, 민감정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고객: 네)  3.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금 청구업무에 필요한 고객님의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개인(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생손보협회를 통해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고객: 네)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 <a href="http://www.shinhanlife.co.kr">www.shinhanlife.co.kr</a>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지급, 계약변경, 입금·보험금 업무 -> 상속인 中 미성년자 자녀\_법정대리인 대리 동의 必

#### 2. 대표수익자 지정 위임 확인

- ① 故 OOO 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신청해 주신 OO업무, OO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대표수익자를 OOO고객으로 지정하고 보험금(제지급금 포함)수령 (및 계약변경) 관련 업무 등을 위임하여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고객: 네 )
- ①+②(상속인에게 확인) 업무 처리 후 입금을 요청하시는 계좌는 대표수익자님 계좌로 입금 되십니다. ( 고객: 네 )

	<p><b>①+③(대표수익자에게 확인)</b> 업무 처리 후 입금을 요청하시는 계좌는 대표수익자 000님 계좌로 [신한]은행, 앞자리 [123]로 시작해서 뒷자리[456]입니다 알고 계실까요? (고객: 네)</p>																																																																																																								
맺음말	<p>확인 감사합니다. 요청해 주신 업무에 대해 빠른 접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p>																																																																																																								
	<p>* 대표수익자 지정 및 계약변경 동의서 고객 작성 신청사항 대하여 정확한 위임여부 확인</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h2 style="text-align: center;">대표수익자 지정 및 계약변경 동의서</h2> <div style="border: 2px dashed red;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신청사항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보험 계약번호</td> <td style="width: 85%;">총 _____ 건</td> </tr> <tr> <td rowspan="3" style="background-color: #e0e0ff;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신청 항목</td> <td><input type="checkbox"/> 보험금 수령</td> <td colspan="4">□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책임준 비금</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제3자금 수령</td> <td><input type="checkbox"/> 해외환급금</td> <td><input type="checkbox"/> 만기보험금</td> <td><input type="checkbox"/> 분할(종도)보험금</td> <td><input type="checkbox"/> 연금 및 연금일시금</td> <td><input type="checkbox"/> 기타( )</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계약변경</td> <td><input type="checkbox"/> 계약자변경</td> <td><input type="checkbox"/> 수익자변경</td> <td><input type="checkbox"/> 기타( )</td> <td colspan="2"></td> </tr> </table>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대표수익자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성 명</td> <td style="width: 30%;">(인/서명)</td> <td style="width: 15%;">생년월일</td> <td style="width: 30%;"></td> <td style="width: 10%;">성별</td> <td style="width: 10%;">□ 남 □ 여</td> </tr> <tr> <td>연락처</td> <td></td> <td>주소</td> <td></td> <td colspan="2"></td> </tr> </table> </div> <p>귀사로부터故 _____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기 신청업무를 함께 있어 공동 수익자인 하기인들은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상기인을 대표수익자(보험금 등을 받는 수익자)로 지정하였으며, 추후 상기 신청 및 보험금(제3자금 포함)수령과 관련하여 재반 분쟁이 발생하거나 다른 상속인이 존재할 시에는 그 즉시 대표수익자와 하기인 천원의 연대 책임하에 보험금(제3자금 포함) 반환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과 민·영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 각서 맙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상속인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th> <th rowspan="2">성 명 (인/서명)</th> <th rowspan="2">생년월일</th> <th colspan="2">녹취확인</th> </tr> <tr> <th>대표수정 위임여부</th> <th>개인정보 녹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1</td> <td>연락처</td> <td>여권번호(외국인인 경우)</td> <td>Y</td> <td>Y</td> </tr> <tr> <td>주 소</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N</td> <td>N</td> </tr> <tr> <td rowspan="3">2</td> <td>연락처</td> <td>여권번호(외국인인 경우)</td> <td>Y</td> <td>Y</td> </tr> <tr> <td>주 소</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N</td> <td>N</td> </tr> <tr> <td rowspan="3">3</td> <td>연락처</td> <td>여권번호(외국인인 경우)</td> <td>Y</td> <td>Y</td> </tr> <tr> <td>주 소</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N</td> <td>N</td> </tr> <tr> <td rowspan="3">4</td> <td>연락처</td> <td>여권번호(외국인인 경우)</td> <td>Y</td> <td>Y</td> </tr> <tr> <td>주 소</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N</td> <td>N</td> </tr> <tr> <td rowspan="3">5</td> <td>연락처</td> <td>여권번호(외국인인 경우)</td> <td>Y</td> <td>Y</td> </tr> <tr> <td>주 소</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N</td> <td>N</td> </tr> </tbody> </table> <p>* 상속인 내방 시 - 신분증 + 서명捺인</p> </div>	보험 계약번호	총 _____ 건	신청 항목	<input type="checkbox"/> 보험금 수령	□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책임준 비금				<input type="checkbox"/> 제3자금 수령	<input type="checkbox"/> 해외환급금	<input type="checkbox"/> 만기보험금	<input type="checkbox"/> 분할(종도)보험금	<input type="checkbox"/> 연금 및 연금일시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계약변경	<input type="checkbox"/> 계약자변경	<input type="checkbox"/> 수익자변경	<input type="checkbox"/> 기타( )			성 명	(인/서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연락처		주소					성 명 (인/서명)	생년월일	녹취확인		대표수정 위임여부	개인정보 녹취	1	연락처	여권번호(외국인인 경우)	Y	Y	주 소		—	—			N	N	2	연락처	여권번호(외국인인 경우)	Y	Y	주 소		—	—			N	N	3	연락처	여권번호(외국인인 경우)	Y	Y	주 소		—	—			N	N	4	연락처	여권번호(외국인인 경우)	Y	Y	주 소		—	—			N	N	5	연락처	여권번호(외국인인 경우)	Y	Y	주 소		—	—			N	N
보험 계약번호	총 _____ 건																																																																																																								
신청 항목	<input type="checkbox"/> 보험금 수령	□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책임준 비금																																																																																																							
	<input type="checkbox"/> 제3자금 수령	<input type="checkbox"/> 해외환급금	<input type="checkbox"/> 만기보험금	<input type="checkbox"/> 분할(종도)보험금	<input type="checkbox"/> 연금 및 연금일시금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계약변경	<input type="checkbox"/> 계약자변경	<input type="checkbox"/> 수익자변경	<input type="checkbox"/> 기타( )																																																																																																					
성 명	(인/서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연락처		주소																																																																																																							
	성 명 (인/서명)	생년월일	녹취확인																																																																																																						
			대표수정 위임여부	개인정보 녹취																																																																																																					
1	연락처	여권번호(외국인인 경우)	Y	Y																																																																																																					
	주 소		—	—																																																																																																					
			N	N																																																																																																					
2	연락처	여권번호(외국인인 경우)	Y	Y																																																																																																					
	주 소		—	—																																																																																																					
			N	N																																																																																																					
3	연락처	여권번호(외국인인 경우)	Y	Y																																																																																																					
	주 소		—	—																																																																																																					
			N	N																																																																																																					
4	연락처	여권번호(외국인인 경우)	Y	Y																																																																																																					
	주 소		—	—																																																																																																					
			N	N																																																																																																					
5	연락처	여권번호(외국인인 경우)	Y	Y																																																																																																					
	주 소		—	—																																																																																																					
			N	N																																																																																																					

## 바. 사업자(개인/법인) 직원 내방 시 녹취 업무



### 1. 직원 내방 시

기본 응대 및 본인 확인	(밝고 친밀감 있게) 안녕하십니까? 신한라이프 OOO 입니다. OOO 대표님(고객님) 되시죠? ( 고객: 네 )  OOOO 회사에 재직중인 [OOO] 직원께서 접수해 주신 OO업무 관련으로 연락 드렸는데요. 잠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 고객: 네 )  본인확인을 위해 고객님 생년월일 6자리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고객 : “1990년 3월 23일 이요” 또는 “900323 이요”) 고객님의 직장 주소가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이후 자세한 주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고객 : “삼일대로 358”이요, “358”이요) *계약원부와 신청서상 주소, 연락처 상이 시 고객변경 안내  확인 감사합니다.
	1. OOOO회사의 위임을 받아 0000년 가입된 OO보험에서 OO업무 관련 서류를 접수해 주셨는데요. 위임 사항에 대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하여 동의 해 주셨는데요. 맞으실까요? ( 고객: 네 )  2. 접수해 주신 OO업무 입금 요청하시는 계좌는 OOOO회사 명의 [신한]은행, 앞자리 [123]로 시작해서 뒷자리[456]입니다. 맞으신가요? ( 고객: 네~ 또는 맞아요 ) *의사표현이 불분명하거나 다른계좌 언급 시 계좌번호 재확인 필요
맺음말	바쁘신 일정 중에도 확인 감사합니다. . 요청해 주신 업무에 대해 빠른 접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